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연구과제명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이호택 (피난처 대표)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신정희 (이화여대 아동학과 겸임교수)

이연주 (피난처 간사)

연구보조원: 김주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정혜연 (피난처 인턴)





## 목차

I. 연구 목적 .....	1
II. 연구 내용 .....	3
III. 연구 방법 .....	6
1. 자료수집 및 문헌분석 .....	6
2. 참여관찰 및 심리조사 .....	6
3. 심층면접 .....	6
IV. 연구 결과 .....	9
1. 아동의 일반적 조건 .....	9
1.1 국적 및 출생등록 .....	9
1.2 난민 관련 법적지위 .....	11
1.3 가족관계 .....	12
2. 일상 생활 .....	13
2.1 언어 구사 .....	14
2.2 일상생활 .....	17
2.3 경제 상황 .....	21
3. 양육 및 교육 .....	27
3.1. 교육 참여 .....	27
3.2 학업상태 및 또래관계 .....	31
3.3. 부모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	32

4. 의료와 건강 .....	37
4.1 아동의 육체적 건강상태 .....	37
4.2 아동의 정신적 건강상태 .....	38
4.3 의료 보장 및 지원 상황 .....	40
5. 아동의 정체성 및 미래 기획 .....	43
5.1 정체성 인식 .....	43
5.2 미래 기획 .....	47
5.3 희망하는 제도적 지원 .....	52
V. 아동의 발달 및 심리조사 .....	54
1. 검사 대상 및 내용 .....	54
2. 연구방법 .....	54
3. 검사결과 .....	56
4. 논의 및 소결 .....	64
VI. 난민아동 지원 해외 사례 .....	68
1. 일본 .....	68
2. 영국 .....	70
3. 프랑스 .....	85
4. 독일 .....	87
5. 네덜란드 .....	90
6. 스웨덴 .....	91
7. 핀란드 .....	94
8. 캐나다 .....	96
9. 미국 .....	101
10. 호주 .....	108

11. 뉴질랜드 .....	115
<b>VII. 난민아동 지원 방안 .....</b>	<b>119</b>
1.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난민아동권 분석 .....	119
2. 한국 난민아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22
2.1 민간 .....	122
2.2 정부 .....	123
3. 난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	125
<b>VIII. 결론 .....</b>	<b>133</b>
<b>참고문헌 .....</b>	<b>134</b>

## 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 및 난민아동지원 해외사례에 비추어 한국 내 난민아동의 삶의 질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난민아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난민아동은 난민신청자 및 소송중인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아동을 포함한다. 2012년 1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신청자 아동의 수는 총 173명으로 확인되며, 2011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신청자 아동의 수는 총 136명이다. 연령대별로는 0-4세 48명, 5세-11세 아동 69명, 12세-17세 19명이며, 남아는 총 75명, 여아는 61명이다. 이중 난민인정자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35명이며, 인도적체류허가 아동의 수는 18명에 불과하다.<sup>1)</sup> 난민아동의 수는 많지 않지만 한국 내 체류하는 성인 난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94년 본격적인 난민보호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난민송출국에서 난민보호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0년까지 100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으나 한명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점, 난민 인정 비율이 난민신청자에 비해 매우 낮고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은 비호국으로서의 한국 정부가 난민보호에 대해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왔음을 보여준다. 체류자격을 인정받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지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 통합 및 정착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난민은 본국으로의 귀환이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보됨으로써 정착 및 사회통합의 적극적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의 한국 내 삶의 질은 여타의 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미 외 2010). 성인 난민의 낮은 삶의 질 및 사회적 지위는 이들이 양육하는 아동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난민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가 정착하기를 원하는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부모는 총 197명의 응답자의 35%를 차지한다. 난민아동의 출생 및 성장지인 한국에서 자녀가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난민아동의 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내 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난민아동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난민아동의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 및 민간단체의 난민아동 지원 방향 및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거주하는 난민아동의 성장 과정과 이에 따라 태동하는 새로운 위기와 어려

---

1) 법무부 국적·난민과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 청구인: 세이브더칠드런 손보영, 2012년 4월 7일.

움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난민아동의 한국 내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난민가정 및 아동의 생활 실태를 알림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난민아동의 체류권 및 교육권, 사회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수행해 온 <난민아동지원사업>의 성과 및 의의와 한계를 '수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 및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난민아동지원사업>은 체계적인 난민 정착 지원 부족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는 난민아동의 삶의 위기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아동 양육 및 교육비 지원과, 부모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난민아동의 권리 옹호를 통한 사회권의 확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 II. 연구 내용

한국 거주 난민아동의 삶의 질과 생활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아동을 난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비호국으로 이주한 난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정신적 상흔에 따른 스트레스, 재정착과정의 지속적인 장애들, 사회적 고립, 문화 부적응 등으로 분류된다(Steel et al. 2011). 일반적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난민 가족은 안정성 및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가족의 삶의 주기에 따른 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과 투자, 살림 및 재생산, 가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생계활동,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돌봄 문제, 심리적 안정 및 건강의 제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협조와 교류를 통해 가정을 유지해가야 한다. 그러나 난민가족은 ‘공포’와 박해의 경험이라는 상흔을 가진 가구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부모의 가족 유지 능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외부의 지원 없이는 가족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특히 대부분의 난민 가족은 본국에서 떠나와 비호국에서 ‘핵가족’ 형태로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위기 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확대 가족 구성원들이 부재하다(Tingvold et. al 2012).

무엇보다 난민아동의 삶의 질과 미래 기획은 부모의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난민 부모가 경험하는 트라우마가 아동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Ajdukovic and Ajdukovic 1993; Rousseau et al. 1999). 특히 난민아동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본거지를 잃고, 추방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수면 및 섭식 장애, 분리 공포, 반복적인 수동성과 공격성등과 같은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Ajdukovic and Ajdukovic 1993). 그러나 부모의 상흔이 아이들의 사회정착에 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량학살의 ‘생존자’ 부모를 둔 캄보디아 난민아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소년들 중 일부는 공격성, 위험 행동, 학업 실패 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생존력이 소녀들에게는 긍정적인 사회 적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Rousseau et al. 1999).

난민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난민 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이들의 삶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정치, 종교, 민족 및 사회적 출신, 신분, 성폭력 등의 박해 요인 때문에 ‘강요된 이주’의 형태로 본국을 떠나 난민이 된 이주자가 비호국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생계 및 거주지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951년 난민 협약등도 난민 인권 보호의 핵심을

사회권 보장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난민 보호 체계 및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난민신청 및 소송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급속한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난민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유보된 삶’과 ‘연쇄 박해’는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동시에 이들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지원도 전무하다는데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난민아동을 둔 성인 난민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제적 빈곤은 곧 난민아동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난민들의 법적 지위와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망, 문화적 전수의 제 측면의 조건들이 난민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난민아동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현실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방식을 조사하여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관계 회복 및 연결성을 만들어준다는데 있다. 즉, 난민의 체류권과 심사에만 관심을 두었던 제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난민아동의 경험을 통해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가족 간 연결성과 안정성의 문제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난민아동의 체류조건 및 법적 지위

많은 난민아동들은 ‘무국적’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이러한 체류조건이 불안정성이 이들이 한국에서 성장 또는 정착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난민 인정 절차 및 체류권 취득과정, 출생 등록의 문제에서 나타난 난민아동의 특수성을 분석한다.

### 2) 난민아동 <사회권> 확보를 위한 생활실태조사

난민아동이 한국 사회가 제공하는 사회권, 즉, 육아 및 양육 지원, 건강서비스, 교육, 복지 등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이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경험 및 또래 친구와의 관계망을 파악하여 정착지원의 내용 및 필요성의 준거를 제공한다. 특히, 이들의 학교 교육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의 적응과정, 학업 상태, 사회적 연결망, 사교육 실태 등을 알아본다.

### 3) 난민 부모 및 아동의 건강 및 심리적 상태조사

난민 부모가 처한 빈곤 상황, 자신의 삶 전반의 불안이나 불만족에 따른 폭력 행사 및 심리적 트라우마가 난민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난민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심리적 지원의 내용을 분석한다.

#### 4) 난민아동 지원 체계 및 내용 국가 비교

아시아 지역의 주요 비호국인 한국과 일본의 난민아동 지원 상황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난민보호제도와 아동 지원 체제사이의 연관성과 개선점을 분석한다. 또한 난민 보호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한국 난민아동 보호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한다.

### III. 연구 방법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및 문헌분석: 한국 난민 관련 연구보고서와 세이브더칠드런의 뉴스레터를 포함한 난민 지원 단체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질문을 구성하고,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연구 질문을 설계했다. 한국과 일본, 해외 여러 나라의 난민 정책 및 보호제도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비교했다.

2) 참여관찰 및 심리조사: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난민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일상적 생활을 관찰했다. 또한 난민아동의 주요 생활 근거지인 동네 및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에 의해서는 쉽게 파악될 수 없는 아동의 발달 및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관찰 및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난민아동 10명(번외(番外) 1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놀이평가, 그림검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난민아동의 발달·심리상태 및 현재 겪고 있는 행동문제 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심층면접: <난민아동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인 난민아동과 비지원대상 아동 등 총 30가족을 선정하여, 1시간 30분-2시간정도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자기 표현력이 없는 아동의 생활 실태는 주로 부모 면담을 통하여, 인터뷰가 가능한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부모와 본인의 동의하에 직접 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은 난민신청사유별, 국적별, 지역별, 언어권별 차이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심층 면접 대상 아동은 표 1)과 같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의 지위는 크게 난민인정자(R : Recognized refugee), 불인정되었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H : Humanitarian status),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자(A : Asylum applicant), 불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소송중인 자(C : Court process), 절차가 끝났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F : Failed asylum-seeker)로 나뉘며, 가족결합의 원칙상 아동의 지위도 대체로 부모의 지위에 따른다. 아동의 체류 및 사회권은 부모 및 아동의 난민지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조사에서는 각 사례를 아동의 체류자격 내지 난민지위에 따라 R·H·A·C·F로 분류하여 사례번호를 부여했다.

표 1) 난민아동사례표

체류 자격	국적	부모국적	나이	성 별	교 육	가족관계	한국 입국연도	인터 뷰이
R-1	무국적	부: 방글라데시 모: 방글라데시	4	여	×	부모, 자1	부 2002 모 2007	모
R-2	무국적	부: 방글라데시 모: 방글라데시	6	여	유치원	부모, 자1, 녀1	부 2002 모 2005	모
	무국적		4	남	어린이집			
R-3	미얀마	부: 무국적(로힝가) 모: 미얀마	16	남	중학교	부모, 자2, 녀2	부 2002 본인 2007	부, 본인
R-4	미얀마	부: 미얀마	20	남	×	부, 자2, 녀1	본인 2010	부
R-5	앙골라	부: 앙골라	12	남	초등학교	부, 자1, 녀1	부·본인 2007	부
	앙골라		18	여	한국어학당		본인 2011	
R-6	DR콩고	부: DR콩고 모: DR콩고	14	남	초등학교	부모, 자2, 녀2	본인 2008	부, 본인
	DR콩고		13	남	초등학교		본인 2008	
	DR콩고		11	여	초등학교		본인 2008	
H-1	무국적	부: 방글라데시 모: 파키스탄	5	남	유치원	부모, 자2, 녀1	부 1997 모 2006	모
	무국적		4	남	어린이집			
	무국적		2	여	×			
H-2	무국적	모: DR콩고	10	남	초등학교	모, 자1	모 2000	모
H-3	미얀마	부: 나이지리아 모: 미얀마	21	여	고등학교	부모, 자1, 녀1	부 2005 모 2003 본인 2003	본인
H-4	코트디부아르	부: 가봉 모: 코트디부아르	8	여	초등학교	부모, 녀1	부 2008 모 2004	부
H-5	파키스탄	부: 파키스탄 모: 파키스탄	5	여	어린이집	부모, 녀1	부 2000 모 2007	모
H-6	무국적	부: DR콩고 모: DR콩고	5	여	어린이집	부모, 자1, 녀1	부 불명 모 2007	모
	무국적		4	남	어린이집			
A-1	무국적	부: 미얀마 모: 미얀마	12	남	초등학교	부모, 자2	부 1998 모 2002	모
	무국적		4	남	어린이집			
A-2	파키스탄	부: 파키스탄 모: 파키스탄	14	남	초등학교	모, 자2, 녀5 (녀2귀환)	부 2005 (2011 본국귀환) 모 2006	모
	파키스탄				귀환			
	파키스탄				귀환			
	파키스탄		10	여	초등학교			
	파키스탄		9	여	초등학교			
	파키스탄		5	남	×			
파키스탄	3	여	×					

A-3	라이베리아	부: 라이베리아 모: 라이베리아	5	여	어린이집	부모, 녀2	부모 2007	모
	무국적		2	여	어린이집			
A-4	남아공	모: 나이지리아	3	남	어린이집	모, 자1	모·본인 2011	모
A-5	라이베리아	모: 라이베리아	10	여	초등학교	모1, 녀1	모·본인 2012	모
A-6	말리	부: 말리 모: 말리	8	남	초등학교	부모, 자2	부 1996 모 2004	모
	말리		6	남	×			
A-7	소말리아	부: 소말리아(사망) 모: 소말리아	15	남	다문화 학교	한국후견인 가족과생활	본인 2012	본인
A-8	코트디부아르	부: 코트디부아르 모: 코트디부아르	5	남	어린이집	부모, 자1	부 2002 모 2006	부
A-9	DR콩고	부: DR콩고 모: 콩고공화국	3	남	어린이집	부모, 자1	부 2000 모 2008	부모
A-10	파키스탄	부: 파키스탄 모: 파키스탄	4	여	×	부모, 녀3	부 2001 모 2008	부
	파키스탄		3	여	×			
	파키스탄		1	여	×			
A-11	파키스탄	부: 파키스탄 모: 파키스탄	6	남	어린이집	부모, 자2	부 2009 모·본인 2011	모
	파키스탄		5	남	어린이집			
C-1	무국적	부: DR콩고(출국) 모: DR콩고	8	여	초등학교	모, 녀1	부 출국 모 2004	모
C-2	코트디부아르	부: 코트디부아르 모: 코트디부아르	7	남	어린이집	부모, 자1, 녀1	부모 2002	부모
F-1	무국적	부: DR콩고 모: DR콩고	5	여	×	부모, 자1	부 2005 모 2008	부모
F-2	무국적	부: 미얀마 모: 미얀마	8	여	초등학교	부모, 자1, 녀1	부 1993 모 1997	모
F-3	무국적	부: 미얀마 모: 미얀마	3	여	어린이집	부모, 녀1	부 1997 모 1999 (2012. 9 천가족이 추방당함)	모
F-4	무국적	부: DR콩고 모: DR콩고	8	남	초등학교	부모, 자2	부 2002 모 2003	모
	무국적		4	남	어린이집			
F-5	무국적	부: 코트디부아르 모: 코트디부아르	1	여	×	부모, 녀1	부 1998 모 불명	부

난민 가족의 주요 거주지는 서울 이태원 지역, 수도권에서는 인천, 김포, 시흥, 부천, 안산, 평택, 동두천 지역이다. 이외 대구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 IV. 연구 결과

### 1. 아동의 일반적 조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총 168,583명이며, 이중 양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는 10,451명, 한부모만이 외국인인 자녀는 146,071명(2012년 1월말 현재)이다. 이중 난민아동은 신청자 누적총수가 136명이며, 이중 인정자는 35명, 인도적체류자는 18명이다(2012.4.27.기준, 법무부 국적난민과 자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조사대상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66.6%가 남성, 33.3%가 여성, 평균연령은 3.6세, 출생국은 100%가 대한민국, 40%가 무국적, 법적 지위는 난민지위인정자가 60%, 불인정자가 13.3%, 인도적체류자가 26.6%로 나타났다.<sup>2)</sup>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난민아동들의 신분, 법적지위, 가족 등과 관련한 일반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1 국적 및 출생등록

아동이 출생하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게 되나, 부모의 국적법 내지 출생지법에 따라 출생등록하여 국적을 얻어야 비로소 법적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취하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된 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난민아동의 경우에는 박해가능성 때문에 부모가 출신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도 국내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를 갖고 있지 않아 많은 난민아동이 무국적자가 되고 있다.

조사대상 아동의 절반가량은 무국적 상태이며, 무국적이 되는 원인은 (1) 정부가 박해의 주체인 경우 부모들이 대사관에의 접근을 두려워하여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 출생등록을 요청하여도 대사관에서 뇌물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대사관이 한국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4) 본국에 가서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이미 본국을 떠나거나 버린 국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무국적'의 지위로 살고 있는 난민아동의 수가 증가한다.

2) 최혜지 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11., pp. x x - x xi

3) 국적법 제2조

콩고 대사관에서 아이 국적을 받아 주지 않고, 콩고 난민으로 되어 있어서 콩고 국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귀화를 해서 국적을 취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H-2 아동의 어머니)

출입국사무소에서 아이들의 외국인등록은 했어요. 하지만 콩고 대사관에 가면 잡힐까 봐 걱정이 되어 가지 못해서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하지는 못해 아이들은 무국적 상태예요. 엄마가 가지고 온 여권도 만료가 되었지만 대사관에 가지 못해 갱신도 하지 못 했어요. (H-6 아동의 어머니)

두 아이 모두 미얀마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첫째 낳은 후에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몇 년 후에 없어진 병원을 찾고 찾아 마침내 의사선생님을 찾아 증명서를 받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은 후에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았어요. 출생증명서만 가지고 있어요. (A-1 아동의 어머니)

대사관에 출생 등록하지 못하였고, 병원출생증명서만 가지고 있어요. (F-1 아동의 부모)

한편 조사대상 아동의 절반가량은 국적이 있었는데 이는 박해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부족, 단체 등 국가내의 조직이고, 국가가 보호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보호능력이 없어 난민이 된 경우에는 난민들이 대사관과의 접촉에 문제가 없고 대사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신청 다 했어요. 한국도 우리 사무실이 하나 있던데, 서울에 가서 신청 다 했어요. (A-10 아동의 부모)

현재 저의 체류상태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지는 못했어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도 받았고, 대사관 쪽과는 문제가 없어 대사관에도 등록하고 코트디부아르 국적을 얻은 상태예요. (F-5 아동의 아버지)

한국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만한 절차는 없으며, 난민 및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출생 등록의 방법은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역 구청에 가서 '기타' 등록으로 출생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다. 난민 소송중인 C-2 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에 등록했고, 구청에 가서 아이 출생 신고를 접수했다. 내국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아동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생신고수리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주는 하지만 신고유

형이나 등록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타’ 신고과일에 편철하여 보관할 뿐이며, 그나마 종로구청이나 안산단원구청 등 선례가 있는 몇몇 구청을 제외하면 이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국적의 상황에 방치하기 보다는 출생 시 출생연도일, 부모의 이름, 국적 등 아이의 출생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향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실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종로구청에서 출생신고 했어요. 안산에서는 이러한 것을 신청할 수 없고 오직 종로구청에서만 가능해요. (H-1아동의 부모)

최근 유엔은 신분 없이 이동하는 전 세계 무국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각 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생지가 명확한 사례 난민아동들의 경우 출생일과 출생지, 부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완벽히 갖춘 존재들로 이들이 출생 등록을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2 난민 관련 법적지위

대한민국에서 출생함으로써 입국시 구비할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된 외국인 아동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받고 외국인등록 하여야 한다.<sup>4)</sup> 난민아동의 경우에는 체류의 근거가 부모의 난민지위이기 때문에 난민아동에 대하여도 난민신청할 것을 요구한 뒤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모의 난민인정 여부에 따른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아동의 난민신청은 아동에 대하여 독립한 박해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의 난민신청사유에 의존하여 진행되며 아동 별도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난민아동이 법적지위를 갖게 되기까지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라도 보통 2개월이 소요되며 그간 난민아동의 지위는 진공상태에 놓이게 된다. R-5 사례의 경우 아들과 아버지는 2010년 난민인정을 받았으나, 뒤늦게 한국에 온 18세 딸은 난민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다. 난민실에서 딸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이 서류를 앙골라에서 가져와야 했으므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딸은 2012년 1월 난민신청을 했고 그 이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R-5의 아버지는 본국에서 1등만 하던 영리한 딸이 제대로 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부유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는 부모가 난민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난민 인정이 별도로 진행되며, 이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많은 난민들은 아동이 출생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난민신청절차만을 진행한다. 또한 난민신청 및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난민실이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 31조, 동 시행령 제29조

소속되어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도 난민의 특수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아동의 신분을 증명할 여권이 없는 경우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을 거부하고 이후에 아동의 미등록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들도 있다. 또한 난민불인정취소소송중인 부모들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채로 출국기한만을 유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하여도 체류자격부여신청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남편이 아이들의 외국인등록을 하러 갔는데 난민신청을 먼저하고 오라고 이야기 했고, 난민신청 후에 6개월짜리 외국인등록증을 주었어요. 그 후에는 남편이 이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이 남편과 함께 등록되었어요. 출입국사무소에 아이의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한국어 배운 곳에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가 적혀있는 책자를 나눠주었고 그것을 읽어보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 책자가 없었다면 이런 과정을 몰랐을 거예요. 인도적체류자격을 받은 이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다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는 비자가 생겨 지위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H-6 아동의 어머니)

현재 저와 남편은 몇 년째 난민신청 결정이 나지 않아 취업허가만을 받은 상태예요. 첫째와 둘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둘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권이 없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안 해줬어요. 대사관에서는 라이베리아로 직접 가서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권을 가져오라고 했고,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3개월 정도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6개월쯤 되자 갑자기 외국인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의 3개월 미등록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어요. (A-3 아동의 어머니)

첫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했지만 둘째를 출산했을 당시에는 부모 소송이 진행 중 이어서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둘째의 아이 외국인 등록은 하지 못했어요. (F-4 아동의 어머니)

### 1.3 가족관계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본국과 한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편부나 편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오히려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례도 있다.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 아동을 돌보는 경우 경제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무슬림여성이 남편의 구급이나 일방적 이혼선언 등으로 혼자되는 경우에는 가정과 아동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 무연고 난민아동이 입국한 사례가 없었으나 2012년에 최초로 15세의 무연고 난민아동이 입국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례가 되고 있다. 이 아동은 사례 A-7으로 난민지원단체 임시숙소에서 약 3개월 기거하다가 기독교 가정에서 함께 살게 되었으며, 다문화학교에 다니고 있다. 난민가족은 다양한 이유로 분거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다.

아이들 셋이 한국에 왔다(큰 딸 28세, 큰 아들 26세, 막내아들 19세) 막내아들은 난민인정 받았으나 큰 딸과 큰아들은 인정되지 못하였고 난민 소송중이다. 엄마는 비자가 거절당해 한국에 오지 못하였고,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이 미얀마에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R-4 아동의 아버지)

본국에 4명의 자녀들이 남겨져 있으나 국제전화카드에 돈이 없어 자주 연락하지는 못해요. (F-1 아동의 부모)

큰아들이 두 달 전에 한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했다. 아버지와는 이십년, 어머니와는 거의 십오년 못 봤었다. 학교는 지금 가다 못 가는데 계속 일 같은거 하다가 지금도 학교 가다가 일하고 나랑 있어. 나는 어떻게 할지 몰르겠어요. 계속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돈이 너무 힘들어서... (F-2 아동의 부모)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생긴다. 위급한 상황에서 본국을 탈출해야 하는 경우, 난민 인정을 받아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도 가족 초청 비자 거부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난민 가족의 재결합이 지속적으로 유보되는 경우가 생긴다.

## 2. 일상생활

난민아동들의 일상생활은 여느 아동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 부모와 자신들의 체류 상황, 즉 난민 지위의 획득 유무에 따라 생활의 근간이 달라진다. 더불어 그들의 일상생활은 여러 사회적 관계들,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어린이집, 민족 공동체, 지원단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절

에서는 일상생활의 영위에서 특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구사, 난민아동들의 일상생활의 모습, 그리고 생활환경의 토대가 되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 2.1 언어 구사

사례 아동의 대부분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미만인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1) 모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와 2) 모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경우로 나뉘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 1언어는 한국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모국어보다 한국어 구사가 더 능숙하였다.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로로는 난민아동의 경우 부모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고 사례 A-9 아동의 경우와 같이 아동이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접하게 된다.

아직 단어만 이야기해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비로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어요. 물어보다는 한국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A-9 아동의 어머니)

언어를 배우는 시기의 영유아의 부모 중 본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A-9의 경우처럼 아이가 모국어 단어보다는 한국어 단어를 더 많이 안다며 한국어 실력을 모국어 실력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 아동들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며, 아동이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하지 않고 부모 스스로 한국어 구사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언어발달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는데 이런 경우에 아이의 언어적 발달 지연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동발달 검사결과 및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맞춤법과 글짓기 능력에 있어서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다소 뒤처지기도 하지만 언어적 발달 지연으로 인한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되는 편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이들이 제 1언어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부모와의 구사언어와 실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C-1 아동의 경우 아이가 모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어머니의 한국어 또한 유창하지 않아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힘들다고 하였다. A-6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한국의 교육기관에 보내며 선생님과의 의사소통문제로 고생을 하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여 현재는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모국어를 사용하여 아이와 소통하려 하지만 아이가 모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A-6 사례처럼 어머니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아이와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 하여도 아이가 학교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가져올 때나,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는 읽기와 독해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거나 학교 공부를 돕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엄마와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 해서 한국어, 불어로 대화해요. 아빠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말리어로 아이들과 대화해요. 아이들이 아빠와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말리어를 잘 이해 못하면 아빠가 가끔 모국어를 모른다고 짜증낼 때가 있어요. (A-6 아동의 어머니)

이와는 반대로 가족구성원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R-6 가족의 경우, 어머니는 한국어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지만, 콩고 토착어인 링갈라어와 불어를 사용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를 지키고 있다. 가족끼리의 대화는 링갈라어로 자녀들에 대한 비밀이야기는 부모들끼리만 아는 언어로 소통을 한다. 영어와 불어의 다중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의 언어능력은 학교생활 등에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우리 얘기, 엄마 비밀 있으면 기공코로 해요. 콩고 남부로 가면 링갈라라는 언어가 있어요. 첫째아들 둘째아들은 불어는 하는데 부인하고 말할 때는 기공코와 링갈라로 해요. (R-6 아동의 아버지)

4개국어요. 링갈어, 불어, 영어, 한국어. 제일 잘하는 언어는 한국어요. 그 다음 불어 영어 그리고 우리말이요. (R-6 첫째아들)

한국에 왔을 때 바로 2학년으로 하면 서투르고 잘도 못해요. 그때가 9살인데. 그래서 1학년부터 들어갔어요. 자신 있는 언어는 영어랑 한국말. 불어도 자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 하다가 한국말이 나와요. 엄마랑은 링갈어, 불어. 아빠랑은 프랑스어. 방과 후 영어수업은 좀 수준이... 어려운 것만 나오면 애들이 질 쳐다봐요. (R-6 둘째아들)

R-6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본국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모국어로의 소통이 원활한 경우이지만 모든 가정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많은 난민가정의 경우는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입국한 경우이다. 아이들은 교육, 종교기관, 또래 관계 등을 통해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어가 곧 제1언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아동이 모

국어 잘 구사하지 못 하고 부모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모국어교육에 열의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유로는 모국어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당장 아이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든지, 지금은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의 대답이었다. 심지어 H-1 아동의 어머니는 모국어습득과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며 한국어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영어사용을 강조했다.

아이들은 오직 한국어만 써요. 그들은 전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어 사용 안 해요. 한국어는 반드시 해야 하고 파키스탄은 해봤자 모르고 모국어는 쓸 필요 없고 영어는 필요하니까 해야 해요. (H-1 아동의 어머니)

이처럼 모국어 보다는 영어구사의 필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었는데 아이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아이를 국제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를 반드시 아이에게 가르쳐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영어는 미얀마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얀마어는 배워도 쓸데가 없어요. 저는 둘째아이를 다문화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한국말 못 배울까봐 걱정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문화어린이집은 다른 애들이 괴롭힐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한국 어린이집 갔으면 한국어 빨리 배웠을 거 같아요. (A-1 아동의 어머니)

H-1와 마찬가지로 A-1의 어머니도 모국어 습득보다는 한국어, 영어의 습득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다문화어린이집에서의 학습이 자녀의 한국어 습득에는 그다지 좋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저는 아이가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아이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을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한국에 살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한국말을 잘하게 되어 더 이상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으면 해요. 만약 한국에 살면서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A-5 아동의 어머니)

A-5 아동의 어머니는 지속적인 영어사용을 위해서 자녀의 외국유학도 고려중 이라고 한다. 현재 실직상태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A-10 아동의 아버지는 자녀들과 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첫째 딸에게는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첫째아이는 일어나면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영어책 같은 거 있어요. 가르쳐 주고. (A-10 아동의 아버지)

한편, 의견으로 인해 영어사용을 오해받는 난민아동의 사례도 있었다. A-6 사례의 경우 주위사람들이 자녀들의 의견만 보고 영어를 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항상 영어로 말을 걸어온다고 한다. 영어로 대답을 못할 경우 왜 영어를 못하는지 묻는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A-6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어사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기대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이가 영어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잘 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영어를 가르치고 싶고,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A-6 아동의 어머니)

위에서 살펴본 사례 대부분의 경우, 난민아동들의 한국어능력은 부모들이 인식하는 것 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학습은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부모들이 모국어 교육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영어교육이었다. 본국을 떠나 살 수 밖에 없는 제각각의 사연으로 난민이 되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의 장래는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난민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의식하고 있었다.

## 2.2 일상생활

난민아동들의 일상생활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평일의 경우 몇몇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정해졌다. 주말의 일상은 그들이 소속한 민족 공동체, 종교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의 제약요소에 대해 아동의 안전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지적도 다소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R-6 가족의 세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R-6 가족의 경우, 자녀 세 명 모두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여느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이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방과 후 수업이 있을 경우 참석하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첫째아들의 경우, 축구선수로 촉망받고 있었으며, 방과 후 축구연습을 해오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요즘은 축구를 빈번히 할 수 없다고 했다. 둘째아들의 경우 장래희망이 목회자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이야기도 하며, 교회에서 책정리를 도와 주고 있다. R-6 사례의 경우, 아동들이 연령에 비해 성숙함을 보였고 그들의 일상 생활의 활동들은 자신들의 장래 계획들과 관련 있었다.

일상을 보내는 곳은 학교와 집이요. 요즘은 국가시험(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 있어요. 맨날 남아서 공부해야 되어서 6학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방학할 때까지 학교 끝나고 애들하고 놀고. 옛날에는 축구시합을 했어요. 근데 요즘 게임을 해요. 셋이 같이요. (R-6 첫째아들)

학교 마치는 시간이 저는 3시도 있고 조금 늦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영어 방과 후 수업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영어를 계속 시켜서 빠지면 안돼요. 또 영어 끝나고 나서 축구도 하고 빨리 갈 때도 있고, 집에 와서 세수도 하고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기도도하고 말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 놀 때도 있고, 평일에 시간이 나면 게임을 해요 형이랑. (R-6 둘째아들)

학교 끝나면 가끔 집에 혼자 올 때도 있고 가끔은 오빠들하고 같이 와요. 방과 후 영어수업 있을 때 집에 같이 와요. (R-6 첫째딸)

R-1 사례의 경우는 아동의 청각장애로 인해 어머니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줄곧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나가고, 가끔 일요일도 일을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요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석 못할 때도 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싶지만,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전혀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이 사는 곳이 민족 공동체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같은 민족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막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말에 마성에서 김포종합복지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일요일에는 남편이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평일에는 아기 때문에 못나가요. (R-1 아동의 어머니)

R-2 사례는 R-1 사례와 같은 공동체로, 공동체 중심의 일상생활이 이뤄진다. 공동체 사무실에는 주말마다 난민지원단체와 자원활동가들이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R-2 가족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 활동들에 참가하고 있다. 그 이외 시간이 생기면 근처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 출신의 친구 집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가족의 주말의 일상이다.

주말에는 보통 아이들이랑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아이들이랑 여기저기 놀고 친구들 집에도 놀러가고 친구들이 우리집에 놀러오고. 지난주부터 우리사무실에 사진교육 시작했어요. (R-2 아동의 어머니)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아 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례들의 일상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H-1의 경우도,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쉬는 주말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의 난민신청 이유가 크리스천으로서 당하는 박해였으며, 어머니가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쳤으며, 아버지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여러 교회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종교가 H-1 가족의 일상생활을 결정짓고 있었다. F-2의 경우도 미얀마의 친족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일하러 가끔 가지만, 주말에는 친족공동체들이 모이는 가정집(친족사무실)에 모여서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친족사무실 근처에 있는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 친족언어로 이뤄지는 그들만의 예배시간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도움은 거의 받지 않은 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매달 집세와 운영비를 내고 있다.

나는 막내딸을 하루 종일 돌보고, 아들들은 주중에는 10시부터 6시쯤 와요. 저녁은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함께 교회가요. 11시부터 2시에 교회를 가요. (H-1 아동의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혹시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 있어요. 주말에는 교회가요. (F-2 아동의 어머니)

난민아동들의 일상생활을 결정짓는 부정적인 제약요소들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많이 언급되었다. 크게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 여건에 의해 일상생활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본국에서 딸과 단둘이 빠져나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A-5 아동의 어머니는 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언제나 딸이 여자이기 때문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

현재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나에서나 한국에서나 항상 딸이 여자아이로서 위험에 처할까 불안했었는데 그나마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A-5 아동의 어머니)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슈퍼를 가는 길에도 어떤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아이가 경험하고 관찰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는 스펀지 같아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부모가 해로운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H-4 아동의 아버지)

낯선 외국에서 살아가는 긴장감과 걱정으로 인해 부모들의 아동들에 대한 과보호 경향이 드러난다. 특히, H-4 아동의 경우는 어릴 때 앓은 질병 때문인지 부모의 과보호적 모습이 한층 더 부각된다. A-1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거의 외국인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였으나, 외국인이라서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으며 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도 되도록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아들은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양가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둘째아들의 경우는 어머니의 지나친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발달이 지연되고 있었다.

외국인이라서 외식도 잘 안 하고 집에서 먹는 게 더 편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도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장보러 집 앞에 나가거나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집에 있고 밖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A-1 아동의 어머니)

한편, 난민 신청 중에 있는 A-3와 난민 불인정된 F-5의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체류상태로 인한 제도적인 배제상황과 정서적 위축감이 드러난다.

방과 후에 아이가 친구 집에 가기를 원하면 되도록 보내주려고 하지만 아이의 아빠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A-3 아동의 어머니)

아이를 가끔 밖에 데리고 나갈 때가 있기는 해요. 한국에서 아이 보험이 가능하다면 아이를 데리고 자주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 제 체류자격이 미등록이기도 하고 아이가 다칠까 데리고 나가기가 걱정이 돼요. (F-5 아동의 아버지)

또한, 난민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기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난민아동들은 주로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하는 지역의 센터나 교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는 난민아동들도 있었다.

사정상 아이를 어디에 데려간 적은 없지만, 다문화센터에서 수영장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다녀온 후에 나와 함께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 했어요. (A-5 아동의 어머니)

한국에서 지낸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지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딱히 없어요. (C-1 아동의 어머니)

아이들에게 항상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지만 자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A-3 아동의 어머니)

난민가정들은 체류자격의 불안정함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할 여유가 없다거나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정 내에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 2.3 경제 상황

난민들의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취업이다. 취업은 난민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sup>5)</sup>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들은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고, 그나마 취업활동이 가능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만원을 아이 양육비로 보조받고 있어요. UNHCR에서도 30만원을 보조 받았어요. 여기에 제가 일주일에 3-4회씩 시간제 영어 보조교사로 일해서 시간당 3-4만원을 받아요. 정규교사가 빠질 때 대타로 일하기 때문에 이 일도 매우 불규칙해요. 정규 교사로 일하면 월 60-70만원을 받지만 일자리를 주지 않죠. 여기에서 집 월세비 20만원을 내고, 아이 병원비를 제하면 생활비로 10만원이 남아요. 저는 어떤 때는 밥을 먹고 어떤 때는 먹지 못 하죠. (H-5 아동의 어머니)

인도적 지위를 받은 파키스탄 출신 사례 H-5의 어머니의 경우 UNHCR의 보조금과 영어 자원을 통한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활동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소송중인 난민신청자의 경우 경제 상황은 더욱 불안정하다.

5) 이호택·김종철·형수진,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2006년 난민 신청을 한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부부가 민속 무용단원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댄스 수업도 해봤고, 부인은 아프리카식 머리 땋기(braids)를 해서 돈을 벌고 저는 닥치는대로 아르바이트로 육체노동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인은 전혀 일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요. ‘남자’로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제공하는 아이 교육비가 20만원인데 아이 유치원비가 30만원이에요. 우리가 난민신청자인 줄 알지만 “외국인도 다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며 값을 안 깎아 주죠. 집 월세가 45만원인데 벌써 두 달째 못 내고 있어요. 우리네 식구가 먹고 사려면 최소한 120만원이 필요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만원 이상 수입을 얻기는 정말 힘들어요. (C-2 아동의 아버지)

난민 인정을 받는다 해도 상황이 크게 변화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난민 인정은 체류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는, 난민 정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즉, 주택지원, 취업알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R-3의 아버지는 2005년 난민 인정을 받았고, 그 후 방글라데시에 살던 큰아들, 태국에 살던 작은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후 2006년 같은 종족의 여성과 결혼하여 드디어 2007년 온 가족이 재결합했다. 그 후 가족 모두 난민인정자가 되었지만 체류자격을 획득했을 뿐 가족의 삶에 큰 변화는 전혀 없다. 의료보험은 있지만 의료 지원이 되지 않아 얼마 전 넷째 딸 출산 시 4백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여섯 가족이 어렵고 살고 있지만 기초생활 지원이나 의료 지원, 다문화아동 지원 등 어떤 지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 사례 R-5의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2010년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받은 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이가 둘(12살, 18살)이라 한 달에 최소 100만원을 써요. 집은 방 두 개 월세로 25만원을 내요. 그 외 기본적인 비용,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식비 포함한 비용이 40만원이에요. 나는 앙골라 사람이라 포르투갈어도 하고 콩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하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 기회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육체노동을 해야 해요.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저기 아르바이트를 해요. 현재는 화학용 얼음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하 40도에서 일하고 월 평균 60-70만원을 벌어요. 장갑은 끼지만 화학 약품으로 손이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 공장에는 외국인만 일해요. 지원을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R-5 아동의 아버지)

사례 R-6의 가족은 아버지가 2008년에 난민인정을 받은 후 온가족이 가족재결합으로 한국으로 입국했다. 아버지는 2008년 초 난민인정을 받게 되자 한국의 대학원에 다시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문을 쓰고 졸업한다. 가족의 사례가 동아일보에 소개되자 그것을 읽은 Z기업의 미국인 임원이 그들을 돕고자 취직시키려 했으나, 석사논문의 내용도 위험하고, 콩고의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한국인 부하직원들의 만류로 인해 무산된다. 직장대신 1년간의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가족은 새집으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금전적인 고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Z기업의 임원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취직자리를 마련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받아 가족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다 어려워요. 저 우리는 난민이잖아요. 일자리 없어요. 일자리 없어 일자리 없으면 돈 없어.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면 친구는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없냐고 묻지요. ‘아빠 우리아빠 미워’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으로 가자고 해요. 은행에 가도 돈이 없다고 말하죠. 이렇게 한국에 오면 한국 애들은 학교와 학원에 돈 많이 나가요. 우리 애기들은 학원 못가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가요. 못 보내요. 이사람 학원 못가. 이 사람들 난민이야. 한국말로 난민 가난한 사람 푸어. 당신은 왜 계속 가난하지? 이것은 매우 다르지. 월급은 150만원 받아요. 이렇게 집에 집주인한테 계속 돈 보내야 하고, 큰 문제 있으면, 우리 애기엄마 아파서 병원비가 50만원씩 들어요. 그럴 때는 밥도 못 먹어요. 근데 집주인이 제가 돈을 못 보내면 여기로 와요. “아빠 있어? 왜 돈 안 보냈어?” 그러면 저는 “조금 문제 있었어요. 15일까지는 보낼게요.” “빨리 보내!” 진짜 어려워요. 한국정부 도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면 유엔 가서 난민 빼주세요라고 나는 말해요. 제가 컨퍼런스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 서울에서 난민 컨퍼런스 하는데 이렇게 문제 있으면 우리는 유엔이 가면 괜찮아요. 자유롭게 문제없어요.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그런데 우리 혼자 가면, 노동부에 일자리 알아보러 가면 한국사람 일자리라고 거부당해요. 근데 또 법무부에 가면 “오케이 나중에 전화할게.” 하면서 연락 안해요. (R-6 아동의 아버지)

난민신청자는 제한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중인 신청자나 난민불인정자에게는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NGO나 안산글로벌아동센터, 교회, 지인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라도 간헐적인 아르바이트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불법취업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인해 그나마 그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다.

2년간 아버지가 직업이 없어서 안산외국인주민센터에서 받는 지원과 교회의 도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F-4 아동의 어머니)

인도적 체류허가나 난민인정이 된다 하여도 한국어를 하지 못하거나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A-9 아동의 아버지는 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지만, 한국에서는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지 9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버틸 수 있는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끼니를 거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굶어도 아이와 아이엄마를 굶길 수는 없어요. 생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겠지만 이대로라면 너무 힘들어요. 캐나다나 다른 나라 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고 싶어요. (A-9 아동의 아버지)

난민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이 현실에서의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체류자격, 그리고 사회적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합되어 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아동의 양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동들의 교육기관 이용에도 많은 제약을 불러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증가시킨다.

아버지는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60-70만원이고, 평소보다 며칠씩 더 일을 나가면 80-100만원을 벌기도 해요. 4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는 아이들 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100만원정도라서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스비와 전기료도 체납되어 있어요. (A-11 아동의 어머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안산 공장 맡구요, 아내는 (이태원에서) 아프리카 머리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안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서 왔고, 아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죠. 2002, 2003, 2004, 2005년까지만 해도 비자 없어도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ID 외국인등록증 없어서 힘들어요. 지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나는 때때로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것이든지, 어디서든지 오라고 하면 다해요. 체류자격이 없으니까. 2011년에 거절당하고, 2012년에 내 아들이 아파서 수술이 필요했고, 나는 피난처로 갔고 거기서 보라매병원을 소개시켜 줬어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사회복지사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ID카드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피난처에 미스터 홍이 나를 많이 도와줬고 수술하고, 그 때 스페셜 ID카드를 받았어요. G1-5 메디컬카드를 발급받았어요. 하지만 이 카드로 일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50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해요. (A-8 아동의 아버지)

난민신청자의 삶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제도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A-8 아동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 여러 단체들에 자신의 처지의 호소하여 지원금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되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되요. 아이 어린이 집 수업료도 내야하고, 가족이 먹어야 할 주스 등의 식료품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보증금을 한번에 내지 못한 돈을 지원받은 돈을 모아서 갚기도 했어요. 하지만 식료품을 살 돈이 넉넉하지 않아 아침에만 밥을 먹고 있어요. 가끔씩 쌀이 없어 아이에게 아침으로 라면을 먹이려 하면 먹기 싫어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라면도 먹이지 못하고 어린이 집을 보낼 때가 있는데 아이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어린이 집을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능하다면 식료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A-4 아동의 어머니)

세이브더칠드런등에서 받는 지원금만이 고정된 수입원이라고 하는 가정도 많았는데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감사함을 표현했다.

현재 취업이 허가 되지 않아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 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면 집에서 잠을 자거나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얼른 일을 구하거나 뭐라도 배우고 싶어요.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끔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기면 일은 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아 수입이 없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외부지원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지원금이 전부예요. 지원받는 돈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이러한 심적 여유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A-5 아동의 어머니)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삶의 불안감이 크고 사회적 연결망도 제한되어 있다.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서 정규적인 직업이 없어요. 가끔

미용실에서 머리 깎아주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일 있는 일은 아니라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네요.(C-1 아동의 어머니)

아이가 이제는 학교를 다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영어 개인교습이나, 규칙적이지 않지만 다문화 강사를 했어요. (H-2 아동의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면서,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들은 제대로 된 취업도 확보 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H-2의 경우, 어머니 홀로 자녀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고, 어머니도 인도적체류자격을 획득하게 되면서 취업에 제한은 없어졌다.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영어, 불어 실력은 물론이고, 기품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재 그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는 어렵다. H-2 가족은 어머니가 영어 과외에서 벌어오는 40만원의 월급과 가끔씩 요청받는 다문화강사, 강연부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집세와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취업허가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몇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일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만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주가 몇 개월 정도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어 취업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취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들이 그런 형태의 비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례 A-10 아동의 아버지는 산재로 인해 지금 실직 중이다.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집세는)... 지금 여태까지는 내가 내고 있는데, 우리 힘들어요. 지금 너무 상태 안 좋아서. 뭐 그쪽 갔어요. 그때도 저한테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허리 산재처리 하려 했던 거, 그리고 노동청 가려했던 거, 내가 첨에 모르는 채 그냥 갔어요. 그 답에 내가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청했어요. 안 다쳤으면 내가 일할 때는 괜찮아서 월급도 벌고 했는데, 상태가 괜찮으면 제가 뭐 먹고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일 하면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저 회사에서 12시간 일하면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앉으면 지금도 허리가 계속 아픈데, 일하면 어떻게요. 좀 그래 돼 가지고. 그리고 비자도 3개월 밖에 안줘요. 그러면 지금은 사업자한테서 일하기 때문에 3개월짜리 비자들고 들어가서 일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도 3개월은 못한대요. 아니면 1년은 있어야 되는데. 1년 이상은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갈 수 있긴 있는데, 이것도 찾기 힘들어요. (A-10 아동의 아버지)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A-10 사례

의 경우, 지방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난민신청, 난민절차, 난민지원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A-10 아동의 아버지는 부족한 정보이지만, 직접 찾아가서 묻고 부딪히는 방식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난민신청을 하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기는 했으나, 3개월 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체류조건의 노동자는 고용주들에게는 그다지 매력 없는 노동자였다.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직업이 안정되면 다 괜찮아요. 근데 직업이 불안하면 가족도 모두 불안해요. 우리에게 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돈 주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 경쟁해서 일 잘하면 월급도 올라가요. 한국 사람들 문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 때문에 한국인은 힘들다고 해요. 취업도 한국 사람도 힘들어요. 지원은 아까 말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되요. 돈 지원하면 좋은데 계속 필요해요. 우리는 제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서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부모님들이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R-6 아동의 아버지)

난민가정의 경제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보장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 3. 양육 및 교육

양육이나 교육은 가족을 통한 사회화를 통해서, 혹은 공공영역에서의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이뤄진다. 전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난민 가족은 대부분 ‘핵가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난민으로서의 상황 때문에 이들이 본국 가족을 초청하거나 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난민아동들이 본국에서 태어났다면 다양한 친족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망을 통한 정보 및 지식의 전수와 감정적 지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성장하는 난민아동의 경우 사랑을 주고 문화를 전수해 줄 본국의 친척들과의 연결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양육과 문화적 전수를 포함한 아이들의 사회화는 오로지 부모를 통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난민 부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높다. 이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이고 또한 난민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받거나 좌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교육열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열이나 자녀의 성취도에 대한 기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 3.1. 교육 참여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인정유아 중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5만9천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월 19만7천원, 만 4,5세 유아의 경우 월 17만7천만원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그 외의 체류자격의 경우에 정부에서 나오는 별도의 보육료 지원은 없다.

연구자들이 인터뷰한 가정의 만2세 이상 영유아 중,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은 9명 (이 중 난민인정자 아동 2명, 주중 일부만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2명), 비영리단체운영 (다문화) 유치원 재학 중인 아동은 9명,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아동은 6명, 장애로 유치원 입학이 거부당한 아동은 1명이었다.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월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높은 학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동의 교육에 강한 열의를 보이며 학비가 너무 비싸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를 위해 교육비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구세군, 월드비전, 코시안의 집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어린이집·유치원 의 경우 사립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산, 동두천, 구로 등의 몇 지역에서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른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 아이들 유치원비는 22만원이에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만원을 지원 받는데 거기에 2만원을 보태서 지불해요. 아이들은 다문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요. 집에서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살아요. 여기로 이사 왔어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5만원인데 3만원 깎아 줬어요. 정부 지원을 통해 공짜는 아니고 다문화가정 한국 애들은 공짜예요. 큰아이는 코시안의 집에 다녀요. 같은데서 운영하지만 원비가 달라요. 건물도 다르고 6살, 7살을 위한 유치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H-1 아동의 어머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교육기관에 주 중 며칠만 보낸다거나 보낼 수 없다는 가정들도 상당수이다. 이 아동들이 사는 지역 주변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유치원이 없고 사립기관의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10 아동의 아버지의 산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멈춘 상태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낼 형편이 아니라 텔레비전과 책 등을 활용하여 아버지가 직접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R-4 아동의 아버지 또한 장례용품회사에서 받는 100만원의 월급으로 자신과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고,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송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살 먹은 막내아들의 한국어교육은 물론이고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선 자신이 터득한 한국어를 미얀마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에서 매주 직접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는 보내고 싶지만 아빠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일요일마다 10명 정도를 모아놓고 내 아이들 3명을 포함하여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R-4 아동의 아버지)

A-9 아동의 어머니는 현재 임신 7개월으로 3살짜리 아들이 있다. 어머니는 이전까지는 아이를 주 2회 어린이집에 보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금을 받고나서부터는 주 3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 3회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아이가 매일 어린이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표하였다.

난민가정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소외의 경향을 보이는데 아동의 경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생활을 통해 비로소 이러한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학 심리, 정신, 육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F-1 아동인데 이 아동은 아동전문가의 관찰조사에서 개인-사회성 발달 및 언어발달 부진을 보이며 말을 심하게 더듬어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F-1 아동의 부모님은 난민불인정이 된 이후 체류자격으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취업 또한 불가능하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 중단한 상태이다.

아이가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린이 집이에요. 어린이 집을 몇 개월 다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못 보내게 됐어요. 아이가 혼자 있고 할 일이 없으니 칭얼거리고, 항상 울어요. 매일 아침마다 어린이 집에 간다고 준비하고 엄마, 아빠의 손잡고 달려가요. 어린이 집 선생님께 전화하라고 조르는데 지금 못 간다고 하면 울어요. 부모의 체류자격 때문에 아이가 항상 혼자 있고 집에만 있으니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어야 하고 바깥에 사람들이 만나러 나가지 못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하면 답답해하며 화를 내요. (F-1 아동의 부모)

사례 A-6과 A-11을 통해 아동들이 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부터 사회성이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6 아동의 부모는 집세를 생각하다 보니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외진 곳에 집을 얻게 되면서 다소 외부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겁도 많고 밥도 잘 안 먹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집에 다니기 전에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겁도 많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계속 울었어요. 하

지만 어린이 집을 다닌 후에는 밥도 잘 먹고 잘 적응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A-6 아동의 어머니)

한국에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난민아동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신분에 관계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난민법 제33조, 제44조) 다만, 국민인 초등학교 취학아동은 취학통지를 받고 중학생은 추천과 배정을 받게 되나, 외국인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입학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6조, 제75조). 하지만 난민아동이나 특별히 미등록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가 입학 절차나 아동의 교육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아동의 입학이 지연된 사례도 있으며, 통장이 거주확인을 거부하여서,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도 미등록 아동의 입학을 허가한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나 모든 절차가 끝난 경우와 같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또는 무국적인 경우에 미등록 아동은 모든 교육기관의 단계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한 학생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 유치원 또한 입학과 수학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에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몰랐고 보낼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외국인센터에서 일하는 친구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년이 지난 9살 때에 시험을 봐서 2학년부터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회 사모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알아봐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도 외국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나 봐요. 모르니 저희 (부모) 여권복사하고 청강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했는데 학교를 옮기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동네에 동장, 통장 분들에게 사인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학교 분들이 도와줘서 새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일하는 곳은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너무 멀지만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이가 이 학교를 좋아해서 이사 갈 수 없어요. (A-1 아동의 어머니)

이전에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 집을 찾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집 주위 어린이 집들은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이 ID가 없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 안산에 있는 코시안 어린이 집에 들어 갈 수 있었어요. 큰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우선은 아이가 ID가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장님에게 거주확인을 받아 오라고 해서 동장님을 찾아 갔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거주확인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다시 찾아서 사정을 해 아이의 입학을 허가 받았어요.  
(F-4 아동의 어머니)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외국인의 고등학교 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원칙상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유학생으로서의 D-4체류자격이 필요하지만, G-1 체류자격을 가진 인도적체류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된 H-3 사례 여성의 경우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D-2 체류자격이 요구되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이 요구되는 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난민의 경우 국내이수학력에 기하여 수학능력시험응시나 외국인특례전형입학이 가능할지 리딩케이스가 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은 응시하지 않았고, 외국인특례입학전형을 준비 중이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보를 얻는 출처는 없다, 인터넷을 통해 찾는다, 고향의 부모님에게 물어본다, 지인에게 물어본다, 경험을 통해 체득해 나간다는 등의 답이 있었으며 교육기관의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여 다른 한국인 부모들과 교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다수였다. 하지만 다문화어린이 집, 유치원이나 외국인이 많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부모들은 다문화 부모 모임에는 종종 참가한다고 한다.

국가별 민족커뮤니티가 잘 구성된 경우에는 커뮤니티구성원들로부터 한국체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립성이 매우 심각함을 볼 수 있었는데 사례 A-11 아동의 어머니는 남편은 한국에 파키스탄 친구들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한국에 온 이래로 파키스탄 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해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등의 염려로 갈등을 피하려하며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선생님과 문제를 상담한다거나 하는 것에 있어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 3.2 학업상태 및 또래관계

난민아동들은 지역 교육 환경이 외국인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적응력과 또래관계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아시아 출신 이주결혼가정 중심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개방성과 아프리카 아동들에 대한 개방성은 또 다른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미얀마 출신인 A-1 아동은 학교에서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과 부터 많은 시선과 놀림에 힘들어했는데 안산에 이사 온 후로는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학교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 출신 사례 A-5 아동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언어적인 소통도 힘든데다 다문화가정 친구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사례 H-6 아동 또한 지역에 유일한 아프리카인으로 아이가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태원에 거주하는 사례 C-2 아동의 경우 동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 문제를 못 느낀다고 했는데 지역에 대사관 아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아이들과도 거리낌 없이 집을 오고가며 시간을 보내 어머니가 친구들과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에 대해 걱정할 정도라고 했다.

큰애는 울고 온 적 있어요. 애들이 자기를 외국인이라고 한다고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를 외국인이라고 하나 아직 어려서 잘 몰랐어요. 맨날 큰애가 울음보였어요. 전에 수원에 있을 때 힘들었다고 해요. 방학이 다 되어서 들어가서 책이 없어서 선생님이 챙겨줘도 몇 개 없어서 너는 그것도 없니 이래서 울고 그랬는데 (수원에서 아마도 학교에서 받아들인 첫 외국인아이였던 것 같아요.) 안산 와서는 괜찮아요. 다문화 애들이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지금 아버지는 광명에서 일해요. 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좋아해 이사 갈 수 가 없어요. (A-1 아동의 어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국어로만 설명해주고 영어로는 설명해주지 않아 다음날이 소풍인줄 모르고 있다 혼자 소풍 갈 준비가 안 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친하게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바보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아이를 위해 다문화학교를 알아보고 있어요. (A-5 지원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아이들이 밖에 놀러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같이 놀고 싶지 않은지 가버려요. 유치원에서도 친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대부분 중국, 베트남 아이들이고, 사는 동네도 달라서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H-6 아동의 어머니)

### 3.3. 부모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부모들은 현실적인 여건과 별개로 양질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치와 의무감이 매우 높았다. 사례 A-2의 어머니는 남편이 강제송환 된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7자녀 중 2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공부를 할 것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을 보였다. 사례 A-3 과 A-4 아동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아이들이 경험했던 교육의 수준과 비교하여 현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례 A-3의 어머니의 경우는 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다가 둘째 까지 어린이집을 가야할 나이가 되자 경제적인 사정을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영리단체 운영 교육기관으로 옮긴 경우이다. 하지만 과거 사립유치원에 다닐 때는 영어수업도 있었고 숙제도 많이 내줬었는데 지금 다니는 유치원은 야외 활동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아 아이의 인지 발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염려를 표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염려 또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육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가 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교육환경이 훨씬 낫다고 하였으며 아이의 교육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돈만 있다면 무조건 다 시키고 싶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태권도, 피아노 뭐든 다 시키고 싶어요. (A-2 아동의 어머니)

첫째가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 집은 교육비가 비싸 두 아이 모두를 어린이 집에 보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드비전 어린이 집을 보내고 있어요. 이전 어린이 집에서는 비싸긴 했지만 숙제도 내주고, 한글도 가르치는 등 인지적 발달에 필요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지만 현재 어린이 집에서는 견학, 소풍, 바깥놀이 등의 활동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 다소 걱정이 되요. (A-3 아동의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나쁘지는 않지만 아이 교육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구하고 돈이 모인다면 의정부와 같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A-5 아동의 어머니)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한국 부모와 똑같이 자신의 아이들이 교육적 수혜를 받기를 열망한다. 이들은 자기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 또한 크다. C-2 사례의 아버지는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아들의 춤추는 모습을 연구자들에게 꺼내 보여주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아주 놀랄만한 일을 한다고 말한다. C-2 아동은 아주 유연한 몸놀림으로 춤을 아주 잘 쳤다. 아버지는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드럼 수업이나 음악 수업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난민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런 재능을 통해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공부' 외에 다른 재능, 예를 들어, 스포츠나 음악 등에 소질을 보이는 것이 아이의 장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재능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아이들이 한국교육기관을 다니면서 부모의 문화와 자녀 문화 간의 괴리가 급격히 확장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음식에서 그 갈등이 크고 빠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국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음식에 익숙해지며 모국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A-6 아동의 어머니처럼 적극적으로 인터넷에서 한국음식 요리법을 찾아 시도한다거나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에 참가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A-5 아동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지 1년밖에 되지 되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며 매 점심을 급식으로 먹으면서 한국식문화에 빠른 속도로 적응한 것과 비교하여 어머니는 아이가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거부하는데 본인은 한국요리를 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이가 한국음식만 먹으려 하고 제가 해주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해요. 여름 방학을 하고 나서는 점심도 집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밥 먹는 문제로 실랑이 횟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을 해주면 좋겠지만 한국요리를 할 줄 몰라서 어려움이 있어요. (A-5 아동의 어머니)

유치원 다니기 전에는 모국 음식을 해서 먹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모국 음식은 맛이 없다고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서 한국음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모국 음식을 먹고 아이들은 한국음식을 먹어요. (A-6 아동의 어머니)

문화적 괴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언어 차이에서도 크게 나타났는데 아이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빠르게 들어가 한국어가 제 1언어가 되는 반면 부모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못해 아이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데서 서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로서 아이의 학교생활을 돕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H-6, F-1, F-4, 아동의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대신 집에서 부모 직접 아이들의 학습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능숙하지 못 한 한국어 실력으로 아이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돕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부모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웃거나 화를 내면 마음이 상하는데 한국어를 진작 배울 수 있었다면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F-2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받아오는 알림장의 내용을 지인을 통해 알아내어 자녀의 준비물 등을 챙겨 주었다. 한국말이 능숙했다면, 아니 여기가 자신의 본국이라면 이런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녀의 교육을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가능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여러 가지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뒷받침하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할 수 없었다.

위 사례들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경제적 곤란 때문에 필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부모교육과 아동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사용했으니 자연스럽게 구사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만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 할 때 아이들은 모르나면서 웃어요. 이럴 때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슬퍼요. (H-6 아동의 어머니)

영상을 보며 영어와 한글을 가르쳐요. 그런데 저희가 뜻을 알아듣지 못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아이가 화를 내요. (F-1 아동의 부모)

학교에 책 받아쓰거나 알림장 어떤 거 썼는지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가져다가 저기 마트에서 알아주는 친구 있어요. 언니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우리도 되면 미안마에 가서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말 공부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요. 예전에 썩크빅 선생님 두 달 정도 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끊었어요. 지금은. (F-2 아동의 어머니)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숙제를 도와주는데 언어장벽이 있어서 힘들어요. 제가 한국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읽기를 잘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아이가 엄마가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도 못해?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아파요. (F-4 아동의 어머니)

부모와 아동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겪는 어려움들도 많다. 교육기관 입학 자체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입학 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례 F-2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난민불인정 상태로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통장개설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직접 어린이집 비용을 지불했으나 두 번이나 못 받았으며 다시 낼 수밖에 없었다. C-2 아동의 경우 또한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갈 때 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 보험 등에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야외활동을 하는 날이면 어린이 집에 가지 못 한다고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날에는 어린이 집에 안 가고 집에 있는 날이라고 설명한다고 한다. A-1 아동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학교 수학여행에 가지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아이가 열의를 가지고 대회참가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없어

자격이 안 된다하여 포기하기도 하였고 학생 교통카드도 만들 수 없어 학생 할인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돈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때에는 은행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은행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물어봤는데 은행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은행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돈으로 줬어요. 돈으로.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때는 문제 조금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교육비 주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은행으로 안 되서 봉투로 직접 줬어요. 여기 옆 집 친구랑 같이 줬는데도 선생님이 안줬다고 그런 적 있어요. 두 번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친구도 봤는데 안 받았다고 두 번씩이나 그때는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F-2 아동의 어머니)

아이가 학교에서 태권도 대회나 한자시험,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하려면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없어 참가 못하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 여권도 없지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으니 여행자보험에 들 수 없어 아이는 갈 수가 없어요. 버스카드 같은 것도 원래 학생 등록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기는 없는지... 친구들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깐 스쿨 बैं킹 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A-1 아동의 어머니)

조사가정 중 한부모 가정은 7가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도 많을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빈곤과 양육의 문제를 모두 혼자 해결해야한다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더욱 크고, 사회적 연결망이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 모두에서 배제될 우려가 높다.

현재 직업이 없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해 줄 수가 없어서 힘이 들어요. 그 밖에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힘들어요. 특히 남자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A-4 아동의 어머니)

이외에도 난민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학교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학교 선생님과 어머니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선생님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양부족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찰도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청기를 잡아당기며 괴롭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는 우리 아이를 계속 돌봐줄 수 없으니 집에 데려가라고 했어요. (R-1 아동

의 어머니)

저기 친구들이 머리냄새난다고 그런 거.. 그리고 한 선생님은 한번 머리에 벌레 있다고 ‘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옛날에 아이가 많이 아플 때 머리 안 감기고 한 달 동안 샤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기 머리는 일주일에 세 번이나 두 번 감는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도 봐본 적 없어요.”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F-2 아동의 어머니)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학교 선생님이 외국인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병원체라며 외국인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R-6 아동의 아버지)

R-1의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해 어린이집 등교가 거부되었으며, 자녀의 위생문제로 지적을 받은 F-2 아동의 어머니,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오해가 담긴 발언을 자녀들에게 전해 듣게 된 R-6 아버지의 경험은 대단히 억울한 사건이었다.

#### 4. 의료와 건강

##### 4.1 아동의 육체적 건강상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으나 아동들 중에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부 있으며, 영아 때 겪은 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난청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1명 있었다.

3일 동안 아이가 병원에 있었어요. 태어나서 일주일 안 지났을 때 황달이여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 태어난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14일 동안 입원했어요. 피 검사 했어요. 검사했는데 귀에 이상 있다고 해서 치료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어요. 아빠는 무릎도 아프고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아이가 울어서 어디가 이상하냐고 물었는데 나중에 귀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데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맡기러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보청기 비싼 거니까 (우리아이만 따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그건 무리라고 했어요. (R-1 아동의 어머니)

첫아이는 크게 태어나서 커서 간호사가 잡아서 (분만할 때 팔을 잡고 꺼내서) 팔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고대병원에서 다녔는데 여기에 30분 동안 체크했는데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약하고), 여전히 그래요. 둘째는 천식 알려지가 있고, 셋째는 (병이) 전혀 없고 건강하고. (H-1 아동의 어머니)

이후 다음 장, V. 아동의 발달 및 심리조사에 대한 장에서 진행된 발달검사에서는 신체발달이 다소 지연 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이 몇 사례가 있기는 하였지만 육체적 건강상태에서는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2 아동의 정신적 건강상태

난민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아동에게도 전가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인터뷰만으로 아동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아동의 발달 및 심리에 관한 별도의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 장(V)에 정리되었다.

난민부모의 배경적 특수성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에 불안정한 체류상태, 경제적 불안감, 환경적 고립이 더해져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숨기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동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숙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다. A-12 아동의 어머니도 딸이 또래보다 더 똑똑하고 성숙하다고 느낀다.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점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밥도 잘 안 먹고 어쩌다 밥을 먹으면 속이 이상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을 알아서 힘내라고 노래를 계속 불러줘요. (A-12 아동의 어머니)

A-5 아동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다. 아이는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동의 어머니는 치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시도 눈을 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오며 한국에 온 엄마와 아이는 유일한 가족으로 친구 같은 존재로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지낸다며 강한 유착관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볼 때에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딸과 저 모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 두 모녀가 굉장히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 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제가 방에서 울고 있었는데 아이가 금방 알아차리고는 와서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더라고요. (A-5 아동의 어머니)

A-1, F-1, F-4 아동의 부모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본인들이 경험한 불안한 심리상태와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A-1 아동의 어머니는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지내다가 뒤늦게 본인이 난민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난민신청을 하였다. 여전히 많은 벌금을 지불하지 못해 미등록상태이기는 하지만 난민인정접수증이 생기고 나서는 마음에 안도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의 미등록 상태로 지내던 동안의 불안했던 부모의 심리를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아직 불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정상 아이들에 비하면 불안하지만 저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애는 전에는 경찰차만 보면 “엄마, 경찰 경찰.” 그래요. 엄마 아빠가 길 가다가 숨어있고 했으니깐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난민신청하고 나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A-1 아동의 어머니)

체류자격 때문에 아이가 항상 혼자 있고 집에만 있으니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어야 하고 바깥에 사람들이 만나러 나가지 못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하면 답답해하며 화를 내요. (F-1 아동의 부모)

부모의 체류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그럴 때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난민이고 왜 콩고에서 왔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첫째에게 가족의 상황을 이해시킬 만한 설명은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F-4 아동의 어머니)

A-4 아동의 어머니는 한국에 오기 전 박해로 인해 남편을 잃었다. 아이의 상황에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대답하였으나 집이 심각하게 어지럽혀져 있었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오고서 부터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엄마의 휴대폰을 독점하며 인터뷰 내내 정서적으로 매우 산만한 상태를 보였는데 이는 마치 엄마가 본인에게 안겨진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인상을 주었다.

아이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 스스로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지만 금방 잊으려 노력하고 나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서 더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A-4 아동의 어머니)

H-5 아동의 어머니는 남편 폭력의 희생자다. 남편은 외국인 보호소에 2년 정도 감금된 후 풀려났다. 이후 자살했던 남편이 돌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때리고 일도 하지 않는다. 남편이 자신을 때릴 때 아이는 심하게 울고, 담요를 덮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매질은 아이에게도 이뤄졌다. 아이는 아빠를 무서워할 뿐 아니라 집 밖에 나갈 때 매우 위축된다. H-5 아동이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어머니와 딸의 삶은 남편의 삶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집이라는 한 공간에서 말을 하거나 교류하지 않고, 세 식구가 단 한 번도 함께 외출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H-5 아동은 매우 심란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5살의 나이로 홀로 한국에 오게 된 A-7의 경우는 한국인 보호자 가족의 집에 체류하고 있다. A-7은 본국에서 경험한 고통스러운 경험과 브로커에 의해 한국 공항에 홀로 남겨져 보호소에서 한 달을 보낸 경험 때문에 우울과 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 A-7은 한국인 보호자를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보호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것, 개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 등이 자신의 이슬람 문화와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윤택하고 좋지만 여전히 낙타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그는 아라비아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태원 무슬림 성원에 간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보호자 여성은 A-7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코란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A-7에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 넣어준다. A-7은 자신이 의지할 본국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적응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 A-7은 자신의 우울과 분열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면서’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완치 된 것은 아니다. 난민의 특성상 박해에서 오는 공포의 경험 뿐 만 아니라 본국과의 단절이 주는 상실감, 문화적 향수, 비호국에서의 고립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정서적이며 정신적 상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회복은 장기적인 시간과 지속적인 치료를 요청한다.

#### 4.3 의료 보장 및 지원 상황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받아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취업허가신청

을 위한 근로계약과 직장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에 가입된 가정은 매우 적다. 임시적 대안으로 이주민건강협회 등의 민간의료공제회에 가입 중인 가정도 있지만 지역에 가입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숫자가 적어 혜택을 별로 받지 못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난민가정의 불안정한 체류, 비정규적인 취업상황 등으로 인해 난민가정의 의료비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난민신청자는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에 의하여 입원과 수술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외래진료에 대하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산의 경우에는 도티병원 등 무료병원이나 병원의 배려로 지원을 받은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비에 대한 보험지원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또한 출산 이후에 아이의 보험이 없는 경우 백신접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 힘들었다고 대답한 사례도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심사를 통해 의료비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H-6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당 100만원으로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아들이 천식이 있어요. 1달에 4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의료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예전에 첫째를 낳았을 때는 남편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해주었지만 지금 직장을 옮기고 나서는 더 이상 보험이 없어요. 저도 저혈압이 있지만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이의 병원비를 냈었고 모든 영수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원받기 위해 갔었는데 이미 엄마의 병원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마다 그저 아이에게 괜찮을 거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H-6 아동의 어머니)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통해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R-1 아동의 경우, 난민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있으나, 청각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드는 의료비가 상당히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사회보장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충당하고 있다.

R-4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과거에 1년간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되어 의료보험은 무상이었지만 매달 3만원씩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시키는 활동을 해야 하고, 더욱이 자신은 장애도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했다고 한다. 또한 R-6 가정에 2012년 11월 태어난 막내딸의 경우와 같이 난민인정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그 아이에 대한 난민신청을 하고 가족결합에 의하여 난민인정을 받기까지 약 2달가량 걸리게 된다. 그

사이 해당 아동에 대한 아무런 신분증명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도 자주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의료보험 있지만) 한 번 가면 20만원, 30만원 들어요. 매 달은 아니고 몇 달에... 저번 달에 두 번 갔다 오고. 사는게 힘들어요. 일 할 수 없을 때 여기 운영 사무소에서 생활 보호 대상이나 기초수급이 되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사회 통합 복지관)국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국장님이 데리고 가서 해결해줬어요. (R-1 아동의 어머니)

인도적체류자 또한 일시적인 체류허가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직장을 다닐 경우, 직장에서 가입하는 4대 보험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나, H-1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새 직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지원 못 받고 직장에서 이런 상황(인도적체류상태)을 좋아 하지 않아서 비자가 있어도 혜택이 없어요. G1-6비자예요. (예전에는) 아빠가 4대 보험 되어서 병원 가는데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직장을 옮겨서) 안 돼요. (H-1 아동의 어머니)

대안적인 방법으로 가입하는 의료공제회 또한 어느 병원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지역 가입 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6 아동의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환절기에는 학교에서 눈물이 나도록 재채기를 해서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편지를 받을 정도로 아이가 자주 병원에 가는데, 이주민건강협회 공제회 의료보험을 들었지만 병원에 갔더니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했다.

미등록 아동의 경우는 수술이나 입원에서 또한 신분 증명과 보증의 문제를 겪는다. A-1 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아이들의 입원이 지연되어 애를 태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도 있지만 미등록 체류자격인 이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더 많은 돈을 내고 일반 병원에 간다고 했다.

아이들이 많이 아팠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산으로 와서 부 터는 아는 교회 사람이 별로 없어서 폐렴으로 두 번 입원했을 때 힘들었어요. 신분 보증해줄 사람이 없었고 보험도 안 되니 50, 60만원씩 필요했어요. 외국인번호가 없어 애들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기록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기록해요. 보건소에 가서 예방주사 맞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갈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게 겁이나 일반 병원으로 가요. 외국인번호가 왜 없는지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면 접종을 맞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요. (A-1 아동의 어머니)

많은 부모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경제상황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크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이들만이라도 안정적인 의료지원과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였다.

## 5. 아동의 정체성 및 미래 기획

난민아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한국에 온 가족 난민보다는 난민으로 한국에 온 부모의 정착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인 경우이다. 이 때문에 난민아동의 출생부터 성장, 교육, 사회화의 전 과정이 한국에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늦게 한국에 입국한 난민아동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학교나 미디어에 의해 빠르게 사회화된다. 이 때문에 난민아동의 정체성 인식은 난민 부모의 정체성과는 매우 다르다. 특히 미디어나 또래 집단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대중매체의 시대의 난민아동의 빠른 한국화는 부모와의 세대적,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서는 난민 부모가 바라보는 아동의 정체성 및 미래 기획을 중심으로 난민아동의 상황을 분석한다.

### 5.1 정체성 인식

한국에서 태어나 장기 체류한 아동의 경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친구를 갖고 있고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지만 자신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부모와 같은 외국인인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의 국적과 생김새가 일반 한국인과 다름을 발견하고 이 차이를 해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신분'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자신이 주변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아동의 부모 또한 아이들의 애매모호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여권이나 서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이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아이는 전혀 정보가 없으니, 한국에서 태어나고 주위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며 자랐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여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H-4 아동의 아버지)

한번은 첫째 아이가 자신도 한국인이고, 친구도 한국인인데 왜 친구의 피부와 자신의 피부색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는 한국인이지만, 너는 라이베리아 사람이어서 피부색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이가 의외로 담담하게 이 설명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는 자신과 어린이 집에 다니는 친구들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해요. 아이가 외할머니와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외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자라면서 본 김밥을 파는 할머니 같이 생겼을 것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A-3 아동의 어머니)

그러나 빠른 한국화가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별 다른 친척이나 친지 등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한 난민들의 경우, 아이에게 자신의 문화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확인이다. 특히 R-3의 경우처럼 방글라데시 출신이지만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주류 방글라데시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은 종족사람들을 만나보기도 어려운 경우 언어적 전수는 고사하고 소수 민족의 문화, 종교, 가치관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조차 어렵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난민 부모들은 아이와 자신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한국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고민에 빠진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믿다가 한국아이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발견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차이를 설명해줘야 한다.

가끔 장난처럼 해요 우리 딸이 엄마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엄마 언어야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들이 한국에 있는데 엄마들이 한국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왜왔어요? 하면 그것도 설명해줘요. (R-2 아동의 어머니)

여기서 태어났지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헛갈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서 충분히 적응시킨 다음에 콩고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H-2 아동의 어머니)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자기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이런지, 머리카락이 안 나는지, 하얗게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바르고 학교에 가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피부색이 이런 것이라고, 엄마와 아빠랑 너희가 닮은 거라고 설명해주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피부색을 가지고 놀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울고

속상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보는 것도 많고 좋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해요. (A-6 아동의 어머니)

저번에는 아이가 자신이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한국음식도 잘 먹고요.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제가 해주는 음식들은 먹으려 하지 않아요. 집 근처에 있는 한국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먹자고 해요. (A-5 아동의 어머니)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동들은 한국 사회의 자민족, 자문화중심주의에 의거한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무지나 위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때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딸이 자신은 ‘미얀마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입국한 오빠와도 대화가 안 돼요. 딸은 한국말 밖에 못하는데 미얀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F-2 아동의 어머니)

애들이 TV에서 아프리카의 사막과 어려운 생활 모습만 봐서 그런지 아프리카에 대해 안 좋겠다고 생각해요. (A-6 아동의 어머니)

아이는 자신이 콩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다만 콩고에 가본 적도 없고 콩고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자신이 콩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마인드와 가치관은 한국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이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C-1 아동의 어머니)

난민 부모는 아이가 한국 사회에 익숙해지지만 외국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아이를 신기하게만 생각해요. 매번 길가를 지나면 어디에서 왔는지, 왜 한국말을 잘 하는지, 한국에서 왜 살고 있는지 등 질문을 퍼붓기 일쑤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사람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네요. (C-1 아동의 어머니)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덕분에 난민아동 또한 자신의 출신국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 다문화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의 경우 모국 정체성에 대해 덜 혼란스러워한다.

어린이 집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나라를 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링갈라 말을 할 줄은 몰라도 콩고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커 가면서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H-6 아동의 어머니)

특히 박해 때문에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의 특성상 부모가 모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유지시키기 보다는 자녀들을 한국아기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나는 내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을 보면 아이들은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외국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익숙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요리를 배우러 다니고 있고. 나도 내년부터 한국어를 배울거예요. 올해는 늦어서 신청 못했어요.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H-1 아동의 어머니)

우리 아이들 학교,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싶어요. 인터내셔널(국제) 학교 갈수 없어요. 돈 없어서. 우리 아기 다시 한국말 한국시스템 익숙해져서 콩고 가면 이 사람들 다 버려요. 내 생각 여기 돈 있으면 국제 학교 보내고 싶어요. 콩고가면 괜찮아. 근데 돈 없으면 이것 정말 문제예요. 머리아파요. 우리 큰아들 중학교 가는데 영어 많이 배우면 머리 괜찮으면 공부 잘하면 오케이 다른 나라 스칼라쉽(장학금)으로 갈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앞으로 붙어 쓰는 나라 아니면 영어 거기가면 공부 못 해. 한국말만 한국시스템 배워 여기 계속 살 거 아니요. 가면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어떻게? 제가 괜찮아 근데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왜? 올라가면 우리는 부모 돈 없으면 다른 학교 풀스칼라쉽(전액장학금) 받으면 괜찮아. 부모님 돈 없어? 그럼 죽어. (R-6 아동의 아버지)

R-6 가족의 경우, 자녀 셋이 초등학생 무렵 가족재결합으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이다. 아버지는 결코 한국국적으로 귀화할 생각이 없으며, 상황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콩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모국이든 다른 외국에도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강조한다. 첫째아이의 축구재능은 탁월했지만, 국제적으로 그리고 콩고에 돌아가서도 통용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축구를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공부에 주력할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했다.

아동들 중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단순히 경제적 이주자가 아니라 난민임을 알고 있다. 이들이 난민임을 알게 된 배경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모의 말, 미등록외국인과 ‘구별짓기’ 위해 부모가 체류자격이 있는 난민인정자임을 강조거나, 취업 등 경제적 활동을 못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부모의 말 등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도 구체적인 지위와 삶의 질의 개선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열악하고 가난한 피난민’이라는 난민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는 진실이기도 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해 부모 또한 말하기를 꺼려하면서 난민아동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지위, 난민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난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를걸요? 저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난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한국에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이야기 해줄거예요. (A-3 아동의 어머니)

아이가 난민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이는 자신이 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A-5 아동의 어머니)

아이는 아직 난민에 대해서 몰라요. 아이가 난민이나 난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A-9 아동의 어머니)

이것 나쁜 생각이잖아요. 이 난민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 하면, 이 문제 안돼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문제 안 돼. 왜냐면 우리생각에 어떻게 자라? 왜냐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잖아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어. 조금조금 말씀하고 있어요. (R-6 아동의 아버지)

자신이 모국을 떠나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다. 난민부모들은 한국에서 난민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별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 5.2 미래 기획

난민들이 구체적인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 지위의 여부에 따라 난민 부모들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비호를 신청할 것인가, 아이의 희망대로 한국에서 살면서 귀화를 신청할 것인가 등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난민 결정이 지속적으로 유보되고 있는 경우 현재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원을 모으고 아이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기 어렵다. C-1의 어머니는 난민 불인정과 소송에 따른 ‘유보된 삶’ 때문에 자신이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을 자책한다.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난민지위 신청을 시작했어요. 지금 제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절차가 끝나지 않았죠. 이렇게 6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에서 저는 ID도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아파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너무나 제약이 많은 삶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의 육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난민 소송중인 C-2도 난민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동이 한국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안다.

한국에서 아이에게 시민권을 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에서 어떤 인정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 신청을 하면 비자를 계속 유지해주는데, 한국은 몇 년 유지하고 비자를 만료시켜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체류권이 확보된 난민 지위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아동의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이들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겠지만 부모의 희망으로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모보다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 또한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들은 아이의 희망이나 적성에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는 난민 부모의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차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더 큰 기대를 품게 만든다는 점이다.

첫째 아이는 노래, 춤, 피아노연주를 좋아해서 음악과 관련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배우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저와 다르게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A-3아동의 어머니)

본국에는 시골에 의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이 너무 멀어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본국에 있을 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6 아동의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커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2아동의 어머니)

H-5 아버지도 딸이 음악에 흥미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음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나 경영 분야를 전공해야한다고 믿고 있었다. 난민 부모들은 아이들이 경제적 안정과 지위를 보장해주는 전문직을 갖기를 열망한다. 이는 난민이라는 상황 때문에 추락한 자신의 지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딸은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러나 나는 딸이 경제학이나 재정을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하기를 희망한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음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딸에게 확실한 직업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공부가 우선이고 음악은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들은 축구를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난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취미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학교 공부를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R-5 아동의 아버지)

자식이 지혜롭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난민 부모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여느 한국 부모들처럼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저는 공부할 기회만 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니? 엄마가 너희 같았으면 밤을 새서 공부했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도우면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A-2 아동의 어머니)

만약 기술을 배우는 기회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둘 다 배우면 좋겠지만 아이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적어도 아이가 나보다는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A-5 아동의 어머니)

현재는 아이가 어리지만 자라면 꼭 어린이 집, 유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해요. 아이가 나중에 한국어만 배우는 학교에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아니면 일하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어만 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영어만 배우면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둘 다 유창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F-4 아동의 아버지)

지금까지 다른 애들은 꿈이 자주 바뀌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니깐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깐 지금 까지 해왔던 것인데 속상하죠. (R-6 첫째아들)

R-6의 경우, 아버지는 정세가 안정될 경우 다시 고향 콩고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 자녀가 축구선수를 하게 된다면 콩고에서 아무 쓸 데가 없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에 주력할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한다. R-3의 아버지의 경우 한국에서 경험한 지위 하락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들의 직업관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다. R-3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 소수 민족 출신으로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농사일을 해 본 적 없이 공부를 하면서 컸다. 그러다가 이주 노동자 신분이 되면서 육체노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하는 삶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하다. R-5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이 시민권 부여 수준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여기 저기 무슨 신청을 하면 대학 갔다 왔는지, 공부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는 사회가 한국사회다. 공부를 잘해야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도 좋아하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 육체노동은 1-2년 일을 하면 금방 허리,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지속하기 힘들다. 아이(중 3)가 농구를 잘하지만 농구선수 시킬 생각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실력대로 인정받기 힘들고 그만큼 감독에게 로비나 지원을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재력을 갖지 못했다. 본인이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로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다. 아들이 사무직으로 성공해서 앞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R-3의 아버지처럼 많은 난민 부모들은 자식들이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첫째는 변호사로 키우고 싶어요. 둘째는 음악가로 기타, 가수로...하나님이 주신대로... 주신 달란트를 주신대로... 잘 주실 거예요. 어떤 재능이든, 살려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밀겠어요. (H-1 아동의 어머니)

다른 나라들은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말도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안되면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안 되면 동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돈 없어도 한국에서 마인드 있는 사람은 돈 없어도 잘 살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저의 큰 문제는 집에서 있어도 그래도 돈 벌 수가 있는데. 이게 (난민 신청)결과가 있어야 돼요. 난민인정을 받으면 뭐 안 되면, 다른 나라에 가도 되고,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가지고 무역하는 것 좀 되는데.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A-10 아동의 아버지)

자식이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으면 하는 난민 부모의 희망이 쉽게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처럼 교육이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 없이는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에 온 지 10년 이상이 된 사례 H-3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사례 H-3은 현재 21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2003년 한국에 온 이후 일찍 '철이 들었다'. 이 여성은 가족을 지원해 왔던 목사님의 사망이후 의지할 데가 없어지면서 지속적인 '빈곤화'를 경험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지속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줄곧 반장을 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친구가 많았다. 반장으로 추천되었을 때에, 선생님께 부모님이 외국인이고 선생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냐고 물었고,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괜찮고 내가 반장하는 데에 찬성한다고 하셨다.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고 생각도 깊었고 청소 같은 것도 잘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나를 추천하셨다. 그때 살고 있던 시설의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한 나를 많이 북돋아 주셨다. 숙제나 준비물을 포함하여 아이들을 챙기고 교실 문단속을 잘 하는 반장 역할을 잘 해냈고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일을 가시기 때문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 싫어서 방과 후에 아이들과 놀러다니거나 군것질을 하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때는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고등

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고, 그러면 집안일을 돕기 힘들다는 판단도 있었다. 지금은 간호학과를 목표로 대학 진학에 도전할 생각이다. 외국인 특별전형이 간호학과에도 적용되는 학교들을 찾았다. 간호사는 어릴 때부터의 꿈인데, 미얀마에 있는 큰 이모가 병원 수간호사여서 멋있다고 생각했고, 봉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학과 등록금을 꾸준히 낼 수 없는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이 꺼려지기도 한다. 이미 남들보다 2년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는데, 대학 다니다가 휴학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대학 졸업을 늦추고 싶지 않다. 부모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대학 진학을 권하셔서 최근 갈등이 좀 있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기도를 한다고 등록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H-3 여성)

H-3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난민아동이 자신의 장래를 기획하는데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의 호의와 선의에 의해 난민아동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5.3 희망하는 제도적 지원

아동 의료지원과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다. 미등록 아동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겪는 많은 제한과 소외감 해결해주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가 보험도 없고, 무료병원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F-4 아동의 아버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까스로 수업료를 분할 납부하면서 어린이 집을 다니지만 가끔 소품을 갈 때 추가비용이 필요하면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A-11 아동의 어머니)

아이가 학교에서 태권도 대회나 한자시험,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하려면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없어 참가 못하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 여권도 없지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으니 여행자보험에 들 수 없어 아이는 갈 수가 없어요. 버스카드 같은 것도 원래 학생 등록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기는 없는지. 친구들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깐 스쿨뱅킹 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A-1 아동의 어머니)

한국에서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난민과 인도적체류자격을 가진 케이스의 경우 의료, 직업, 교육, 용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요구한다.

집이 여기 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계속 살기위해서 또 아이들도 잘 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싶어요. 집 마련하게. 아이들이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으니깐 그거도 계속 보육도 공부 때문에 계속 받으면 좋겠어요. (R-2 아동의 어머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 집.. 모두가 같이 살 집입니다. (R-4 아동의 아버지)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해요. 보통의 직업처럼 제가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싶네요. 안정된 마음, 아들의 안정된 교육, 안정된 미래입니다. (H-2 아동의 어머니)

난민 부모가 희망하는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었고, 이는 아동의 사회권 획득을 위해 난민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보호 조치라고 판단된다.

## V. 아동의 발달 및 심리조사

### 1. 검사대상 및 내용

표 2) 심리조사대상아동표

번호	아동이름	나이	성별	교육	검사내용
1	R-3 아동	16	남	중3	그림검사, KPRC
2	H-5 아동	5	여	어린이집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3	A-1 아동1	12	남	초등학교	그림검사, KPRC
4	A-1 아동2	4	남	어린이집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5	A-9 아동	3	남	어린이집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6	A-11 아동1	6	남	어린이집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그림검사
7	A-11 아동2	5	남	어린이집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8	C-2 아동	7	남	초1	놀이평가, 그림검사
9	F-1 아동	5	여	×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10	F-4 아동1	8	남	초1	KPRC
11	F-4 아동2	4	남	어린이집	놀이평가, 덴버발달검사

### 2. 연구방법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심리적인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다.

- 만 4세 미만의 아동: 덴버발달검사, 놀이평가
- 만 4세 이상의 아동: 덴버발달검사, 놀이평가, 그림검사(HTP검사)
- 만 6세 이상의 아동: 그림검사(HTP), 한국아동용 인성평정척도(KPRC)

### (1) 덴버발달검사(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덴버발달검사는 아동의 개인/사회적 발달(personal-social), 소근육/적응(fine motor adaptive), 언어(language), 대근육 운동(gross motor) 발달 상태를 사정한다. 즉, 아동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회성과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손가락의 조작 기술 및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청취 능력과 요구한 것을 수행하고 말하는 능력, 신체의 통제, 운동 기능, 대근육 협응 그리고 균형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그림검사(HTP & KFD)

그림검사는 벅(1948, 1966)이 개발하고 벅과 해머(1969)가 발전시킨, 'House-Tree-Person Test(HTP)'와 번스와 카우프만(Burns & Kaufman, 1970)이 개발한 'Kinetic Family Drawing(KFD)'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가족상황과 가족관계, 자기와 개인 내적인 비교를 개념 짓는 현실, 생활 감정, 자기가치에 대한 지각 등의 상태를 사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이상의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 (3) 놀이평가

놀이평가는 Wood(1992)가 사회, 정서, 인지, 의사소통 및 행동발달에 대한 이론 및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한 발달교육목표평정지(DTORF)를 준거로 참조하여 실시하였다. 연령이 낮아 심리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여 평가함으로써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아동의 놀이 평가 세부항목은 appearance, activity, affect, cognition, language, developmental, clean-up 등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해 관찰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대개 부모-아동놀이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아동과 연구자와의 놀이상황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6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4) 한국아동용 인성평정척도 KPRC(Korea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한국아동용 인성평정척도는 아동의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등의 상태를 사정한다. 본 검사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 소아 정신병원에서 아동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을 통해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집한 임상자료와 DSM-IV, 미국의 아동인성검사(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 PIC), 아동 문제행동 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 사회성숙도 검사, 국제 질병 분류 10판 (ICD-10)에서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된 내용, 아동평가와 관련된 문헌 및 저자들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심리적 장애나 정신과적 문제를 선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 아동 인성 검사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 KPI-C)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한국 가이드스에서 개발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검사결과

#### (1)-(가) HTP검사 결과(R-3 아동)

아동은 집 그림에서 욕구나 포부 수준이 높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갈등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으며,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자신감이 없고 불안정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및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강박적인 경향이 나타나며, 내적 인지과정, 내적 공상과 관련된 불안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나무그림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적 사건, 자아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수동성, 세상과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억제하는 모습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애정욕구와 의존욕구가 매우 높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사람그림에서 감정 교류 소통의 채널을 좁혀버린 형상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스스로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제약이나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고, 사회적 상황이나 감정 교류 상황을 회피하고 위축되는 경향을 반영할 수도 있다. 특히, 타인의 애정을 지나치게 원하며 친밀한 관계에 너무 몰두하고자 하며, 때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자신 없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과잉 보상하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그림에서 교류나 통제, 대처와 관련한 부적절감과 무력감, 자율성의 발달이 매우 미숙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었다.

동적가족화에서는 표정에서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회피 경향성과 심한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독립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다소 의존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 (1)-(나) KPRC검사 결과(R-3 아동)

아동은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의 경우 평균점수에 가깝게 나타나 그 특성이 보통 수준인 반면 자아탄력성은 평균점수 이하로,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정신증은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나 그 특성이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성미가 까다로운 면이 있으며 긴장수준이 높고, 사소한 일로도 걱정이 많고 좌절감을 느낄 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사교성이 부족하고, 사람들로 부터 그다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타인의 평가, 특히 부정적인 평가를 매우 싫어하고, 사소한 지적에 대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비행점수가 높아 반항과 불복종, 공격성과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의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잉행동이 높아 과잉행동 및 충동성, 부주의한 면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점수가 높아 가족내에서의 긴장감, 불화, 가족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정신증 점수가 높아 부적절하고 특이한 언행, 망상, 비현실감 등 언어사고, 행동에서의 특이함이나 현실접촉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낮고,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 애정욕구가 높다. 또한 타인과의 감정 교류에 어려움, 가족 내에서의 갈등, 긴장감 등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반항, 불복종, 공격성, 적대감, 거짓말 등과 같은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청소년기 아동으로 부모의 난민생활이 불행하고 높은 수준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아동의 증가된 불확실성을 반항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 (2)-(가) Denver II 발달검사 및 놀이평가(H-5 아동)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즉, 아동은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뿐만 아니라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적목쌓기 등), 언어발달(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이 연령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전반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운동발달에서 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은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지시에 반응하거나 제재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일상적인 행동의 경우에도 매우 불안정하고, 불순응적이며, 매우 산만하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때때로 대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다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동은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매우 짧으며, 놀이의 내용이나 형태가 불분명하고 매우 공격적이다. 어머니와의 놀이에서는 어머니가 지시하면 눈치를 보고 따라하지만,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놀이를 진행한다. 주로 언어를 사용하

지 않고, 단순한 말만 계속 반복하는 등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만 4세 이상의 아동이지만 그림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검사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며, 집중하지 못한다.

### (2)-(나) KPRC검사 결과(H-5 아동)

아동은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정신증 등의 경우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나 그 특성이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비행, 가족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어발달 점수가 높은 경우 전반적인 지적수준이 낮고, 언어이해, 읽기, 쓰기, 기본적인 연산능력, 시간 개념 등 언어발달과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발달이 또래에 비해 뒤쳐져있음을 시사한다. 운동발달 점수가 높은 경우 운동기능의 협응 정도 및 속도, 신체 발달, 운동발달이 또래에 비해 뒤쳐져있음을 시사한다. 불안이 높은 경우 자연현상이나 대인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예민함, 걱정 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화 점수가 높은 것은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가 높아 신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신체의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은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발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는 불안이 높고, 주의가 산만하며, 충동적이다. 또한 가족간의 관계와 반항, 불복종, 공격성, 적대감, 거짓말 등과 같은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과 가족내의 갈등, 빈곤 등과 같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정환경은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이며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 가족과 더불어 그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유아의 생활환경은 가정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가정환경은 유아의 발달과 잠재가능성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Grusec & Goodnow, 1994) 많은 연구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현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전문적인 부모교육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가) HTP검사 결과(A-1 아동1)

아동은 집 그림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하였으며, 반면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며, 내적인 고립감과 위축감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현재 가정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한 불만감,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림을 그렸다. 나무그림에서는 현실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 자신 없음을 볼 수 있으며,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거나 주고 싶어 함을 표현하였으며, 그 동안 손상되고 고갈된 자아의 힘을 회복하고 보상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사람그림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외모가 창피하고, 걱정이 되어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으며, 사회적 상황이나 감정교류 상황을 회피하고 위축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이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매우 예민하고 두려워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지나치게 회피적일 수 있다. 또한 내면의 열등감에 대한 과잉보상욕구를 시사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동적가족화에서는 현재의 가족에 대한 불안감과 갈등적인 요소들이 엿보이며, 가족간의 거리감을 표현하였다.

### (3)-(나) KPRC검사 결과(A-1 아동1)

아동은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비행,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의 경우 평균 점수 이상으로, 자아탄력성은 평균점수 이하로 나타나 그 특성이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운동발달,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계 점수가 높은 경우 또래관계에서의 관심 정도가 낮고, 소외되어 있는 정도가 높으며,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수준이 높고, 수줍음이 많으며, 인간관계의 폭이 좁고, 빈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적응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다양한 활동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불안의 경우 평균 이상으로 높으며, 이러한 경우 다소 불안이 있을 수 있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서서히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은 타인으로부터 관심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아가 다소 약한 모습들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 접촉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있는 반면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오히려 노출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양가감정이 보여 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Denver II 발달검사 및 놀이평가(A-1 아동2)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음

을 의심할 수 있으며,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에서 다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나,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적목쌓기 등)에서는 소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되어 있다. 반면 언어발달에서 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나, 운동발달에서 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은 매우 안정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매우 순응적이고, 두려움도 거의 없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러나 다소 주의집중력이 부족하여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산만한 모습을 보였으며,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경우, 정상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지나친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언어발달이나 자조기술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강차연·장연집, 1999; 정채숙, 2002)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행동이 심할수록 혼합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의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된다. 따라서 아동이 보다 자율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양육행동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 (5) Denver II 발달검사 및 놀이평가(A-9 아동)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발달이 또래아동들에 비해 지연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으며,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업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발달이 다소 지연됨을 볼 수 있다. 특히 혼잣말을 하거나 의미없는 말을 반복하며,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행동에서 불안정감을 보였다. 또한 언어발달에서 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이 또래에 비해 다소 지연됨을 볼 수 있다. 아동은 한국어 어휘도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하며, 행동이나 그림, 색깔 등을 구별하는 것 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적목쌓기 등)에서는 소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보고 그리기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다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동발달은 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계단을 혼자 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상적인 행동은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이나, 지시사항 등에는 순응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하였으나, 집중력이 낮아 계속 다른 것에 한 눈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표출함으로써 내재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놀이상황에서 아동은 검사자와 눈맞춤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 하거나, 갑자기 놀이를 하다 말고, 창문으로 가서 놀이와 상관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였다. 검사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같이 따라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자동차놀이에서는 테이블에서 놀이감을 밖으로 떨어뜨리거나 칼로 집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자르는 행동 등을 보였다. 또한 놀이감을 두드리고, 던지고, 쓰러뜨리는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행동과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6)-(가) DenverⅡ 발달검사 및 놀이평가(A-11 아동1)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적목쌓기 등), 언어발달(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 운동발달(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에서 매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매우 순응적이고, 두려움도 거의 없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러나 다소 주의집중력이 부족하여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아동은 검사자에게 관심끌기 행동을 하였으며, 내용이 없는 놀이를 주로 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았다. 특히 동생이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였을 때 주먹으로 동생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놀이보다는 관심끌기 행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 (6)-(나) HTP검사 결과(A-11 아동1)

아동은 가족화에서 가족들 간의 구획이나 장벽도 없고, 서로 간의 거리도 가깝지만, 동생만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 동생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인 감정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다른 가족과 다른 형태의 자신을 그려 자신의 모습을 강한 이미지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검사자의 지시 이외의 세부적인 묘사는 검사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감, 불편감을 시사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저항감을 느끼며, 자기만의 세계로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사람 그림에서는 자신감이 없고, 다소 우울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렸다.

아동의 경우, 발달검사 결과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 못한 점에서 앞으로 한국생활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보이며, 어머니의 강압적이면서도 과보호적인 양육으로 다소 공격적이면서도 위축된 모습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어떤 하나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것은 다소 정서적인 불안함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생과의 관계에 어머니의 개입은 형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7) DenverⅡ발달검사 및 놀이평가(A-11 아동2)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적목쌓기 등), 언어발달(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 운동발달(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에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적인 행동에서 불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검사자의 지시에 불순응적이고, 두려움은 거의 없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또한 주의집중력이 부족하여 매우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아동은 검사하는 내내 매우 산만하고, 놀이에서 주로 놀이감을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였다.

그림검사는 그림의 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검사자의 지시를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등 검사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 가족그림만 그리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매우 형태가 산만하고, 포획을 그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적인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묘사하였다.

아동의 경우, 정상적인 발달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고, 매우 공격적이며, 에너지 수준이 높아 주변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여 좀 더 심층적인 검사를 통해 ADHD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8) 놀이평가 및 HTP검사 결과(C-2 아동)

아동은 놀이감 중에서 적목쌓기 등에 관심을 두었으며, 적목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행동을 뽐내기도 하는 등 특정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놀이에서 아동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놀이를 이끌어가며, 어머니가 중심으로 규칙을 정하는 등 매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검사의 경우 아동은 모든 그림에서 열등감, 압박감, 상당한 불안정감과 부적절감이 내면화되어 있거나 혹은 우울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집 그림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접근 가능성에 과도하게 집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적 고립감과 위축감을 보이기도 하였고, 강박적 경향이 나타났다. 나무그림을 통해 현실 속에서의 불안정감과 자신 없음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위축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세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보상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사람그림에서는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예민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대해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나 감정 교류 상황을 회피하고 위축되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림을 표현하였다. 동적 가족화에서 아동은 동생을 분리하거나 제외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였고, 특히 자신과 어머니의 그림에서 공격성과 경쟁심 등을 시사하는 그림을 그렸다. 가족 중에서 맨 왼쪽 구석에 그림으로써 침체성과 내향성 등을 볼 수 있었고, 가족 중 어머니와 동생 그림에서 불안과 긴장감 및 상호작용에서 위축되고 회피하고자 함을 시사하는 표현을 하였다.

아동은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또한 다른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감, 우울감 등은 가정에 대한 불안정감과 거리감을 통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엄마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책 읽기, 몸으로 놀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9) DenverⅡ발달검사 및 놀이평가(F-1 아동)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으며,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에서 다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나,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적목쌓기 등)에서는 소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되어 있다. 반면 언어발달에서 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언어발달에서 유창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운동발달에서 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은 매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행동의 경우 불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다소 불순응적이고, 두려움도 거의 없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다. 다소 주의집중력이 부족하여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산만한 모습을 보였으며,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에너지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그림을 그리는 경우 필압이 약하며, 특히 그림의 형태가 전혀 알아 볼 수 없고, 검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아동의 검사결과 등을 통해 다소 인지적인 기능문제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따라

서 좀 더 심층적인 지능검사나 언어발달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언어치로나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10) KPRC검사 결과(F-4 아동1)

아동은 자아탄력성은 평균점수 이하로,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사회관계, 정신증의 경우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나 그 특성이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이 높은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은 어른들과 달리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이 되어 가족과 잦은 마찰을 빚을 수 있고, 심할 경우 가출이나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은 부모의 갈등과 같은 가족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정 내에 있다면 이런 면에서 아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아동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동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11) Denver II 발달검사 및 놀이평가(F-4 아동2)

아동은 개인-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으며,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운동발달 각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는 능력(혼자 옷을 입고, 이를 닦는 등)인 개인-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요구하는 그림 및 도형 그리기, 적목쌓기 등), 언어발달(듣고, 말하는 능력, 개념 정의 및 이해 능력), 운동발달(앉고, 걷고, 점프하는 능력 등)에서 매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매우 순응적이고, 다소 두려움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다. 그러나 다소 주의집중력이 부족하여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아동은 호기심이 많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검사하는 동안 검사자의 지시를 매우 잘 따랐다. 밝은 태도로 지시 때마다 열심히 임하였고, 수행에 흥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대답을 잘 하였고, 큰 어려움 없이 끝까지 검사를 잘 수행하였다. 다만 또래와의 교류가 부족하여 친구이름을 대거나, 먼저 놀이를 시도하는 것 등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을 위해 다른 또래와의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고,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어머니의 평소 공격적인 말투 등을 따라 하는 것 등을 볼 수 있어 어머니가 좀 더 온정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4. 논의 및 소결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면, 덴버발달검사를 실시한 7명의 아동 중 4명의 아동이 언어발달의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었으며, 그 중 2명은 언어발달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검사결과에서는 정상발달로 나타났으나,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두 명의 아동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두 명의 아동을 합하면 총 7명 중 6명의 아동이 한국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KPRC검사를 실시한 4명의 아동 중 2명의 아동이 언어발달점수가 평균이하로 나타나 난민아동의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의 어려움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오성배 2005; 이수정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한 쪽 부모는 한국어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한국어능력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양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난민가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언어발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 중 개인-사회성 발달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버발달검사를 실시한 7명의 아동 중 4명의 아동이 개인-사회성 발달의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었으며, KPRC검사를 실시한 4명의 아동 중 3명의 아동이 사회관계, 가족관계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자가 아동의 부모를 함께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권위적이거나, 거부·제재적이며 특히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성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김병임 1992; 윤덕룡 1987; Hallanhan & Kauffman 1978)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어머니의 행동이 온정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이거나 통제적, 적대적, 거부적, 비밀관적 그리고 과잉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들은 사회적 능력이 저해되고 사회적 부적응 및 학교생활에서의 문제 행동 등을 보이게 된다(김병임 1992; 윤덕룡 1987; 이혜영 1986; Hallanhan & Kauffman 1978). 특히 처벌적이며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 및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Hetherington & Martin 1979; Patterson 1982)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은 자녀의 반사회적이며 비행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McCord 1979). 이는 KPRC검사를 실시한 4명의 아동 중 4명 모두 비행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둘째, 아동의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그림검사를 실시한 4명의 아동들 대부분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감, 불편감, 현실 속에서의 불안정감과 자신 없음을 시사하며,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저항감을 느끼며, 자기만의 세계로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음을 표현하였고, 자신감이 없고, 다소 우울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

다. 또한 자신의 외모가 창피하고, 걱정이 되어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매우 예민하고 두려워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지나치게 회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언어발달의 지체가 보이고, 외모가 다르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연구들(김순중 2007; 이영주 2007), 언어능력이 낮은 것은 아동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이 스스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신혜정 200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는 무리가 없으나, 일부 아동은 학습활동 중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 등이 현저히 낮고,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장애를 보이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07). 이러한 부적응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어 습득이나 기초생활습관, 사회성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학령기 이전에 학습결손이 발생하기 쉽고(유현승 1998; 인봉숙 2001), 또래나 주변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불일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일차적 적응의 실패 등으로 초등학교 생활에 흥미를 상실하기 쉽기 때문이다(김대원·양혜진 2006).

이에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난민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정현영 2006; 안은미 2007; 제갈종기 2007)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KPRC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검사를 실시한 아동 4명 중 3명이 자아탄력성이 낮고, 불안, 정신증척도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명 중 2명이 우울과 과잉행동, 신체화척도 등의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행점수는 KPRC 검사를 실시한 4명의 아동 중 모두가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그 중에는 2명은 90점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거나 반대로 과잉행동 등의 정서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서표현의 내재화에 혼돈,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김경자 2008, 재인용)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난민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 부분에서는 특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난민아동의 부모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자녀가 외부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꺼려 주로 아동을 가정 내에서 지내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처럼 좁은 실내공간에서만 지내다 보니 아동들이 다소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공격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최형성, 2005).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불안은 과잉통제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을 강화하게 되고 위축된 행동패턴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먼저 난민아동의 건강한 언어발달을 위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도록 하며, 언어발달을 저해하는 불안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아동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중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가정에서의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과 아울러 가족중심적 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난민가정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 형제자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아동의 발달과 심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실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상의 표집이 한정되어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 많이 다루지 않은 난민가정 아동을 직접 만나 발달과 심리적인 문제,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답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한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 VI. 난민아동 지원 해외 사례

### 1. 일본

#### 1.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난민아동의 경우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그대로 아동들의 체류상태와 연결된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조항이 “입관난민법에 근거한 강제퇴거의 결과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적용을 거부했다. 한편 동 조약은 가족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자녀 또는 부모가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적극적, 인도적 및 신속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조약 체결국에 의무지우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입국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법무성은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은 “법무대신의 재량범위에 있는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이라며 외국인인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하였다.<sup>6)</sup> 일단 난민으로 결정되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난민은 원칙적으로 일본국적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 아동부양수당, 복지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여행증명서 교부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 1.2 아동지원프로그램

#####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외국적 주민에게도 해당되는데, 단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단기체류거나 ‘불법체류’일 경우는 제외된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가 되는 날 이후 3월 31일까지의 아동(중학교 종료 전까지의 아동)을 부양하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다. 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일률적으로 월 15,000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종료 전까지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우는 월10,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5,000엔, 중학생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월 10,000엔을 지급한다.

##### (2) 국제교실

일본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5명 이상인 초·중학교에서는 국제교실에서 일

6)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산지니, 2007. p.98~99.

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해 보충교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다르다.

### (3) 교육

외국인의 경우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므로 난민아동의 경우도 의무교육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난민부모가 아동을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신고한 후 입학허가를 받게 된다. 일본어 교육의 경우는 일본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교류협회 혹은 민간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무료 일본어교실에서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야간중학교에의 입학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수시로 가능하나, 중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조건이 된다.

### (4)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Refugee Higher Education Program)<sup>7)</sup>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은 일본의 대학들의 협력 하에 UNHCR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으로 간주되어 4년간의 학부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UNHCR과 제휴한 대학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는 많은 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또한 고용기회를 제한시키는 실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입국과 본국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UNHCR에서는 매년 6명의 난민이 제휴 대학(현재, 간사이가쿠인 대학에 일본어 이수자 2명 및 영어 이수자 1명 합계 3명, 아오야마가쿠인대학에 1명, 메이지대학에 일본어 또는 영어 이수자 2명)에 추천된다. 6명의 난민은 UNHCR, 교육전문 NGO, 민간일본어학교에서 구성되는 선고위원회의 선고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에 채용된 난민은 4년간의 취학기간에 해당 대학의 졸업요건이 되는 전 과정과 시험을 수료해야만 한다. 졸업까지의 학생의 수업료와 총경비는 대학측에서 부담한다. 또한 각 대학의 판단에 의해 학생지원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16명의 난민이 고등교육을 받아 많은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휴 대학과 주위의 학생들은 난민학생이 대학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대학의 귀중한 인재이며, 난민학생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으며 대학의 학습환경이 풍부해진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특히 미얀마계 난민 2세들에게 인기가 있다.<sup>8)</sup>

#### 표 3)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의 선고기준

7)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은 UNHCR의 홈페이지 <http://www.unhcr.or.jp/html/2012/07/rhep-fq.html>에서 참조했다.

8) ‘在日ビルマ系難民の二世たち’, ‘在日ビルマ系難民二世Voice’, ‘日本で懸命に学ぶ難民大学生母国との“懸け橋”に’ 『Mネット』 No.150(June, 2012), p.12~13.

난민성	난민이거나 난민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된 경우. 즉 협약난민, 인도차이나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으로 일본에서의 체류자격이 있으며, 고등교육 비용의 지출이 불가능한 사람
입학자격	12년간의 초등, 중등교육 혹은 그것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학부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학력을 가질 것
일본어능력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본어능력시험 1급을 소지해야 하지만, 난민학생의 경우는 난민고등교육사업이 제작·실시하는 동등수준의 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음
영어능력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영어로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엔영어검정 1급 정도를 소지해야 하지만, 난민학생의 경우는 난민고등교육사업이 제작·실시하는 동등 수준의 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음
교육증명서 제출	1982년 문부성에서 대학으로 보낸 통지에는 '출신국에 소재하는 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 등을 받는 것이 곤란한 난민들은 증명서 대신에 난민인정신청서 관계부분 또는 정주허가신청 때의 이력서와 동일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제후 대학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난민의 입학자격을 고려하고 있다. UNHCR과 제후 대학은 이 통달에 따라 난민학생지망자의 학력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 (5) 입원조산제도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체류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임산부는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할 수 있다.

## 2. 영국

### 2.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입국시 공항만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는 내무성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UK Border Agency) 공무원에게 신속한 절차에 따른 적격성 심사와 난민인정심사를 받으며 그동안 일반적으로 구금된다.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런던 외곽의 Cryodon 이나 북서부의 리버풀에 있는 내무성의 이민 국적국에 신청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구금상태에서 도착 후 5일 이내에 면담과 결정을 받고 2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신속한 절차로 처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번역이 필요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 24주 이상의 임산부, 무연고 미성년자, 신뢰할만한 기관이 발행한 증빙이 있는 경우, 고문의 증거가 있는 경우, 24시간 간병이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중장애, 입원을 요하는 정신분열 등 중정신병, 구금하기 어려운 전염병자 등의 경우는 구금되거나 신속절차로 처리되지 않는다.<sup>9)</sup>

생활이 곤궁한 난민신청자에게는 내무성 이민국적국 산하의 NASS(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가 주택이나 생활비를 제공한다. 그러나 18세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취약집단에 속하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NASS에게서 거주 지원을 받지 않는 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는 1주일 단위로 부부 £69.57, 18세 이상의 한부모 £42.16, 한부모가 아닌 18세 이상 £35.13, 16세-18세 미혼 £38.18, 16세 미만 £50.81이다.<sup>10)</sup> 임신부나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추가로 생활비가 지원된다. (1세 미만의 영아 £5, 1세-3세 £3) 또한 출산후 £300의 출산 지원금이 제공된다. 그밖에 이민국과의 면담 등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영국의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6세와 18세 사이의 어린이는 교육과 기술 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세 이상의 난민신청자가 고등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자신이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지역단체, NGO 등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무연고 아동에게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케이스 담당 직원과 팀을 이룬다. 16세 17세의 미성년자는 호스텔이나 임대주택을 배정받으며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육시설이나 대리부모와 함께 생활한다<sup>11)</sup>.

## 2.2 아동지원 프로그램

### (1) 정부, 민간, 난민의 역할

영국의 난민 지원 시스템은 민간과 자원 봉사자의 역할이 크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와 차별화되는 독특성이 있다. 정부는 주로 난민 인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지원은 주로 민간에서 담당한다.

난민 공동체 역시 영국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다른 국가에서 난민 공동체는 단지 문화 활동만을 담당하나 영국에서는 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 통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arity Commission은 난민 공동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난민 공동체가 정관이 있어야 하는 등 어느 정도

9) IGC(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에서 2009.5. 17개국(영국,프랑스,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스페인,그리스,호주,뉴질랜드,미국,캐나다) 난민제도와 실태를 정리한 Asylum Procedures -Report on Policies and Practices in IGC Participating States (이하 IGC보고서라 함)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IGC는 이민·난민 정책에 관한 정부간 정보교환 포럼으로서, IGC 작성의 위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제공한 2009.4. 현재까지의 최신 법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도 각국 난민제도 및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IGC, 위 보고서, p.368-369.

10) <http://www.ukba.homeoffice.gov.uk/asylum/support/cashsupport/currentsupportamounts/>  
18세 이상 성인 독신 기준으로 월평균 30만원 미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1) 이호택 외,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2009.12. 법무부, p.40

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영국에는 400개 정도의 난민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은 난민신청자에게 정보와 언어 교육 등의 지원을 하면서 난민신청자로 하여금 난민지위를 얻도록 도움을 주고 소속감을 심어주며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난민공동체정보 [refugeecommunity.org.uk](http://refugeecommunity.org.uk))<sup>12)</sup>.

교육부(DfE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산하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는 교육부 아동 학교 및 가족국(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재정 지원을 받아 영국 내 공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sup>13)</sup>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한국과 달리 영국은 지방정부 내에 교육팀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을 정부가 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할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난민아동지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교육과정 속에 문화적 다양성, 특히 난민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민족적, 인종적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언어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착과 치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 난민출신 중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개발하여 난민아동을 지원하는 교사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sup>14)</sup>

## (2)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의 역할

영국에서 난민아동·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교육청(LEA : Local Education Authority)이다. LEA는 의무학령기 난민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제공, 무료 급식 제공, 다른 아동과 동일한 입학절차의 즉각 처리, 난민아동들의 교육적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는 정책과 절차개발 등의 책무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LEA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sup>15)</sup>

- 난민아동들의 교육적 지원에 관한 정책, 특별히 교육적 권리와 권고사항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 난민가족들에게 지역 내 학교와 입학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학기 중간 입학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 높은 수준의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별히 15, 16세의 아동들이 전일제 교육을 받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가언어로서 영어(EAL: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를 지원해야 한다.
-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난민아동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수해야 한다.
- 학교 입학 담당 직원은 난민아동들의 교육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영어

12) 피난처, 『유럽난민지원기관방문조사보고서』, 2007.9. p.12

13) 피난처, 『난민자녀 열국아이학교 사업보고 자료집』, 2008.3. p.101

14) 전수경, 『영국의 난민청소년 정책』, 2006. 무지개청소년센터, p.48.

15) 전수경, 앞의 책, p.29.

를 거의 못하는 가족들과 면담할 때에도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3) 학교배치와 오리엔테이션

난민아동이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수능시험(SAT)을 치러야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시험에서 제외되거나 또한 학교에서는 그들의 성적을 2년동안 전체 성적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학년 초가 아닌 학기 중간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며, 학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16)</sup>

- 부모/보호자에게 학교를 돌아보도록 하며, 교수방법에서의 차이점과 그들의 아동에게 영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해줘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즉 교복이나 학교 숙제 등에 관해서 이야기해줘야 한다.
- 무료급식, 학교 우유, 통학 및 교복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해준다.
-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통역가 또는 이중 언어 보조교사가 있다고 말해준다.
- 모든 학교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 들어오는 아동의 배경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훈련시킨다.
- 관련되는 교사에게는 새로운 난민아동이 담당 교실에 배치될 것을 미리 알려준다.
- 각 아동은 이전의 교육적 수준과 경험,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교육적 요구를 평가받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된 모든 교사와 지원인력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학생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배려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자료들을 받게 된다. 예컨대 동네 지도, 학교의 계획, 담임교사 이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친구의 이름, 그리고 시간표 등이다.
- 학생들의 진보는 일정한 기간을 간격으로 평가된다.

### (4) 언어지원

빠른 언어습득은 아동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편입되기 위한 첩경이다. 새로 도착한 난민아동은 교실교사와 함께 '추가언어로서 영어(EAL)' 전문교사로부터 학습지원을 받게 된다. 만약 학생이 자국 내에서도 학교교육을 전혀 안받았던 경우, 영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GCSE과정에서 특정 과제를 가지고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경우나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수업을 받게

16) 전수경, 앞의 책, p.31.

된다. 효과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7)</sup>

- 아동들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고 매번 수업시간에 인사를 하도록 한다.
-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와 보조 직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암기하고 써 보도록 한다.
-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따뜻한 태도를 보이는 친구 옆에 앉도록 하는데, 만약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통역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더욱 좋다.
- 아동으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영어로 대답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아주 조금씩 말하는 양을 늘리도록 한다. 처음에는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네, 아니오. 선생님, 감사합니다.”등의 간단한 표현을 반복하도록 한다.
- 난민학생들의 언어학습을 위해서 교실 내에 있는 물건들에 이름표를 부착한다.
- 영어단어와 같은 의미의 모국어어를 찾도록 한다.
- 비디오, 슬라이드, 그림, 다이어그램, 플래시 카드, 그리고 삽화 등을 이용한다.  
"읽기와 쓰기 수업(Literacy Hour)"의 경우 학급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난민아동들의 언어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업을 계획할 때 EAL담당교사와 함께 한다
- 선명하게 인쇄된 텍스트와 삽화를 선택한다.
- 모든 학생들의 배경과 경험을 고루 반영한 텍스트를 선택한다.
- 다양한 언어의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 이중 언어 교수나 보조교사가 이야기를 읽거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시각적 보조 자료나 실제 물건을 가지고 단어를 설명한다.
-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이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을 경청하도록 장려한다.

“산수(Numeracy)”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새로운 단어 습득을 위해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여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동들을 위해 고안된 문제를 개발하고 질문한다.
- 정답을 문장으로 만들어 반복적으로 대답하도록 한다.
- 방과 후 수업이 있는 경우, 난민아동들을 참석하도록 한다.

난민아동들의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학교가 함께 부담하면서 교사를 공유할 수 있고, 구할 수 없는 경우 학생으로 하여금 유사한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다중언어 학습을 하도록 한다. 학교는 반드시 그들의 모국어 또는 이중언어로 된 책을 학교 도서관과 학교 내에 비치해야 하며, 다중언어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조장해야 한다.

## (5) 심리지원

---

17) 전수경, 앞의 책, pp.32-33.

무연고 아동의 경우 일상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할 돌봄과 학습지도를 받지 못하여 학업성취가 낮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을 돌보는 기관들이 아동 개인별 교육계획 세우기, 학교 뿐만 아니라 LEA에서도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지목하기, 긴박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를 20일 이상 빠지지 말기와 같은 원칙을 세우도록 하였다. 난민아동들이 본국에서 경험한 상처경험(박해, 전쟁, 죽음, 결핍,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사람 등)은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탈행동을 하게 한다. 난민아동들이 상처를 극복하도록 돕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18)</sup>

- 부모/보호자 가족들로 하여금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질 높은 보호를 하도록 한다.
- 동일한 민족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그들이 자신의 국가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신념체계와 통합시킬 수 있는 아동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상처경험을 극복하기가 더욱 쉽다.
- 모국의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 모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떠올리도록 한다.
- 학교생활을 즐겁게 한다. 즉 친구들을 사귀고 학업성취를 하도록 한다.
-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예방해 준다.
-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관해서 말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통제력을 갖게 한다.
- 잘못되어 가는 일들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취미를 갖는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처치 프로그램으로는 목양지원프로그램(Pastoral Support Programme), 상담, 멘토링, 미술치료가 있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료전략은 다음과 같다.<sup>19)</sup>

- 교사는 언제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언제 도움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 보모들과 함께 협동한다. 아동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모가 아동보호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하며, 만약 부모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적인 도움을 받도록 알려준다.
-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확인한다. 예컨대 방과후 모임, 공동체 모임, 또는 플레이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교사연수(In-service training) : 난민아동지도를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프로그램

18) 전수경, 앞의 책, pp.36-37.

19) 전수경, 앞의 책, pp.37-38.

을 제공한다.

- 아동과의 대화와 멘토링 : 교사는 아동이 정서적 문제를 표현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경청한다. 교사 또는 멘토는 일정시간을 비워놓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쉽게 들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상담 : 보다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그룹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상담 자격증을 갖거나 또는 상담전문가를 활용한다.
- 놀이 : 나이가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는 놀이치료를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정서적 문제, 즉 두려움과 신뢰감 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 자서전쓰기와 창작 :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일기를 쓰거나 자신에 관한 앨범을 만들도록 한다.
- 미술과 드라마 : 놀이나 전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아동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태가 심각한 아동들과는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된 미술치료사가 일해야 한다.

## (6) 교육부 교육 프로그램 사례

### (가) ERF Refugee induction program in Lambeth LEA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유럽 난민 기금(European Refugee Fund: ERF)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부 산하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QCDA)가 개발하여 2001년 4월에 Lambeth LEA에서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 학생들 중 교육 체계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들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6주간 프로그램 해당자들은 영국의 교육 체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수업 과정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경험해보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조 교사가 함께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의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난민에게 알맞은 영어 수업을 제공해주며 전략적인 수업으로 이끌어 나간다. 또한 학교 생활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모국어와 영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학기 중 일부 동안은 학생이 수업 과정 중 어려움을 느낄 때 시간적 제한을 갖는 보조교사를 두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7-8살, 9-11살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 수업하며 지역 교육 기관에 신청을 하고 위 기관의 허가 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 아동들이 영국 학교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우며 협력 기관들과의 관계를 도모하여 효과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 (나) Creative Journeys-therapeutic art workshops

이 프로그램은 2002년에 최초로 고안되어 2003년 1월 아동기금의 재정적 지원 아래 실행된 프로그램으로서 아동, 청소년 정신 치료팀의 감독과 지원 하에 노팅햄시 교육부, 도시 내 학교들이 동참하여 3살에서 11살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 낮은 환경에 직면한 아동들의 감정적 욕구를 지원하는 환경을 창출하고, 2) 난민아동과 난민 신청 아동의 자부심을 기르며, 3) 축적된 사고와 기술을 지닌 교사들이 치료 목적의 예술 워크숍을 원활하게 이끌도록 하고, 4) 아동의 부모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5) 아동들의 새로운 언어인 영어 습득을 향상시키고, 6) 창의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학교 내 난민아동과 난민 신청 아동이었으며, 난민아동들 중 자신감이 부족한 아동, 또래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배움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 불안감을 경험한 아동,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물리적 폭력 또는 언어 폭력을 가하는 아동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팅햄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primary)들에서 시행되었고, 위 초등학교들 모두 난민아동과 난민 신청 아동들의 입학에 허가하였다.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초등학교들의 경우 프로젝트의 주요한 활동 행위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지역의 예산에 따라 프로젝트가 형성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공통된 목적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는 서명을 하였다.

프로젝트 팀은 리더 역할을 하는 예술가/간사와 3명의 예술가들과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 스태프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동시에 제 2외국어로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들을 표현함에 따라 의견을 공유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서 부모들이 신뢰와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자녀의 교육 과정을 지켜보고, 아동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성장하고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부모와 학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면서 그들 스스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의 경험과 배경들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긍정적 결과는 1) 아동들이 다른 또래 친구들, 어른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2) 아동들의 모국어와 문화가 매우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3) 각 학교들이 난민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의 난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왔고, 4) 아동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과 기술을 지원한 것이었다.

참여 학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부모들의 회답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들 스스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성

취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학교 측 또한 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것은 난민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타국의 높은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고립된 감정을 완화시키고 지역 사회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장이 되었다.’(Scotchholme Primary School)

‘난민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스태프들은 부모들에게 아동들이 속해 있는 프로젝트 내 클럽 활동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부모들 또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난민 신청 가족 16 그룹 중에 정기적으로 14개 그룹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매 활동마다 평균적으로 25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난민 신청 아동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다.’

‘한 소녀가 프로젝트 시간에 언니를 데리고 와서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하자 전보다 더욱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이것은 소녀의 언니가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큰 효과를 가져옴을 반영하며, 이것은 다른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비극적인 가족 환경을 겪은 8살짜리 남자 아이가 프로젝트 내 소그룹 활동에 매우 활발히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었고, 그룹안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난민 신청 아동의 엄마가 프로젝트 활동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녀는 매 활동마다 참석하면서 지루한 생활에 환기와 활력을 얻었다. 활동 참여 결과, 그녀는 학교 내 스태프들과 편안하고 열린 관계를 맺게 되었다.’ (Forest Fields Primary School)

‘학교 측이 난민과 난민 신청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지역 사회 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아동에게 유익했으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영어의 유연한 사용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이 밝고 안전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학교 내 스태프들 또한 예술가들과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Arkwright Primary School)

## (7) National Refugee Integration Forum 의 난민아동 사회통합 프로그램

### (가) 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의 아동들은 인권 남용이나 분쟁으로부터 피난한 사람들로서, 심리적 타격을 받은 상태이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몇 명의 아동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은 건강, 언어, 가난, 인종차별 때문에 더욱 더 심리적 압박감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구체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Play

놀이는 아이들의 경험과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아동들의 사회성, 언어 인지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잘 짜진 놀이는 기초 과정의 커리큘럼에서 필수적인 과목이다. 만약 난민아동이 전쟁과 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놀이로 표현한다면 조만간 다른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분출이 필요하며 선생님은 아동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 Therapeutic uses of play: 놀이치료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난민아동과 같이 심리적 타격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들에게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주면서 그에 관해 들어주고 반응해준다. 그 후 또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엇보다 난민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자부심의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른과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도록 해준다.

- Key workers: 놀이를 통한 치료를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 부모가 없거나 버려진 난민아동에게 1명의 성인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 Projective play: 아동이 성장하면서 장난감이나 사물을 통해 현실 속의 자신을 투영시켜 놀게 된다. 즉, 난민아동의 경우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놀이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이 때 작고 많은 사물들, 인간 모형의 장난감들을 동원하는 것이 유용하며, 작은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감정을 이입시키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출하게끔 해준다.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의 개입 정도이다. 어른은 놀이에 있어 기본적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폭력을 휘두르거나 장난감을 파손시키는 행위는 미연에 방지한다. 어른이 개입하는 것은 역할 상대로서 응답을 하거나 행위에 대한 지침을 말로 표현해준다.

- Working with parents: 난민 자녀의 부모들은 아이들 성장에 있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자극과 입력은 필수적이다. 부모들은 미취학 자녀와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아이들의 배움을 촉진시키고,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시켜야만 한다.

- Persona Doll Training: 이와 같은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는 비단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난민 자녀 스스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난민아동이 인형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함으로써 편견에 맞설 수 있다. 또한 비판적으로 불공정한 처우나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일반 아동들은 자신과 다른 난민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할 수 있다.

### (다) Expressing feelings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난민아동들에게 자서전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감정과 복잡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말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My Life Story Work: 아동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사진을 모으고 그림을 그릴 때 어른이 아동의 그림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 주며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 My World: 아동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활동으로 각자 큰 종이 중앙에 본인의 얼굴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 그려진 모습을 중심으로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사물을 그린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적절한 토론과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사한 활동으로 자국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동의 경우에 'my world back home' 이란 주제로 표현해 본다.

#### (라) Art

예술은 창조적 글쓰기와 놀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아동의 경우,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양면적 효과를 지향하게 되는 데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창출해냄으로써 자부심을 높이고 감정과 사건에 자신을 투영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 Self-portraits: 그림, 가면 만들기를 이용하여 본인 얼굴의 특징을 설명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얼굴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 The desert island: 4명이나 5명 정도 그룹을 지어 큰 종이를 사막이라 생각하고 아동들 스스로가 사막 안에 공동의 공간을 그리고, 각 개인의 소중한 물품들도 그린다. 마친 후 이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 Storytelling: 현대 아동 문학뿐만 아니라 많은 전래 동화에서 난민들이 겪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현재 함께 하고 있는 또래 난민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책 속의 다른 주인공들이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다.

### (8) Scottish Refugee Council의 난민아동 조사

Scotland에서는 난민의 자녀가 3-4살인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의무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 인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그에 적합한 시간제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은 남녀 합반으로 이루어지며 탁아소는 선생님에 의해 운영되며 10명의 아동 당 1명의 보조 교사가 함께 한다. 탁아소의 프로그램은 앞으로 아동의 취학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감정, 인성, 사회성의 발전, 의사소통과 언어, 세계에 대한 이해, 표현과 감성의 발전, 심리 치료 및 교육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 Scottish Refugee Council의 지원으로 Glasgow Center for Child and Society에 의해 2005년 행하여진 Scotland 지역 난민아동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0)</sup>.

20)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sqi=2&ved=0CEoQFjAC&url=http%3A%2F%2Fwww.scottishrefugeecouncil.org.uk%2Fassets%2F0345%2FThis\\_is\\_a\\_good\\_place\\_to\\_live\\_and\\_think\\_about\\_the\\_future.pdf&ei=7qTOUOnpAsq5igK20YDYBA&usg=AFQ](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sqi=2&ved=0CEoQFjAC&url=http%3A%2F%2Fwww.scottishrefugeecouncil.org.uk%2Fassets%2F0345%2FThis_is_a_good_place_to_live_and_think_about_the_future.pdf&ei=7qTOUOnpAsq5igK20YDYBA&usg=AFQ)

#### (가) 아동의 경험

- 무연고 난민아동들은 자주 본국에서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아동들이 대리인에 의해 스코틀랜드로 보내진다.
- 난민신청을 하는 주요 이유로는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하여 정치적 환경, 가족 구성원의 박해 또는 죽음, 아동 자신의 박해 등이 있다.
- 이들 중 다수의 아동이 스코틀랜드로의 여정에 대해 잘 몰랐고, 절반 가까이가 스코틀랜드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지 알지 못했다.
- 아동들을 면접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인신매매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보호자가 없는 난민 신청 아동그룹의 규모가 가장 크다.
- 대부분의 아동들은 스코틀랜드에 도착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들의 새로운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이들은 부적합한 거주환경, 고립, 영어에 대한 이질감, 인종차별, 냉대 기후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 무연고로 난민신청을 위해 스코틀랜드에 오는 아동들의 경험은 특정 도착 장소와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많은 아동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에 정서적, 심리적 영향력을 받는 것만큼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견뎌야만 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인정하였다.

#### (나) 아동의 욕구

- 무연고 난민아동들은 적절한 거주공간, 교육, 법적 조언, 의료를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연고 난민아동들에게 있어 가장 최대의 욕구는 그들이 아동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난민 제도에 대한 부족한 수준의 이해와 지식, 난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많은 아동들에게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주었다.
- 스코틀랜드의 무연고 난민아동을 위한 거주 제공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몇몇 아동들은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공간에 수용되었고 이러한 공간들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동들은 민박집에서 상당히 긴 시간 머문다.
- 무연고 난민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가변적이고 비체계적이다.
- 스코틀랜드의 다른 아동들처럼 같은 질병들에 대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무연고 난민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욕구라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 아동들에게 비행기를 타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갖은 정신적 외상과 걱정,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큰 어려움이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동들의 소속감, 정체성, 사회적, 정서적 행복에 대해 걱정했다. 이들 중 소수는 아동들이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에 대해 대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다) 서비스 제공

- 대부분의 서비스가 긍정과 부정이 섞인 평가를 받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법률, 교육, 사회 서비스, 통역과 의료)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 스코틀랜드 내부에서도 서비스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Glasgow 외부 지역은 무연고 난민아동에 대한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소수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활동가들도 낮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은 경험이 꼭 전문지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에 스코틀랜드 내에 있는 무연고 난민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동들의 회복력과 성공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무연고 난민아동에 대한 업무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은 무연고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인종차별을 행하기도 한다.
- 교육서비스는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장벽에서 아동들은 좌절을 겪는다. 특히 무연고 난민아동들이 학업장려금(EMA)을 수혜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수많은 법적 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연고 난민아동의 연령 평가에 관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언에 대해 모르고 있다.
-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16 혹은 17세의 무연고 난민아동들이 그들보다 더 어린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 무연고 난민아동이 1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그 이전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연고 난민아동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권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분리된 법률 제정과 정책이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9) Salusbury WORLD의 교육 프로그램

Salusbury WORLD는 난민과 난민신청자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자선 자치 단체이

며, 국가 또는 지역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 공모 사업과 후원금에 의해 운영된다. 이 단체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Salusbury 초등학교 내에 난민 센터를 만들었고, 센터 내 상주 직원 및 자발적인 활동가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Salusbury WORLD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인종에 대한 편견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킨다. 2001년에 Refugee Council과 Save the children과 함께 “In Safe Hands”라는 주요 사업을 행했고, 2004년에 Save the Children에 의해 학교 내 난민아동과 가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담은 “Home From Home”을 만들고 2005년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부가하여 재 출간했다.

#### (가) 방과 후 활동 클럽

방과 후 클럽은 아동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서 자신감, 빠른 영어 습득, 사회성, 학업 성취 능력이 향상 되었다. 방과 후 클럽은 난민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에게는 무료이며 학기 중에는 1주일에 3번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진행된다. 또한 중일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Salusbury WORLD는 아동들이 레포트, 놀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권리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방과 후 클럽 활동이 그 한 사례이다. 또한 수영장, 탁구, 비디오, 농구장, 축구장, 놀이 공간이 복합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야외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아동들에게 창의성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며 난민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좀 더 쉽게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체적 활동인 게임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활발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들은 예술과 공예 활동, 스포츠와 게임, 음악과 드라마, 여행과 야외 활동, 외부인사에 의해 진행되는 워크숍, 사진, 컴퓨터 게임 등이다.

#### (나) 부모님의 참여

OFSTED의 보고서 “난민 신청 아동에 대한 교육(The education of asylum-seeker pupils, 2003)”에 따르면<sup>21)</sup> 부모의 참여와 관심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학업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동이 사회 내에 통합하고 그들 스스로 적절한 성취를 얻어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들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일반 아동들의 부모에 비해 참여 정도가 낮다. 이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 대한 어려움, 어떤 방식으로 아동들을 교육시켜야 할지 확신하지 못함,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낮은 문화적 배경, 난민 신청

21) <http://open.tean.ac.uk/handle/123456789/769>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중압감과 스트레스, 가난에 대한 경험, 가정 내 아동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교구의 부재, 낮은 질의 주거 환경, 임시 센터에서의 거주 장소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불안정감 등에 기인한다.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민아동의 부모들을 위해 위 단체와 협력하는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난민아동들의 부모들이 그들 스스로가 매우 소중한 존재이면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부모들이 간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의견을 나누고, 간사들은 이에 대하여 인격적이고, 신중하게 들어준다. 부모들이 쓰는 모국어,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에 대해 존중함을 알려준다. 2개 국어로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자체가 학업 성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려준다. 학교와 단체, 지역사회가 공동 협력하여 난민 스스로의 정체성의 고귀함을 느끼도록 해준다(예: 다양한 문화, 종교에 관한 축제 개최).

#### (다) 가정교육과의 연계 (Home School Liaison)

이란에서 온 10살의 소년은 런던에 도착한 이래로 2년 동안 4군데 다른 거주 공간에서 머물렀다. 머무르는 동안 한 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만 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고문의 피해자로서 의료 재단과 지역 병원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 간호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이 런던에서 4군데의 다른 학교를 거치면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했다. 아동은 학교를 옮길 때마다 새롭게 친구를 사귀고 자신을 알려야 했고, 재정착하는 거주공간에서의 적응도 필요했다.

가정 내 교육을 연계하는 직원과 교사의 도움으로 학교 근처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지원되었다. 또한 훗날 필요한 의료적 지원까지 의료 재단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주었다.

#### (10) Refugee action Kingston

남런던에 위치한 킹스톤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난민지원기관 Refugee action의 지부로서 1992. 설립되었고 6명의 사역자(전임 5명)가 대략 13개국 출신의 약 2,000명의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게 조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보제공(난민과 난민신청자의 경우 언어 장벽, 자신감의 부족 때문에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크다) 뿐 아니라 하우징, 의류나 도서 가구 등의 나눔, 교육, 의료, 언어 코스, IT 교육 코스 등을 개설해서 돕고 있으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영어 코스와 상담, summer playscheme 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체험 방문 활동이다.

상담의 경우 처음에는 3번 하고 필요가 있으면 다시 10번 그리고 또 다시 10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난민신청자들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성적 학대, 가

정 폭력, 학교에서의 왕따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유급 전문 카운셀러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 탈북자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런던의 한 공원축구장을 빌려 매주 난민청소년 축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는 스트레스와 차별로 말미암아 자칫 위축되고 소외되거나 파괴적 퇴폐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난민청소년들의 에너지를 창조적 공동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난민청소년들에게 인기도 높다. 많은 청소년들이 축구장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3. 프랑스

#### 3.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프랑스의 난민신청은 국외, 국경,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외에서의 난민신청은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여 입국비자를 받고 난민·무국적자보호국(OFPRA : The Office Franc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에서 난민지위 결정을 받는다. 국경에서 난민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먼저 입국허가를 신청하여 입국후 난민신청한다. 국내에서의 난민신청은 지방경찰청을 통하여 하고 신청서류가 OFPRA로 보내진다.

난민 지위 부여 결정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CADA(Centres d'accueil pour emandeurs d'asile)라는 리셉션 센터에서 거주하게 된다. 현재 CADA는 63개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무연고 미성년자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2개의 CADA가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CADA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아야만 한다. 센터의 의료진들은 예방적 조치를 취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 보호에 힘쓴다. 간혹 CADA는 심리적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한다.

6살에서 16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인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프랑스의 아동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특히,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 아동,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동들을 위한 '특별예비교실' 내지 '적응반'이 프랑스 교육부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 3.2 아동지원 프로그램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 정책이 프랑스 이주정책의 원칙이다. 2005년 소요사태 이후 이주민정책은 폐쇄적으로 전환되어 2007년 4월 대선 이후 이주민의 유입조절과 통합 및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이주아동 청소년 및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 청소년들로 하여금 프랑스 사회로의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1) 지역청소년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프랑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청소년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주민들이 계토를 이루고 사는 지역에서 청소년센터는 이들의 학습과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통합을 지향하는 이주민정책상 이들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정책에 인색한 대신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센터들은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도 주선해 준다. 이 기관들은 프랑스 지역 곳곳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주민들이 많은 외곽지역일수록 활동이 활발하다. 가정 내에서 학습과 진로에 대한 커버가 쉽지 않은 이주자 가정 자녀들의 경우 이 센터들의 역할이 매우 비중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어권 외에서 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 지원센터는 무료로 그 지역의 전, 현직 교사들이 자원하여 이들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과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지역이 많다. 또한 그 지역의 젊은 인력풀이 가동하여 학교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sup>22)</sup>.

### (2) 이주청소년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Carnet d'adresses des Centres acade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프랑스에는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에도 약 30개 정도의 학령기 이주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센터는 이주 청소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파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들 센터 역시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을 지향하는 모든 청소년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지원센터에 가깝다. 처음 프랑스에 도착한 아이들의 학교적응도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한 이주민 정책이라기 보다 프랑스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파리센터가 내걸고 있는 주요활동은 첫째, 이주 가정을 위한 학교입학정보, 둘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셋째, 교사교육이다. 언어와 문화 등 학습이 어려운 이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주청소년을 위한 인류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지구촌 사람들의 이동과 섞임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교사들이 이주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다문화 감성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22) 이민경, 프랑스의 이주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무지개청소년센터, 2007, p.37.

다문화청소들을 많이 접촉해본 선생님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 정보와 지식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식민지, 다문화 정체성 등과 같은 전문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전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3)</sup>.

## 4. 독일

### 4.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독일 국내에서 비호를 신청하는 난민은 연방 이민난민사무소(BAMF)에 난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난민 신청 적격성이 판별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허가가 부여된다.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일단 가까운 초기지원시설(Reception Center)로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약3개월 동안 체류한 후 인정 절차가 3달 이상 걸리는 경우 다른 공동 주거 시설(Asylum Center)로 옮겨지게 된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난민인정의 심사 기간인 3개월 동안 지원시설에 거주한다고 전제된다. 난민인정 관련 각종 절차, 건강진단 등을 우선시하게 되므로 독일어 교육은 실시되지 않는다. 단,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나 NGO가 독일어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어린이의 경우 난민 신청 기간 중에 독일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언어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Asylum Center 내에서 3살에서 6살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 프로그램이 행해진다. 아동들은 지역 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며, 비용은 아동복지국이 지불한다. 난민신청자 중 임산부에게는 특별건강관리와 산파가 제공된다. 성장기의 아이들에 대한 의류가 특별히 제공되며,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도 지원된다.

16세 미만의 무연고 미성년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Youth Welfare Services가 감독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16세 미만의 무연고 미성년자들은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대리인에 의해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16~18세의 미성년자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 4.2 아동지원 프로그램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및 국적법은 전통적인 속인주의 방식을 변경하여 이주민 가정 출생자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자녀에 대하여 시민권을 부여하고, 국적신청 자격요건도 종래 15년 합법적 거주요건을 8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독일내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

23) 이민경, 앞의 책, pp.37-38.

부하는 사람이면 독일인과 동등하게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교육 및 적응을 위한 원조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각 시별로 다문화가족(노동이주민, 외국인, 난민 총칭)에 대한 행정부서를 따로 마련하여 세계화에 준비하고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이 부서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정보안내와 상담, 국제화 훈련, 사회적응력, 학교·직업교육,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생활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sup>24)</sup>

## (1) 난민아동·청소년 적응 프로그램

### (가) 모국어로 진행되는 적응 프로그램

대규모로 이주한 터키계, 아랍계, 러시아계 등을 위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에 4시간씩 6개월간 밟도록 하여 독일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다.

### (나) 언어프로그램

학교공부와 더불어 계속 독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나이별 수준별로 다양한 시간대에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 취학아동 : 5-6세 이주아동의 독일어 공부시간(1주일에 1시간)과 입학직전 아동들이 독일어 능력에 관계없이 함께 놀이를 통해 배우는 시간(1주일에 4시간)
- 초등학생 : 실력에 따라(초급, 1,2,3) 편성된 독일어시간(1주일에 2시간)
- 중고등학생 : 독일어공부시간(1주일에 2번 2시간씩 총4시간), 학교숙제를 도와주는 시간(1주일에 2번 2시간씩 총4시간), 과목별 특별과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간(1주일에 2시간)
- 무연고 난민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일어시간(1주일에 2번 2시간씩 총4시간)
- 나이가 많아서 학교공부보다는 바로 직업을 구해야 하는 청소년 및 학교공부를 마치고 직업을 구하려는 청소년을 위한 직장준비세미나(1주일에 2시간)
- 러시아 청소년을 위한 독일어과정(1주일에 2번 2시간씩 총4시간)

### (다)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이주 청소년 및 가족들이 독일여행을 통해 독일과 독일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2시간씩 독일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단기간에 독일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프로그램이다.

## (2) 이주민과의 공존교육 프로그램

### (가) 교육프로그램

24) 윤선영, 독일의 이주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2006, p.32.

길거리나 버스 전철 등 광고판에 “당신도 다른 곳에 가면 외국인이다”, “우리는 모두 똑 같다”, “우리의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등의 광고문구를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 프로젝트 주간에 특정 나라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나라 출신의 이주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교 이외에도 여러 문화 출신의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JMD와 노동자복지협회 이주청소년담당부서 및 각 종교단체 이주청소년 담당에서 마련하고 있다. 노래, 음악, 춤 공연, 연극, 영상, 연합예배 등이 도구가 되고 있다.

#### (나) 단체활동

-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장’(Zukunftswerkstatt) : 방학 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8-14세 아동(3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문화주간 캠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50명)과 함께 살고 있는 도시와 인근 도시의 역사 및 문화를 기행하면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대화하고, 공동작품을 조립하는 등 친선의 기회를 마련한다.
- ‘아프리카를 만난다’(Begegnung mit Afrika) : 아프리카를 알리고 그곳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는다. 아프리카 학과와 함께 여러 행사들을 주관하고 유럽에 나온 아프리카인들과의 공동작업을 진행한다.
- ‘국제까페’ :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페루의 춤, 노래, 음식 등을 소개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 공동으로 소품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페루의 한 초등학교를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 ‘국제여성센터’(Internationales Frauenzentrum) : 이주여성들의 만남주선, 여성의 교육과 직업지원, 다른 나라 문화교육, 국제여성박람회주최, 다른 종교에 대한 여성들의 대화, 언어교육, 정기 대화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제도시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이주민 뿐 아니라 주류 시민들이 도시의 국제성과 세계성을 인정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한달에 한번씩 아침겸 점심을 나누면서 어머니들이 모임을 갖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으며, 살사 춤이나 아프리카 춤을 배우고, 모국어 대화모임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 (3) 부모교육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시간에 동시에 어머니들도 학교에 마련된 독일어 수업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전 독일에 ‘엄마가 독일어를 배운다’ 과정이 마련되어 100시간 동안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언어과정은 오전에 진행되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어 참여율이 높다. 어머니의 독일어 실력 향상으로 자녀들의 숙제도 함께 할 수 있어 가족의 독일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sup>25)</sup>

25) 윤선영, 앞의 책, p.47.

#### (4) 무연고 미성년난민 기숙사

독일에는 약 1만명 가량의 보호자 없는 난민아동이 살고 있는데, 1994 문을 연 뉘른베르그의 한 숙소에는 12명이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110명의 아이들이 거쳐갔다. 아이들은 18살 까지 여기 살다가 떠나는데 모두들 부모 없이 혼자 온 난민아동들로서, 55%가 남자이며, 중국, 베트남, 이티오피아 등에서 온다. 5명의 간사가 있고, 1명의 교육전문가가 있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도와주고, 식사도 챙겨주는데, 난민의 특성상 두려움과 절망이 많기 때문에 축구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 5. 네덜란드

#### 5.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난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시에는 Schiphol 공항 신청센터에서 입국후에는 이민귀화국 신청센터(IND: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Nationality Service Application Center)에서 신청한다. 네덜란드는 난민신청자를 난민지원시설에 입주시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난민지원시설은 중앙난민지원기구(COA: Central Organization for the Reception of Asylum-seekers)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경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COA는 네덜란드를 1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국에 55군데의 리셉션 센터가 있다. 리셉션센터는 독립가구거주 방식이 아니라 8가구가 부엌을 공유하고 약 4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구조이다. 외출은 가능하나 외박은 허가를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많은 난민신청자 센터에서는 아동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시설에서 영어 혹은 네덜란드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지위나 국적과 상관없이 5세에서 16세까지 학교에 가야하며 난민신청자도 예외가 아니다.

#### 5.2 아동지원 프로그램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여 이민자의 출신국 문화를 유지하는 통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점차 이민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 (1) 난민학생재단( UAF : Foundation for Refugee Students)

난민 학생 재단은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을 위하여 학문과 학문 준비 단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장학금 또는 기금 지원, 상담을 통한 충고 또는 지침 제공,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고등 교육을 받은 난민들에게 적절한 정부 간 또는 민간 교육 과정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언어/공부/일 : 교육은 난민을 올바른 귀화(naturalization)를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정규 교육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단을 통해 85% 이상의 학사 졸업 난민들이 그들이 받은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였다.

- 학생 상담 : UAF는 공부하는 과정 동안 학생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학생 상담자들은 난민이 공부 과정을 선택할 때, 공부를 준비할 때,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상담과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면서 지원한다. 상담자들은 난민들이 좀 더 멀리 보고 나아가서는 근래에 적합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상담자들은 난민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중개자 역할을 해준다.

- 준비 : 공부를 위한 준비 기간은 전환 과정(transition year)이다. 이는 준비의 해, 또는 대학 준비 또는 언어 연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네덜란드어를 습득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분에 있어 준비를 하기도 한다. 즉, 네덜란드 내에서 교육 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UAF는 준비하는 1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재정 : 재정 지원의 정도는 상황(나이, 거주 허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학부 과정이 전일제인지 파트타임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30세 이하의 난민일 경우 전일제 과정을 할 수 있으며 30세 이상의 난민일 경우 파트타임 과정을 신청해야 한다.

- 상환 : 일반적으로 UAF에 의해 지원되는 등록금 지원액은 60%정도이며 나머지 40%는 무이자 대출로써 난민들은 상환해야만 한다. 학부과정이 끝난 후부터 상환은 시작된다.

## 6. 스웨덴

### 6.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국경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할 경우 먼저 경찰에 난민 신청 의향을 밝혀야 하며 경찰은 이를 스웨덴 이민국(Swedish Migration Board)에 통보한다. 스웨덴 입국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Malmoe, Gothenburg, Stockholm에 있는 이민국에서 직접 신청한다. 난민인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18세 이상의 성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감독하에서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법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3일 이상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6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수가 수용한도를 초과하면서 이를 3배 이상으로 증설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1989년에는 20,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사이 신청자는 40,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됨과 동시에 난민적격성 심사 절차 등이 엄격해 졌다. 난민신청자의 수는 그 후로 주춤하다가 1990년대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2008년 11월 현재 3,8000명의 신청자가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중 45%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시설 밖에서 생활하고 있었다.<sup>26)</sup> 이민국은 난민 지원시설을 전국 각 행정구역에 고루 배치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구역당 난민신청자의 수는 많지 않아 난민신청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 각 신청자에게는 이민국의 담당직원이 지정되며 이들은 신청자의 주거 및 각종 활동에 대해 책임진다. 무연고 아동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이민국 관할의 특별 거주 시설에 수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에게 대리인이 지정하며 대리인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수입이나 저축이 없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되는 생활비는 시설 밖에서 지낼 경우, 성인 단신 하루 71 SEK<sup>27)</sup>, 동거인이 있는 경우 성인 한명 당 하루 61 SEK, 3세 이하의 어린이 하루 37 SEK, 4-10세의 어린이 43 SEK, 11-17세의 청소년 50 SEK (3번째 자녀부터는 반액)이다. 시설에서의 식주가 제공되는 경우, 성인 단신 하루 24 SEK, 동거인이 있는 경우 성인 한명 당 하루 19 SEK, 17세 이하의 어린이 12 SEK (3번째 자녀부터는 반액)이다.<sup>28)</sup>

16세 이상의 신청자들은 스웨덴어 수업 등 이민국이 관할하는 집단 활동에 1주일에 20시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음악교실, 어학교실, 컴퓨터, 목공, 지역 기업에서의 연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 활동들은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인정되지 않아 귀환하였을 경우에도 출신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6.2 아동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이주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모국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유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문화전시 행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29)</sup>

### (1) 모국어교육

26)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Reception of asylum seekers

<http://www.sweden.gov.se/sb/d/11901/a/125266>

27) 환율 1 SEK=약160원, 하루 약11,000원, 한 달에 약 35만원 가량이다.

28) IGC, 위 보고서, p.330.

29) 최연혁, 『스웨덴의 이주·난민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2009, p.41.

스웨덴의 이주민 아동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주민 자녀가 스웨덴 교육제도에 쉽게 적응토록 하고 어릴 때 모국어의 완벽한 습득이 스웨덴어 이해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1968년 한세고드의 연구에 근거하여 1976년부터 모국어교육을 전 이주민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의 주 골자는 이주민 아동이 먼저 접하는 언어는 가족 내에서의 모국어인데 이를 체계화시키지 못하면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지고 스웨덴 사회에의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모국어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스웨덴어의 습득이 빨라지고 학교교육과 사회에의 적응을 훨씬 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조기 모국어교육 반대론자들은 이주민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너무 일찍부터 모국어를 배워서 언어두뇌적 인지가 떨어지고 혼돈만을 가중시켜 스웨덴어의 언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0)</sup> 사회적 논란과 함께 60%정도의 아동만이 모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교육프로그램은 통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스웨덴 모국어교육의 성공적 시행에 따라 유럽의회도 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유럽내 모든 이주민 아동들에게 모국어교육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다.<sup>31)</sup>

## (2)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스톡홀름 외곽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하닝에 컴문(Hanninge Kommun)은 이주민의 비율이 15% 가량이고 유드브로(Jordbro)지역은 20%까지 이르는 다문화지역으로서 이곳 지방자치단체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sup>32)</sup>

### (가) 칼라발릭 연극회(Kalabalikteatern)

7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이 매년 평균 63명 참가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1인당 400크로네의 연회비를 내고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다. 20주 동안 1주일에 3번씩 만나 하루에 1시간씩 12-13명으로 구성된 팀이 연극수업을 한다. 작품의 한 인물을 선정하여 대사를 외우게 하고, 연기수업과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실습을 통해 이주민 아동청소년들이 스웨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극본에 나오는 스웨덴의 사회적 관습, 가치체계 등을 습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 내 외국인 클럽과 협조해 연극을 직접 올리고 참여와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접점이 되기도 한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인이 동시에 다문화를 체험하고 스웨덴 사회를 배우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나) 스포츠와 민주주의(Democracy in Boxing)

30) 최연혁, 앞의 책, pp.34-35.

31) European Parliament, A6-0125/2009 권고 제18조, 최연혁, 앞의 책, p.38 에서 재인용

32) 최연혁, 앞의 책, pp.41-43.

권투, 태권도, 유도, 승마, 테니스, 수영연습을 통해 이주 아동청소년과 스웨덴 청소년들이 교류한다. 스포츠를 통해 함께 땀 흘리고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모여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초등학교부터 중등, 고등학교까지 이주민 출신의 청소년 참가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네트워크의 확대와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끌고 있다.

#### (다) 청소년 캠프(Youth Garden)

모든 기초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관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 방과후 학생들이 음악, 댄스, 컴퓨터 혹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한다. 다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는데, 사진전, 미술 전시회, 음악회 등을 통해 문화이해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운영되기도 하여, 휠체어와 함께하는 산책반, 수영반, 휠체어 운동반, 장애인 승마반 등이 열린다.

### (3)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94%에 이르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스톡홀름 남부외곽 피트야(Fittja)에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된 센터로서, 다문화연구와 문화행사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문화를 주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글짓기대회, 미술대회, 연극 및 전시회 등이 열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세미나도 열린다. 연구센터는 국가 다문화정책의 산실로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화작업을 수행하는 국책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 7. 핀란드

### 7.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시 국경심사대에서 난민 신청하거나 입국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청한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거주시설에서 지내게 되며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무연고 미성년자는 group home이라 불리는 특별 시설에 입주한다. 지방 법원이 심사기간동안의 대리인을 임명한다. 대리인은 아동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특별 연수를 거쳐야 한다. 난민 인정 심사를 위한 면담은 대리인의 출석하에 각 시설에서 실시된다. 취학 연령의 아동은 학교에 통학하며, 취학 대상이 아닌 어린이

는 자원봉사 등에 의한 클럽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시설에서는 핀란드어에 의한 일상 회화의 어학교육이 제공된다.

## 7.2 아동지원 프로그램

2003년 12월~2005년 4월까지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에 의해 MORE(Modeling of National Resettlement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easures)라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전반적인 재정착 과정을 모델화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 (1) 가족케어 ( Family-related issues and services)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난민들에게 매우 복잡하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통합 과정 선상에서 개개인의 난민들에게 가족의 존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다 주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서의 가치, 규칙과 규범들은 종종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개인에 중심을 둔 통합 조치를 취할 경우에 가족 구성원 내에 서로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통합에 위협이 가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칫하면 다른 세대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사회적 가치와 규범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들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기 쉽다.

### (2) 모범사례 ( Hometree Program)

핀란드의 가족 연방 정부는 intermediate services라고 불리는 조항에 따라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the Kotipuu-program(hometree program)은 가족 중심의 통합 일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Kotipuu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 부문과 NGO 행위자들의 노하우와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Kotipuu에 의해 고용된 스태프들은 이민, 가족 중심의 특정한 이슈에 관심을 갖으며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Kotipuu는 공공 부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자문 서비스를 상담,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위한 토론 그룹을 형성하고 각기 언어로 지침서를 제공한다.

### (3) 주간아동보호시설 (Children day-care )

Lahti 도시에서 day-care 시설은 보조 사무원으로서 다른 언어를 쓰는 5명의 대표가 상주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다른 소수민족들 일부가 고용되어 있다. Lahti에서 day-

care 그룹은 소수의 문화와 언어를 지닌 아동들을 위해서 일한다. 보조 지원자로서 일하는 이들은 아동의 모국어와 문화적 이해를 효율적으로 돕고, 두 문화 속에서 두 가지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 8. 캐나다

### 8.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난민신청은 공항만국경사무소인 CBSA나 이민국사무소인 CIC에서 할 수 있다. CBSA나 CIC 공무원은 3업무일 이내에 인터뷰를 통해 적격성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에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난민인정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민난민위원회인 IRB의 난민보호부(RPD : Refugee Protection Division)로 회부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반드시 난민지원시설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착 직후 의식주 등 기본적인 필요들을 해결하고, 난민 신청에 따른 법적인 절차, 의료, 교육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난민지원시설 거주를 필요로 한다. 난민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영어, 불어 수업 들을 수 있다. 더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언어교육 이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캐나다에 도착과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sup>33)</sup>

캐나다는 난민신청자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지원하는 시설, 캐나다 정착을 위한 의료, 교육, 주거, 직업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지원 시설과 서비스가 있다. 정부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리셉션 센터는 임시숙소와 정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COSTI Reception Centre의 경우는 초기 정착 오리엔테이션, 주거 정착 지원, 지역 정착 서비스를 통해서 난민신청자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다.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여러 리셉션 센터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법적인 절차와 여러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숙소는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시설로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Romeo House의 경우는 난민신청자들이 변호사, 학교와 탁아방, 영어교실, 노동허가, 건강보험, 법률지원, 자원봉사 배치, 의류 및 가구 지원, 번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sup>34)</sup> 각 지역의 리셉션 센터를 통해서 난민신청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연고 미성년 난민신청자에게는 난민신청 전과정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돕게 한다. Child Tax

33)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outside/arriving-rights.asp>

34) <http://www.romerohouse.org/romerohouse/myweb.php?hls=10036>

Benefit은 18세 미만의 아동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캐나다에 거주한지 18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소급 받을 수 있다.<sup>35)</sup>

## 8.2 아동지원 프로그램

### (1) 정부지원 프로그램

캐나다의 독특한 다문화 지원정책으로는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INC)과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이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호스트가 되어 신규이민자의 정착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호스트(HOST) 프로그램이 있다.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와 이민국(CIC)이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방과후활동, 숙제클럽, 일대일 개인교습, 미술치료, 워크샵, 캠프, 미술, 공작, 오락게임, 견학, 소풍, 카운슬링, 동료지원(Peer Support), 지도자 훈련기회 제공, 건강한 자아관과 자립능력개발, 취업교육, 임시주거지(Welcome House) 제공, 다문화청소년써클, 아프리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자원봉사, 호스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36)</sup>

### (2) 토론토 정착 및 교육 파트너십(SEPT :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ship in Toronto)

정착도우미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을 위하여는 주 교육제도 이해, 무료로 제공되는 정부나 지역사회 지원 자원(주택, 의료, 법률, 재정) 소개, 학교내 자원, 교사, 학생회, 클럽 등과 연결,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활동(교내 ESL클럽 가입 등),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나 학기 중 방과 후 취업 알선, 자원봉사 연계, 개인교습이나 기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지원, 공공 도서관 시설이나 공원, 공중 오락시설 이용 도움, 개인적 문제 해결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모들을 위하여도 여러 가지 정착지원사업을 수행한다.<sup>37)</sup>

### (3) COSTI 센터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COSTI는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Meeting the needs of a diverse society”를 모토로 50년 동안 토론토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일해 온 단체이며 토론토 전체에 14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간 전 세계에서 오는 42,000명 이상의 이주민들을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60개 국어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주거문제 상담, 직장 알선, 언어(ESL, 영어) 교육, 직업 교육, 가족 치

35) <http://www.cra-arc.gc.ca/bnfts/ucb-puge/pplctn-eng.html#q1>

36) 김효신, 『캐나다의 이주·난민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2009, pp.36-41.

37) 김효신, 앞의 책, p.42.

료와 상담, 재활프로그램, 이주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동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자발성, 창의성, 성장 및 완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가) 난민아동을 위한 미술 치료 (Art Therapy) <sup>38)</sup>

- 목적 : 미술치료는 본국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난민아동들이 상징을 통하여 욕구를 풀고 정서상의 어려움과 긴장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도구임,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자신들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다시 표현하며 일정한 편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됨, 방어적인 태도를 이완시키고 억눌렀던 것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는 창조적 과정임. 아동기에 그들의 공포와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기회

-대상 : COSTI 리셉션 센터에 머무르는 2세 이상~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여러 나라 언어와 통역으로 서비스를 제공.

개인기부자와 펀드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참가난민아동에게는 무료

-시간 : 수요일 저녁 6시-9시.

(나) 여름 캠프 (Action for Youth)

- 시기 : 7월이나 8월 중 한 달 동안

- 대상 : 6세~12세의 저소득층 아동(필요할 경우, 통역 서비스 제공)

- 목적 : 새로 이주한 아동들에게 친구를 사귀고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용 : 컴퓨터로 편지 보내기, Gibson House 방문하기 등 교육적 활동/ 게임, 운동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다)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 (Connections)

- 시간 : 월, 수, 금요일 저녁 6시~9시(9개월 동안)

- 대상 : 5세~23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 목적 : 소수 인종이나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주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방과 후 활동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

- 내용 : (경쟁/비경쟁 부문으로 나뉨)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운동 기능을 향상 시킴

(라) 직업 훈련 및 알선 (Job Connect, Youth Employment Counseling and Placement Services)

-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4:30(4주 동안)

- 대상 :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16~24세의 청소년

- 목적 : 청소년들이 직업 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을 구할

38) [http://costi.org/programs/program\\_details.php?program\\_id=161](http://costi.org/programs/program_details.php?program_id=161)

기회를 확대시킴

- 내용 : 1:1 직업 컨설팅/ 인터넷을 통해 직업알선센터와 연결/ 작업장 방문, 자원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연습 기회 제공/ 직업 알선/ 추후 지속적인 지원

(마) Kick Start 프로그램

-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4:30(\*참가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 지급)
- 대상 : 15~30세 중 학교교육과 직장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누구나
- 내용(직업훈련교육과 유사) : 장단기 목적 수립을 위해 직업에 대한 요구도 평가 / 개인적인 기술과 관심 평가/ 직업 알선/ 추후 지속적인 지원

(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 대상 : 참가를 원하는 이주민이나 소수 민족 청소년이면 누구나
- 목적 : 참가자 본인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높임, 리더십과 멘토링 기술 증진/ 이주민과 소수 민족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해당 지역의 다른 청소년들의 범죄와 마약 문제들을 중재할 수 있도록 도움
- 내용 : 학교와 또래 그룹, 지역 사회에서 세미나를 진행, 참가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직접 만든 책자 활용

(사) 놀이방 운영

- 대상 : COSTI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이주민들의 자녀들
- 시간 : 교육 시간 동안(온종일)
- 목적 : 주로 이주 여성들이 아동들을 맡기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4) Romero House의 아동, 가족 관련 프로그램

Romero House는 At the Border Called Hope의 저자, Mary Jo Leddy가 1992년에 설립된 이후에 4,500명이 넘는 난민들(개인과 가족)을 위한 주거와 정착,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해 단체로서, 주요활동은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주거 제공, 난민들의 정착을 위한 서비스, 여성 그룹 모임,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사업, 직장 알선 지원, 주거 알선 지원, 기증받은 의류 지원, 번역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관련 서비스 등이고, 그 이외 영어 교육이나 상담 등은 해당 기관과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가족들을 중심으로 장기 난민 숙소 4개에 10 가족 이상을 수용하고 한 달에 \$165의 최소한 임금을 받는 인턴들을 중심으로 스텝들이 난민들과 같은 집에 머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난민과 이웃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이웃 참여 프로그램 운영), 난민아동들을 위한 숙

제모임 등 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필요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sup>39)</sup>

#### (5) FCJ(Faithful Companions of Jesus)의 아동 및 여성관련 프로그램

Francisco & Loly Rico 부부가 예수회의 지원을 받아 1991년 6월에 학대 받는 상황을 피해서 온 난민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토론토의 Hamilton가에 집을 오픈하면서 시작하여, 점차로 해당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정서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적인 지원을 얻도록 노력하기 시작하고, 1997년 이후부터 프란시스코 리코와 Lois Bordowitz를 중심으로 난민 여성과 아동들의 캐나다 정착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FCJ의 세 가지 원칙 : 1) 개방 원칙 “Open door policy” : 어려움에 처한 난민 여성이나 아동이면 누구나 조건 없이 수용함, 2) 평등 원칙 “Everyone is equal” :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정신으로 난민 여성들과 아동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대함, 3) 총체적인 서비스 “Total service” : 난민 여성과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식주, 법률 자문, 상담, 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그들이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스스로 필요한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sup>40)</sup>

- 난민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shelter 제공 : 현재 5 개의 집에서 연간 50명 정도가 기숙함. 보통 8~10개월 정도 머물다가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감.

-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그룹 단위로 정보 교환, 상담 및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 공예품 만들기(수입원 창출, 치유 효과) 등.

- 교육, 상담과 그 외의 지원 프로그램 : 통·번역 서비스,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관련 자문, 직업 교육, 캐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 관련 워크샵 실시,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활동.

- 네트워킹 : 다른 단체와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계활동. 예) CCR(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OCASI(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 CSPRC(Coalition of Service Providers for Refugees Claimants)

- 대중적 홍보 : 미디어를 통한 난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 (6) Matthew House의 아동 및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1996년에 설립자 Anne Woolger-Bell을 책임자로 세우고 개신교 교회들이 난민사역을 시작하고 1998년에 난민들을 위한 숙소를 토론토 중심가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70개국에서 온 600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숙식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고 현재 약 12명 정도가 기숙하고 있다. 단기로 머무는 집과 장기로 머무는 집

39) 박진숙,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캐나다 연수 보고서”, 난민자녀 열국아이학교 사업보고료집, 2008.3, 피난처, pp 80-92

40) 박진숙, 앞의 책, p. 89

(‘transition house’)을 운영하며, 현재 사무실 겸 단기 shelter로 사용하고 있는 집은 정부로부터 1달러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핵심 가치는 성경에 기초한 ‘사랑이 담긴 서비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함, 인간의 존엄성 중시, 공동체적 가치 중시, 전문가성 중시, 난민 관련 사역에 있어 모델이 되고자 함, 난민들을 가족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다(Matthew House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족같은 분위기’를 꼽음)

정착 지원 프로그램(실제적인 생활 안내,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 법률 서비스와 연결)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41)</sup>

- 월례 모임 Monthly Drop-in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4:40~8:30까지, 이곳을 거쳐 간 사람들과 그 친구들이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임. 여성과 남성 아동들을 위한 운동, 공예품 만들기 등을 진행

- 여름 캠프 : 매년 7월 토론토 북쪽의 Muskoka 호수 근처에서 주말 동안 실시. 현재 머무르고 있는 난민들과 과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참석. 서로 사귀고 교제하며 사랑을 배우는 시간. “장기자랑talent night”을 통해 난민들과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짐.

- Transition House의 운영 : 호스트 커플(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주하는 난민들을 감독하고 지원)이 상주함, 3~4 가정(혹은 개인)이 함께 머물면서 가족처럼 지냄, 부모가 없이 온 난민 청소년들의 경우 호스트 커플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함.

## 9. 미국

### 9.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난민신청자는 미국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입항이나 지방이민사무소에 난민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는 적극적 신청인 경우와 방어적 신청인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sup>42)</sup> 적극적 신청인 경우는 신청 후 43일 이내에 이민국(USCIS) 지역난민담당관(Asylum officer)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심사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출석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는 이민판사에 회부하고 기타의 경우는 절차를 종결한다. 방어적 신청은 적극적 신청이 거부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의한 추방절차, 유효한 여권 없는 입국의 경우 난민신청으로서 신청자는 이민심사국(EOIR)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 앞에서 정부대리 변호사와의 변론을 통해 판정된다.

미국의 난민지원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국적, 지역적 NGO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민간지원단체들이

41) 박진숙, 앞의 책, pp 90-92

42) IGC, 위 보고서, p404-405.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들은 미국 정부가 1980년 제정한 난민법(The Refugee Act of 1980)에 근거에 정부와 비정부 기구 즉 난민 자원 봉사 단체 (VolAgs-Refugee Voluntary Agencies)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지원을 받는다. 국토안보부 시민권 및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입국 심사,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은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와 단기적인 지원, 그리고 보건 인적 자원부 난민 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은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민간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자원 봉사 단체 (VolAgs) 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금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난민 정착 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무연고아동의 경우 난민신청 기간(입국 후 1년 이내)과 안전한 제3국 경유여부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의 난민신청에 대해 지역이민사무소 난민담당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난민신청 일자리를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부모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 일방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가 부여된다.<sup>43)</sup> 난민인정자들은 미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공 교육과 긴급 의료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9.2 아동지원 프로그램

### (1) 학교 교육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이 초기 적응에서 소외되는 것은 언어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인종적인 차별 뿐 아니라 언어적인 고립을 겪고 학교를 그만 두는데, 이주청소년들의 자퇴 비율이 일반 미국 학생들의 자퇴 비율보다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학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sup>44)</sup>

#### (가) 이주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Newcomer Program)

일시적으로 1년 내의 시간동안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 영어 비능숙자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 또는 부모들을 위해 이주 청소년들만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에서의 적응 뿐 아니라 미국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교육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체성 형성, 문화 및 언어 습득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영어 비능숙 이주자들과 나이에 비해 학력

43) <http://www.uscis.gov/link/docView/SLB/HTML/SLB/0-0-0-1>

44) 김윤영, 『미국의 이주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2006, pp 31-41

이 낮은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 미국 학교 교육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상처와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주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향상 능력, 미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미국 학교제도, 특히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외에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간호사, 심리 치료사, 상담가, 교외 활동과 건강 검진 관련 서비스센터 등 여러 지역사회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주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교와 사회의 확실한 오리엔테이션, 특별한 교과과정, 폭넓은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 학생과 학생의 개인적 일대일 관계, 전문 교사 훈련, 다문화 교육 실시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 확실한 학습적 토대를 심어준다.
-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킨다.
- 오리엔테이션과 기본적인 독립생활을 가르친다.
- 상호 문화적 이해와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한다.
-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아정체성을 강화시킨다.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보통 일반 학교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민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설정되거나 혹은 새로 온 이민 청소년만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서 진행한다. 또한 일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거나, 하루 중 일부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진행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다양한 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적응과정의 학교 환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리된 환경의 프로그램이 일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접촉을 차단하고 1년 후 일반 학교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한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각 지역마다 학생들의 분포를 다르게 책정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30, 40개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섞어서 수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온 학생들만 수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필리핀, 남아메리카에서 온 아이들을 각각 교육하고 있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각 언어권 별로 아이들을 분리시키지는 않는다. 대신에 함께 경험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자기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 평가(Assessment) : 새로 온 이주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한 1주일 안에 학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평가 센터 기관에서 어느 정도 미국 학교 교실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른다. 구술 영어 능력과 이해도,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모국어 능력(구술, 읽기, 쓰기), 수학 및 계산 능력(이 항목에서는 때때로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써보게 하는 문제를 내기도 한다.) 등을 평가한다. 부모와 학생들은 과거 교육의 배경에 대한 인터뷰를 받는다. 또 이 기

관에서는 올바른 평가를 위해 예전의 학교 성적표를 요구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평가 이외에도 미국 학교 체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면역체계, 의료 서비스 그리고 부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능한 모든 평가에 있어서 각 아동들의 다른 문화 경험으로 받은 특별한 필요조건이나 배경에 대해서 세심하게 훈련받은 담당자가 각 아동들의 언어를 구사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이 기관은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학년 배치나 학생들의 학습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배정(Placement) : 일반 학교에 이주 아동 또는 청소년을 배정할 때, 그들의 나이와 정확한 학력 수준에 맞추어서 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는 이주학생들의 교육배경에 있어서 개인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나이, 언어 능력, 모국어 실력, 교육기간, 학교와 사회에 대한 친숙도 등을 포함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야한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과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이주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적응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 이 특별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에 편입한 후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들은 재택교육이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

-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편입(Transition to other programs) : 이주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과정으로 제약을 둔다. 학생들에게서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면 프로그램 담당자의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편입을 허가한다. 시험결과와 선생님의 의견을 결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캘리포니아 하워드 지역의 어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루 중 만나절을 일반 학교에서 보내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일반 미국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만약 일반 학교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편입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반 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이 쉽게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편입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학교와 분리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원활한 편입절차의 진행을 위해 담당자가 일반 학교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교과구성(Curriculum) : 이주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구성은 영어교육, 학습 콘텐츠, 오리엔테이션 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이 역시 일반 학교와 통합되어 있느냐 혹은 분리되었느냐에 따라 중점을 두는 것이 달라진다. 학교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영어 교육과 적응 관련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에 통합 돼서 교육을 하는 반면, 일반 학교와 분리된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첨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과거 교육 배경과 영어 수준에 따라서 구조화되기 때문에 일반 교육 교과과정보다 유동적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두 가지 언어의 교과과정이 진행되고 영어 수업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

도 있다. 교과서나 준비물들은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고 학생들과의 교과 활동에서도 자유롭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주요 언어 수업인 영어학습(ESL)수업은 구술과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돕는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 역사, 지리, 수학, 기초 과학, 문학 등을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 수업들은 교육 철학을 기본으로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며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체계(Bilingual system)와 문화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일반 지식과 문학을 모국어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영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새로 온 이주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시스템, 지역사회를 소개하고 그들을 미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역사회의 현장 탐방(Field Trip)은 이 과정에 포함된다. 기본적 요소들은 학교 시설물 안내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환경을 소개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국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서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하여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대화나 사회 작용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둔다. 여러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교과 과정을 마친다.

- 교과 과정에서의 비전통적인 방법 사용(Use of Non-Traditional Methodologies) : 새로 온 이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콘텐츠 중심의 언어 교육, 음악과 상상의 결합, 쓰기에 바탕을 둔 문학 수업, 총체적 언어 수업 등 창조적 방식을 이용한다.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의 특별 학교는 실험 방식의 경험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자연적 상황에 맞추어서 언어를 배운다. 또한 크게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주제별 문학을 배운다. 모든 1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통합된 주제로 교과과정이 진행된다. 영어 수업도 사회 과학과 관련된 하나의 지식을 배우고 동시에 영어를 배우는 통합 콘텐츠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창조적인 가르침은 사실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아이들의 교육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 특별 프로그램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아이들 나름대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

(나) 학교 내 지원제도(학업지원, 상담, 언어교육, 전담교사 등)

-상담(Counseling) : 이 프로그램의 학교 상담자는 학생들의 특별한 배경에 민감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은 한 학교의 심리학자나 여러 특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긴밀한 연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LA의 크렌쇼 고등학교는 일시적 보호소, 여성 상담소 혹은 미혼모 보호소 같은 상담 기관들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Heal Services) : 많은 이주자들이나 난민들은 직접적인 주의를 요

하는 건강이나 심리적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파트타임 간호사나 보건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임신 관련 서비스나 강간, 폭행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학생들과 그 가족이 항상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모 활동(Parent outreach) : 이주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교류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부모님들이 회사나 부모 세미나 같은 교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준다. 모든 유인물들이나 광고사항 등은 다양한 언어들로 제작해서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전화나 가정방문 시의 두 가지 언어 지원요청도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Liaison with Community Services) : 최근에 도착한 이주 가족들은 공공 혜택이나 지역 사회의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지원이나 음식 지원,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별 프로그램이나 교과 외 활동(Special Programs & extracurricular activities) :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현장탐방, 특별 교내활동, 문화 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적응을 돕는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한 고등학교는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갖는다. 서로 다른 지역의 자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적 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

-직업교육(Career Education) : 이 프로그램은 졸업 후 인생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직업 오리엔테이션과 상담을 제공한다. 보다 폭넓은 활동과 세부 전공 수업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뉴욕의 한 국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가지 직업 관련 수업을 이수한 후, 학교 인턴쉽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한다.

#### (다)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

방과 후 활동은 학습 향상과 가정 폭력 및 임신과 같은 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부 기관인 난민정착연방사무소(The federal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는 난민이 도착하면 어느 정도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5년 동안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해 기금을 지역 학교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개인 영어 교육 학습과 난민 학생들을 위한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초기 아동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시킨다. 또한 난민 부모님이나 학교 기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모훈련과정을 위한 접수는 전화 상담이나 가정방문 혹은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어 미숙자들에 대한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놓고 있다.

미국 오레곤 지역에 있는 보스니아 및 아프리카 난민 청소년 서비스(The Bosnian and African Refugee Youth Services, BARY) 프로그램은 학습경험을 향상시키고,

레크레이션 기회, 행태적 상담, 삶의 기술 훈련 그리고 여러 문화적 기회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2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미국에서 생활한지 5년이 안된 사람들로 제한되어 시행된다. 주요활동들은 비디오 촬영, 글쓰기, 킥복싱, 개인 학습 그리고 게임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석 상황, 수업 참여, 학습 점수, 부모미팅참석 그리고 학생들의 발전에 대한 부모의 기록 등으로 아이들을 평가한다.

또한 청소년 조기 임신 방지 단체(Greater New Britain Teen Pregnancy Prevention Agency)는 이웃과의 협력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원, 직업 준비, 가족 및 성 관련 교육,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의료서비스, 문화정체성 향상 등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 작용, 출석 혹은 학습적인 발전을 모니터 하기 위해 학교와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진다.

## (2) 무연고 난민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 난민프로그램은 여러 특별정착프로그램과 무연고 난민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발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공급된다. 루터 이민 및 난민 서비스 센터(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LIRS)와 미국 카톨릭 기관, 혹은 이민 및 난민 기관(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Migration and Refugee Services, USCCB/MRB)등이 미국 주 정부기관의 승인 하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2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며, 승인된 아동복지센터와 넓은 연계망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18세 이하의 난민아동들, 입국자(Entrants, 즉 도착 후 프로그램 대상자로 분류된 자), 피난민(Asylum seekers, 은신처가 부여된 후 프로그램 대상자로 분류된 자)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 of trafficking)등이다.

이는 양육관련 프로그램, 자립생활 준비 및 적당한 계발 관련 필요조건의 충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거, 음식, 옷 등 여러 필수품들에 대한 간접적 재정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사회 복지 관련 지원, 자립 기술 훈련(예: 예산, 주거, 음식 사회 혹은 법적 시스템 교통, 교육, 지역 사회의 자원, 건강 및 성교육), 교육 특히 영어 교육, 멘토 역할의 일대일지도 교사학습, 직업 훈련과 진로진학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가능한 한 지속적인 가족 찾기, 문화적 활동 및 레크레이션, 특수 교육 서비스, 법적 지원과 같은 세부 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sup>45)</sup>

양육 관련 서비스는 문화적·언어적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건강상태나 정서적 안정, 교육, 고유의 인성과 기질 등 여러 요소들에 따른 개인별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양육 부모는 주 정부기관에서 아동복지 관련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민족과 언어적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적응에 관련된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

45) 김윤영, 앞의 책, pp 41-42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가족과 함께 들어온 후 상황의 변화를 겪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도착 후 가족이 분열되거나 학대, 부모의 죽음 등 여러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난민 정착 사무소에서는 재분류자로 분류한다.

## 10. 호주

### 10.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호주에서의 난민신청은 보호비자(PV: Protection Visa) 신청의 형태로 국경지역과 이민국(DIAC: Department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서 할 수 있다. 난민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민국장을 대리하여 의사결정권자가 UN난민협약과 호주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난민 인정을 받기 적합한지 판단한다. 이 최초의 결정은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에게는 장기보호비자 (PPV: Permanent protection Visa)가 주어진다.

18세 이하의 무연고자는 호주 이민법 1949(IGOC 법)에 의해 보호자를 선임해야 한다. IGOC 법에 따라 이민국 장관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은 장관의 피보호자가 된다. 장관은 보호자의 임무를 이민국 내 책임자 또는 그의 복지를 관할하는 주 당국의 책임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sup>46)</sup>

자녀가 있는 가정, 무연고 미성년자, 공동체가 돌보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은 공동체 내의 특별한 장소에서 이민국이나 NGO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난민신청자지원제도(Asylum Seeker Assistance Scheme :ASA)에 의해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과 신청조언제도(Immigration Advice and Application Assistance Scheme :IAAAS)를 통해 이민과 난민신청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고문과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전국 8개 곳에 위치한 The Forum of Australian Services for Survivors of Torture and Trauma (FASSTT)로부터 재활지원을 받는다.

25세 이하의 난민 등은 910시간 25세 이상의 난민 등은 610시간, 다른 이민자들은 510시간까지의 영어수업을 듣는다. 호주 전역에 약250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종일반 혹은 파트타임, 학교수업 혹은 커뮤니티형태나 홈스쿨, 통신이나 가정방문 등 형태는 다양하다.

### 10.2 아동지원 프로그램 <sup>47)</sup>

46) IGC 위 보고서, P 33

47) 문경희, 『호주의 이주·난민 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2007. pp 31-40

호주의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가 호주사회에 오랜 기간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없애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호주의를 토대로 단일민족 정체성을 형성했던 백인 호주인들에게 다문화주의 원칙 아래 이질적 인종, 민족을 수용하라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요구는 오히려 인종적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는 인종갈등의 해법을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가 아닌 문화정체성 맥락에서 찾을 경우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백인우월주의자들, 특히 일부 보수적 정치인들에 의한 반이민, 반난민 정치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 호주에서 보편적인 문화이념이 아닌 문화관행의 다양성 존중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공동체 문화의 역동성을 외면하는 문제로 나타났다.<sup>48)</sup>

## (1) 전국적으로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 (가) 재정착 프로그램(Resettlement Programs)

#### 1) 통합된 인도주의 정착 전략(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 IHSS)

IHSS는 인도주의적 입국(Humanitarian entrants)에 따라 호주로 유입된 사람들, 즉 난민들에게 최고 6개월까지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상담 및 임시 숙소와 장기 거주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IHSS는 이민자 정보센터(Migrant Resource Center, MR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민자 가족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멜번의 AMES(성인 다문화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2007년 한 해 동안에 시범적으로 ‘청소년 공동체 가이드’(Youth Community Guides)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주·난민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서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청소년 서비스, 여가활동, 교통, 생활정보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 2)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s, SGP)

연방정부는 2005년부터 새로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SGP는 정착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공동체나 지역에 우선으로 제공된다. SGP 자금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경우에 따라 1~3년 기간 동안 제공된다.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금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제공되고 있다.

48) 문경희, 앞의 책, p. 41

(나) 교육, 훈련, 고용 - '성인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Adult Migrant Education Program, AMEP)

AMEP는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영어 수업과 일반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인의 경우 영어수업이 총 510시간까지 지원 되고, 필요한 경우 '특별 예비 프로그램' 명목 하에 추가 시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이주·난민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하며, SPP는 청소년을 위해 추가 수업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 접근성과 공평성(Access and Equity)

전화, 온라인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난민에게는 대개 무료로 제공된다. 중앙 정부차원에서 모든 이민자와 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정보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거나 청소년과 관련 없을 수도 있다.

## (2) 연방정부 차원의 이주·난민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서비스

(가) 호주에 도착한지 5년 미만인 유스 지원서비스(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 NAYSS)

NAYSS는 호주에 도착한지 5년 미만인 12-21세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NAYSS는 그들 중에 이미 노숙자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별적인 사건 지원 및 상담, 주택 및 재정 지원과 더불어 그들이 가족, 직장, 공동체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YSS는 가족, 공동체 서비스, 원주민 부처(FaCSIA)를 통해 전국적으로 14개 서비스 기관에 의해 지원된다. NAYSS의 지원을 받는 이주·난민청소년은 이후 재연계(Reconnect), 일자리 찾기, 고용과 훈련(Job Placement, Employment&Training, JPET)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함께 받도록 한다. 재연계 프로그램은 부랑청소년들이 가족과 커뮤니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JPET는 재연계 프로그램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지만 부랑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독려한다는 점이 다르다.

(나) 무연고 난민아동·청소년 -Refugee Minor Program

무연고 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민시민권부가 18세 이하의 부랑청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각 지역 아동복지기관에 서비스 위탁을 맡기는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는 부랑 아동, 청소년이 숙소, 재정, 신체 및 정신건강지원, 문화와 종교, 교육, 현실적 지원,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가족/공동체 연계 등의 지원을 돕는다.

(다) 교육-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ESL New Arrivals)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ESL 선생님들과 다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주·난민청소년을 가르치는 일반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수업 커리큘럼 개발 및 수업방식 개발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 또는 시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일반 학교의 ESL 선생님들은 이주·난민청소년을 일반 수업에 포함시켜서 영어교육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을 위해 분리된 ESL수업을 만들기도 한다.

### (3)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

#### (가) 섹터 역량강화(Sector Capacity Building)

이민·시민권부는 청소년과 정착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공평성에 중점을 둔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는 청소년 이민정착 서비스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문화훈련, 주류화 서비스, 일반 정착관련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다문화청소년 이슈 네트워크’(Multicultural Youth Issues Network)가 지역의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문화감수성 훈련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이슈 센터’(Center for Multicultural Youth Issues, CMYI)가 네트워크 구성, 포럼, 좋은 관행에 대한 훈련, 물적 자원 지원 등을 통해 난민 및 이민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 주류화 서비스와 일반 정착 서비스 기관과 함께 일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책 실행자들은 이런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요 정책으로 여기기 보다는 부가적인 업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 재정착 프로그램

재정착 프로그램으로는 앞서 언급한 통합된 인도주의 정착 전략(IHSS), 정착지원금 프로그램(SGP), 유스 근로자-정착프로그램(Youth workers-Settlement Programs), 독립정착지원서비스(Independent Settlement Support Services)가 포함된다. 유스 근로자-정착프로그램의 경우는 일부 기관들이 DIAC의 지원금을 활용해서 유스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주·난민청소년들이 주류 공동체에 통합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정착지원 서비스는 일부 적십자와 같은 독립기관이 이주·난민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 (다) 가족과 커뮤니티

가족과 커뮤니티는 이주·난민청소년의 정체성, 정신건강, 재정 상태, 교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주·난민청소년 정책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다양한 이주·난민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이민 후에 청소년과 가족 간

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킨 후 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MRC South Australia의 경우는 난민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청소년 특수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이는 NAYSS와 재연계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서, 필요한 곳에 가족 중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난민청소년과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재정을 일부 지원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지원이 있는데, 이는 여성 이주·난민청소년 중에 임신 및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십대 여성들이 가출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 미혼모 가정에 유급 가족종사자를 지원하거나 기관 차원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교육, 워크숍,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MRC와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청소년 서비스 기관 등에 의해 운영되며 이주·난민청소년들에게 모국어로 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드니의 반폭력 교육센터와 서부 시드니 다문화 건강지원센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고문과 트라우마 생존자 치료 및 재활 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라) 교육, 훈련과 고용

연방/주 정부는 이주·난민청소년의 학교교육과 고용훈련을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이 고실업의 원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교육, 직업훈련,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전국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MEP)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16-24세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은 510시간의 영어 수업뿐 아니라 저학년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총 400시간의 추가 수업을 받는다. AMEP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청소년 서비스단체와 연계해서 일한다.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ESL 프로그램(ESL New Arrivals)은 호주에 유입된 지 6개월 이내인 청소년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청소년 ESL 집중 수업은 한 학생당 보통 20주 교육을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 각 주나 대도시에 위치한 예비 영어 센터/학교(Introductory English Centers/Schools)에서도 청소년에게 ESL 지원과 사회, 문화적응을 위한 지원 및 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ESL 교육을 받지 못한 새로운 이주·난민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규 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도서관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리스베인의 VORTCS(Volunteers Refugee Tutoring and Support)이 한 예인데,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하고 훈련을 제공한 후에 남부 퀸스랜드 지역의 난민청소년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들의 학교 수업과 과제 이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모들의 영어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VORTCS는 또한 'Learning in Harmony' 책자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각 지역의 TAFE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AFE가 지원하는 영어코스는 유료이지만, 일부 도시는 성인 이민자 영어 강좌를 TAFE에 의뢰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주·난민 및 저임금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운전 및 도로안전 등에 관해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멜번의 동남지역 이민자 지원센터는 앵글로 호주인과 이주·난민청소년들이 함께 자동차를 재조립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자동차 유지보수 등의 지식을 배운다. 교육-훈련-고용 연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는 퀸스랜드 주정부와 고용, 노사관계부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위의 프로젝트는 고용 상담가 두 명을 각 무슬림 커뮤니티에 배치해서 커뮤니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과 훈련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 (마) 주택과 소득

재연계(Reconnect) 프로그램으로는 이주·난민청소년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가출할 가능성이 있는 12-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그들의 가족과 재연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방, 지방정부 또는 커뮤니티 중심의 작은 기관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그들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주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임시 숙소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이 학교교육과 고용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상담하고 있다. NAYSS 프로그램의 경우도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숙소지원프로그램(The Support Accomodation Assistance Program, SAAP)을 볼 수 있다. 주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합해서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기간 동안에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주·난민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제공된다. 다문화청소년 주택서비스(Multicultural Youth Housing Services)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주택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의 카브라마타에 위치한 로터스집(Lotus House-인도차이나 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지원)과 멜번 북쪽지역의 여성을 위한 정보 및 주택지원 서비스(Women's Information Support and Housing in the North, WISHIN) 등의 두 여성 주택지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멜번 서쪽의 풋스크레이 유스 하우스(Footscray Youth Housing)과 이라무(Iramoo)는 난민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지원은 단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부득이하게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계가 있다. 소득과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호주의 대표적 취업, 실업 지원센터인 센터링크(Centerlink)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센터링크는 이주·난민청소년의 소득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그들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링크의 서비스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이주·난민청소년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바) 정체성 및 인종차별주의

정체성 형성은 어떤 청소년에게나 어려운 과정이나 이주·난민청소년에게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과 자신이 속한 소수 공동체와 주류 공동체 간의 기대 차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인종차별주의는 청소년의 자신감, 자존감, 주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호주의 주류와 자신이 속한 비주류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이민자 2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의 이민·시민권부는 ‘조화롭게 살기’(Living in Harmony)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단합과 문화적 교류, 이해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응집을 위한 전국적 활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Social Cohesion), 무슬림과 주류 공동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하모니와 안보’(Harmony and Security)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원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형태의 재정지원의 문제점은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고, 반인종차별주의 보다는 사회적 응집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과 음악은 정체성과 인종차별주의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멜번의 WYPIN의 경우 학교와 공동체 내에서 인종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극장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을 포럼을 통해서 알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 인종차별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무하기 위한 학교와 공동체 내의 교육도 상당수 제공되고 있다. 주로 ‘조화롭게 살기 지원금’(Living in Harmony Grants)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많고, 이는 주로 학교의 ‘하모니 데이’(Harmony Day) 활동을 통해 전달된다.

#### (사) 사회정의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 경찰과의 관계, 다문화 청소년이 주로 모이는 공공장소, 폭력행위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응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범죄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범죄 기소 과정과 처벌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내의 지원’(Support within the system)이 있다. 일부 기관은 이주·난민청소년들에게 법률적 지식 및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사전에 범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위험에 빠질 것 같은’ 청소년들을 미리 선별해서 다양한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도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 기관과 경찰 기관이 연합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경찰들이 지역 축제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빅토리아주의 ‘경찰-커뮤니티 다문화 자문위원회’(Police and Community Multicultural Advisory Committee)는 경찰과 다문화 기관 간의 성공적인 연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아) 건강-정신건강, 성적건강(sexual health)과 마약  
 호주에서 이민자·난민의 정신건강, 성적건강, 마약예방 등을 위한 의료, 상담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청소년에 중점을 둔 서비스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문화/청소년 건강서비스’(Multicultural Youth Health Services)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난민 건강 클리닉과 MRC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 건강 서비스와 기타 정보 프로그램으로 꼽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NAYSS 프로그램의 일부로 여자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젊은 여성 웰빙 프로젝트’(Young Women's Wellbeing Project)가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 건전한 성생활과 에이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술집 단위로 이민자·난민 및 유학생을 상대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문과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난민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퀸스랜드의 고문과 트라우마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도움이 평화를 증진한다.’(Help Increase the Peace)는 또래 집단 친구들과 자신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고찰해보는 10주간의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때 해당 분야 전문가와 개별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보장된다. 호주에서 마약, 알콜중독 문제 또한 이주·난민청소년들과 결부되어 부각되는 사회문제 중에 하나이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한 건강 지원서비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시드니의 ‘마약, 알코올 다문화교육 센터’(Drug and Alcohol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멜번의 ‘노스 리치몬드 커뮤니티 건강센터’(North Richmon Community Health Center)를 들 수 있다.

## 11. 뉴질랜드

### 11.1 아동에 대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난민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출입국공무원, 세관직원, 노동부직원이나 경찰관 등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고, 신청으로부터 결정까지 통상 20주가 소요되고 1차결정까지 평균 13주 이의심사에 평균 4개월가량이 걸린다. 뉴질랜드는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인다. 재정착난민은 오클랜드 Mangere의 리셉션 센터에, 협약상 난민은 Takanini의 호스텔에 수용되며, 난민신청자는 스스로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에서 주거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다만 Auckland Refugee Council이라는 NGO에서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체류가 허가되고 이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외출이 허용되는 보호소에 거주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시설에서 기본적 생계가 제공되고, 그 밖에 나이에 따라서 1주일에 20세 이상은 21NZD<sup>49)</sup>, 16-20세 15NZD,

15세 이하 5NZD를 지급받는다. 난민인정이 거부되었으나 구급되지 않은 신청자도 주거 외에 식비와 기타 생활비로 1주일에 85NZD를 지급받는다.

16세까지의 아동 취학은 출입국 기타의 지위와 무관하게 의무교육이어서 난민신청자 아동도 취학허가가 나온다. 난민신청자의 영어 교육은 자비로 해결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영어교육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무연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성인으로 대리인을 정하거나 아동·청소년·가족 사회복지사로 후견인을 지정한다. 무연고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에는 반드시 후견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며, 미성년전문 심사관이 면담하고, 면담시간도 14세 미만은 2시간, 14세-17세는 3시간을 넘지 않는다. 무연고 미성년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하며, 난민인정이 거부된 경우라도 본국의 가족상황, 아동권리협약 등을 참작하여 본국송환여부를 결정한다.

## 11.2 아동지원 프로그램

### (1) 난민교육원(CRE : Center for Refugee Education)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오클랜드 Mangere의 리셉션센터에 수용된 난민들은 수용소에 머무르는 6주동안 아동들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모두 수용소 내의 난민교육원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의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 난민교육원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50)</sup>

- 난민들이 뉴질랜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우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높여줌
- 영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뉴질랜드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교과내용을 통해 습득하게 함
- 뉴질랜드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며,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
- 뉴질랜드의 교실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난민교육원이 실시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1)</sup> 유아교육의 대략적 내용은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상황을 알려주고 부모들이 유아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 분석능력 교육, 언어능력 향상교육(모국어와 영어), 독서전 교육과 쓰기 및 기초적 숫자의 세기, 독립심 기르기 교육, 취학 후를 대비한 교육이다. 초중등교육의 내용은 뉴질랜드 학교의 환경, 교육방식, 학과 내용과 공부방법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일에 대한 교육, 언어능력, 문자해독력, 계산법,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 미학교육으로서의 미술, 음악, 드라마, 체육 등, 사회행동 발달을 위해 자율성 기르기를 돕는 교육이다.

49) 1NZD=약 840원

50) 송창주, 『뉴질랜드의 이주·난민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센터, 2009, p.42.

51) 송창주, 앞의 책, pp.42-43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난민교육원이 난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sup>52)</sup>

- 배우는 것의 어려움과 즐거움, 자신감, 긍정적 사고를 제공
- 이 교육이 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 사이에 협동과 공유가 이뤄지도록 함
- 교사들이 난민들의 출신국가들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환영하는 분위기를 제공
- 다양한 커리큘럼과 학습전략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필요에 부응하며, 특히 학습자 자신의 힘에 의거한 긍정적 사회능력 학습을 도와줌

## (2) 일반학교 교육

난민교육원을 떠나 사회에 정착한 난민아동들과 청소년들은 특수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들과 섞여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부는 일선학교들이 난민출신 학생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발견해내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진로지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난민교육지침서(Refugee Handbook for Schools)’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특히 난민과 망명자들의 아동과 청소년이 등록한 학교에서 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이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의하면, 우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난민, 망명자들의 일반적 사항들에 대해 미리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난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뉴질랜드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는지, 이들이 대체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들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이 환영받는다든 기분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학습하게 한다. 특히 뉴질랜드의 학교 분위기나 환경, 시스템들이 난민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다는 것 등을 강조한다.<sup>53)</sup>

그 밖에 교육부는 이런 학교들이 이중 언어교사의 채용, 따돌림과 인종차별적 행동 및 언어를 금하는 정책, 지속적인 교사훈련, 교육부와의 연계, 방과 학습센터 운영, 학생들이 자국어 쓰도록 고무하기,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기, 가정과 학교의 연계강화, 버디 시스템의 운영, 공동체와의 연계, 인권과 난민 등의 문제들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기 등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4)</sup>

## (3) NGO프로그램

---

52) 송창주, 앞의 책, p.43

53) 송창주, 앞의 책, p.44

54) 송창주, 앞의 책, p.46

뉴질랜드는 시민사회가 잘 발달되어 난민들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민조언국(CAB), 치안판사(JP), 뉴질랜드난민협의회(RCNZ), 뉴질랜드정착지원(SSNZ) 등이다.<sup>55)</sup>

- 시민조언국(CAB : Citizen Advice Bureau) :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모든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이용하기 좋다

- 치안판사(JP : Justice of Peace) :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각종 법률적 조언과 공증 등을 지원한다.

- 뉴질랜드난민협의회(RCNZ : Refugee Council of New Zealand) : 전국적 NGO로서 뉴질랜드에서 난민지위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돕는다. 이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난민정책이 국제법과 인권을 존중하는지 감시하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고, 난민들 간의 네트워크 혹은 뉴질랜드난민협회와 난민, 난민지원단체, 그리고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 만드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 뉴질랜드정착지원(SSNZ : Settlement Support New Zealand) : 난민들이 뉴질랜드 전국의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주거나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나 비정부기구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며, 난민들이 해당지역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이주 전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

55) 송창주, 앞의 책, p.50

## VII. 난민아동 지원 방안

### 1. 국제아동권리협약(CRC)에 의거한 난민아동권 분석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권기준에 따른 분석이 요청된다. 분석의 도구는 국제연합(UN)을 통해 가입 당사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춘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다. 7대 주요 인권조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 이하 경제 사회 문화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시민 정치권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이하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RC, 이하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권리 협약을 제외한 모든 주요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했다. 다양한 이주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지만, 권리보호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혹은 그 일부에 규정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김현미 외 2007:159). 난민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가장 영향력있는 인권협약은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아동을 비롯한 다문화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행을 촉구해야 할 사안은 아래와 같다.

#### 1.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비차별을 강조하는 본 협약에서 보장된 난민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다문화인권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미디어/언론에서도 캐나다와 같은 ‘문화표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문화적 생산물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 및 지식 생산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본 조사의 30가족의 사례 중 50%에 이르는 가족의 아동들이 '무국적'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 혈연주의에 입각한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국적을 상속하는 현재의 국적법은 정착 외국인 및 아동의 국적 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 이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향후 아동의 교육 및 사회권에 대한 접근 자체를 불리하게 만든다. 향후 독일처럼 속인주의 원칙을 택하지만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법적 신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7조**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난민은 경제적 이주자와는 달리 대규모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종족 마을을 건설하여 종족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문화적 전수를 할 수 없는 소수자 중 소수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수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길 또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난민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으로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세대 간 문화적 전수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난민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문화와 언어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향유되어야 할 귀중한 자원이다. 고립된 난민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적 연결성을 회복하고 아동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이중 언어 사용과 문화적 체험등과 같은 지원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이중언어교육의 수혜를 난민아동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최근 난민법 제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난민, 난민 가족 및 아동에 관한 권리 보호의 의무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난민법은 국제 공조를 포함한 초국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난민 가족의 재결합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사례 중 15세의 나이로 단신 이주한 경우를 포함해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청소년 난민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내전이나 종교적 박해, 종족 살인, 성폭력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이주한 난민 또한 많다. 이들이 가족과 연락하고 재결합을 추구하는 것은 비호국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다.

###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29조

교육은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아동의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여야 한다.

- 현재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차이가 차별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시민 교육의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난민과 관련된 편견 및 스테레오타이핑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난민아동을 포함한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문화적 소수자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호간 문화적 인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시켜야 할 인류의 자산이며 문화적 자원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의 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2. 한국 난민아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2.1 민간

그동안 한국에서는 난민아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고, 2006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난민지원단체들의 네트워크모임에서도 2012년 들어 Save the Children이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까지는 난민아동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에서 2007년-2008년 시도한 난민자녀주말 학교 프로그램인 ‘열국아이학교’,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인권센터’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난민자녀 분유지원사업’, Save the Children이 2010년-2012년 실시한 ‘국내거주 난민아동지원사업’ 등이 그나마 국내에서 시도된 난민아동 관련 프로그램들이고, UNHCR, 안산Westart글로벌아동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학교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난민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난민아동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 (1) 피난처 열국아이학교

피난처에서는 재한 외국인 난민 자녀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문화가정 유형인 난민가정의 외국인난민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난민가정의 교육소외를 극복하고 다문화사회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난민가정이 다문화 공동체적 축복이 되게 한다는 목표아래 매주말 난민자녀 10명과 또래 한국인아동 10명으로 Kids School과 유사한 어린이집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들을 자녀들로부터 해방시켜 부모교실(한국어교육과 상담)을 열고, 월1회 난민아동, 한국아동, 난민부모,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문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프로그램의 결과 난민아동에 대하여는 거친 행동이 많이 없어져 순화되고, 자심감이 많이 생겼으며, 한국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성장 발달에 따라 한국어를 조금씩 하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고, 함께 동참한 한국인 아이들도 난민 아이들과 친구가 되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부모들의 한국어교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활동도 난민가정에 큰 활력이 되어 2년간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었다.

소수의 난민가정이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 수행단체인 피난처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실시된 반면, 대부분의 난민가정이 살고 있었던 안산으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2시간의 거리를 왕복해야

했던 장소 내지 거리상의 문제와 교육이 상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말에만 이루어짐으로써 주중에는 아이들이 지역어린이집에 가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 지역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어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거리문제와 시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지금은 몇몇 아이들을 위한 단기간의 놀이치료 프로그램만 유지되고 있다.

## (2) 난민인권센터(난센) 분유지원사업

난민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 점차 난민아이들이 들어가자 난민인권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난민가정에 분유와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분유회사로부터 다소간 할인된 가격으로 분유를 구입하거나 시민들의 후원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마련하여 단체에 비치하고 아이가 있는 난민가정이 수시로 단체를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신생아를 가진 난민가정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하여 구체적 지원을 실시한 좋은 프로그램이었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3) Save the Children 난민아동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난민아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Save the Children에서 2010년부터 약30가정의 아동들에게 월 20만원씩의 아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경제적 지원이 실시되었다. 피난처와 난센을 수행단체로 하여 케이스를 관리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이 사업은 위기난민아동에게 긴급한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나, 아동의 교육/양육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과 달리 생계비로 사용된 사례들이 많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어린이집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난민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난민 부모교육'을 연간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주제로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제공'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등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모들에게 정보제공과 동시에 정서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2년 동안 부모들의 참석율이 꾸준히 높아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부모교육 이외의 지원으로는 수행기관 실무자들의 교육지원 및 난민지원 네트워크 참석을 통한 옹호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3년 동안 본 사업을 통해 난민 아동들을 지원하면서 늘어나는 아동지원금 신청자 수와 함께 아동의 생활실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난민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 및 민간단체에 공유하여 국내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향후 난민아동지원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등록·미등록 이주아동과 난민아동을 포함하여 전국 협약병원을 통해 확진을 위한 검사 및 외래비와, 100만원 미만의 입원 수술치료비를 지원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2 정부

민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도 난민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과 프로그램이 집중되었고 전국에 다문화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난민아동은 그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가 난민아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은 출생등록, 보육·양육과 생계,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제도 및 처우와 관련된 영역들이다. 정부지원은 대부분 아동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고 아동의 지위는 부모의 지위에 종속되기 때문에 부모가 난민인정자인지, 인도적체류자인지 불인정자인지에 따라 아동의 처우가 달라진다.

### (1) 난민인정자

난민인정된 아동의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난민법 제30조)를 받고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교육 등(난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있어서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난민인정자의 자녀들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지원도 받게 된다. 특별히 3-5세의 취학전 난민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비가 지원된다. 미동반아동이 국내에서 난민인정된 부모를 따라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재결합을 위하여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난민법 제37조) 난민인정자의 주거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난민인정자는 보금자리주택(국민주택)의 주 분양자가 될 수 있다.

### (2) 인도적체류자

인도적체류자에 관하여는 난민법 제39조가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외에는 침묵하고 있어 아동이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나 불인정자의 아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지원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난민법의 제정으로 난민신청자의 자녀도 생계, 주거, 교육,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난민법 제41조-제43조). 일정한 경우 취업을 제외한 이러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난민법 제44조) 아동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한 그룹들에 대해서는 처우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응급 의료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불인정처분을 받아 소송중인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처우는 물론 체류도 보장되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난민법은 소송중인 신청자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난민법 제2조 4호),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난민법 제5조 6항). 따라서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머물던 소송중인 난민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들이 자녀를 출생하여 체류자격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신청자의 자녀도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교육은 D2나 D4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G1의 체류자격으로는 원칙상 어렵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의 18세 미만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하여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만 지원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개원예정으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있으며 이 시설 내에 탁아소와 같은 아동지원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 3. 난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 3.1 난민인정절차 관련 제언

##### (1) 난민인정절차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난민아동 특히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반없이 입국한 무연고아동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sup>56)</sup>이 보장되는 난민인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심사를 받는 동안 아동은 전문가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성별, 난민아동의 다양한 상황에 민감한 훈련된 전문가의 배치와 아동친화적인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고, 난민조사관이나 심사관들은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상황을 파악(국적, 양육, 민족, 문화 언어적 배경, 아동이 특별히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 등)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단기/장기적 조치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은 물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혹은 국가에 의해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된 이익의 요인과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우선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대안이 되는 결정이 아동에게 가져올 결과분석도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동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입국 시점부터 아동이 의견을 말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절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아동, 특히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아동이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난민아동 상황의 연령과 성별 등에 민감한 전문가의 동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 또는 비호 신청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하였는 바, 난민담당공무원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 및 아동 권리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출입국항과 구급시설에서의 아동보호

새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은 출입국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내지 입국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된다(난민법 제6조 2항). 그 일정한 장소란 현재는 출국대기실이 되는데, 아동을 동반한 난민신청자가 출입국항에서 일정한 장

5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UNHCR Guidelines on Formal Determination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소에 머무르는 경우 난민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아동이 출산되는 경우, 관계당국은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출생등록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난민아동의 구금, 추방은 금지되며, 난민아동의 개별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이라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난민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된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구금을 삼가도록 권고한 바 있다.<sup>57)</sup>

## 3.2 처우 관련 제안

### (1) 출생등록제도의 마련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이들 자녀의 출생등록 등 법적 인격 부여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 특히 난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sup>58)</sup>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59)</sup>

대한민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는 법률상 무국적자가 되고,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따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라도 부모가 박해의 공포 때문에 자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적취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다.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며,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특히 출생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는 특히 등록이 필요하다<sup>60)</sup>. 난민협약 제25조는 난민

57) \*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최종견해 : 대한민국 (CRC/C/KOR/CO/3-4). 2011.10.6

“더욱이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주법 하에서는 난민과 비호신청자와 동행없는 아동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구금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이며 송환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시한이 없는 그러한 구금에 대한 주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심을 보장할 법 조항이 전무한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비호 신청자나 동행없는 상태의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송환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58)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대한민국(CRC/C/KOR/CO/3-4). 2011.10.6

59)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2012/8/31.CERD/C/KOR/CO/15-16

이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국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체약국이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난민에게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난민의 경우 출생등록이나 혼인등록과 관련하여 본국 행정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본국에 출생 내지 혼인 등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거주지 구청에서 출생 내지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신고서를 접수하여 기타신고편철장에 편철하여 두는 소극적 원조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출생과 혼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등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난민지원시설이나 구급시설, 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이 아동을 출산한 경우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생등록이 반드시 국적부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체류관리, 주민자치, 출생사실 증명과 무국적방지를 위하여도 등록이 필요하다.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함으로써 체류하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바, 미등록이주자들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인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부여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난민의 경우는 출생 아동에 대한 난민신청과 체류자격부여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출생신고와 연결하는 문제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의 주민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제도가 필요하다. 주민은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 연령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외국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의 일환으로 출생등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장차 속인주의에 대한 예외로 속지주의에 의한 국적부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출생사실의 증명과 무국적방지를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

## (2) 난민아동의 생계지원

아동의 의식주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생계비 지원은 자녀 여부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 이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 혹은 보육비는 생계비 지원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생계지원비와 별도로 아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 60) 아동권리협약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발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편적 복지는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난민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보다는 취업허가와 언어교육을 통한 자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난민아동의 교육지원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 이상이 교육에 대하여도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가 체류자격의 문제나 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한 증명 및 인정문제로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 아동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이수학력과 연령에 맞는 학업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칙상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유학생으로서의 D-4체류자격이 필요하지만, G-1 체류자격을 가진 인도적체류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한 사례가 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D-2 체류자격이 요구되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이 요구되는 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난민의 경우 국내이수학력에 근거하여 수학능력시험 응시나 외국인특례전형입학이 가능할지 선두 케이스가 되고 있다.

### (4) 난민아동의 의료지원

난민법 제42조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조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국민건강보험은 등록외국인 체류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가 가진 G-1 체류자격으로는 지역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난민신청자가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의료공제회나 보건복지부 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생계비의 일부로 공제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건강검진 실시,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제공등을 기본으로 하며, 난민지원시설의 경우 양호실 운영,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도 일종의 보험이므로 단기체류가 예상되는 직장이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도 보험제도를 확대하는데 이론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나 그 아동에 대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결국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을 비인도적으로 방치하려 하지 않는 이상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등 다른 시혜적 제도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난민신청자나 그 아동도 지역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난민아동의 주거지원

난민가정의 주거시설을 지원할 때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조건을 아동 양육의 상황에 적합한지 고려되어야 한다. 난민지원시설에 아동이 머물게 되는 경우 아동의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발달과 건강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은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아동의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각 지역 아동복지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3 프로그램 관련 제안

#### (1)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난민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이므로 난민아동을 위하여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은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스웨덴의 모국어 교육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모국어교육도 실시하여 아동들이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인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난민아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하고, 난민아동이 다문화학교나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여야 한다. 프랑스 몽스지역 이주민 적응반 수업의 하루 일과표<sup>61)</sup>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중도입국 아동을 위하여 적응반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성폭력에 노출된 난민아동 등 고통스러운 이주과정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건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난민아동의 개인 자립능력과 주변 공동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 환경을 반영하며, 각 개인의 장점, 발전 가능성, 탄력성과 회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칼라발릭연극회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연극, 스포츠, 캠프 등 활동적이고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안학교나 특수학교와 같은 분리교육은 오히려 사회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학교에서 한국 아동들과 함께 교육하되 교육과정의 일부분은 분리교육을 하여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거나 필요한 문화적응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sup>62)</sup>

#### (2) 전문가와 문화중개자 양성

61) 이민경, 『프랑스의 이주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무지개청소년센터, 2009. pp 58-60

62) 김효신, 앞의 책, pp.47-48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이주민 내지 난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교사와 전문가를 기르고, 이들이 문화중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여야 한다.<sup>63)</sup> 세이브더칠드런이나 NGO 혹은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교사나 부모와 연계하여 난민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담당하는 이중언어 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모국어를 잊어버리기 보다는 두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

난민아동의 장기적 사회적응을 위하여서는 이들이 소속된 기관과 지역 내에서의 상호문화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고, 난민아동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을 개발하여 그들 자신의 사회적 자산과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을 키워나가고 주류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난민들이 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자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전체의 자본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난민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미디어들(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3)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난민과 시민, 성인과 아동이 함께하는 폭넓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단일민족주의, 한국문화우월주의에 깊이 물든 한국에서는 시민교육이 절실하다. 정부는 물론 학교, 미디어, 시민단체가 이러한 각 분야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모두가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융해되도록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태도나, 소수집단을 주류사회에 필요한 영역 내에서 받아들이되 주류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공격적으로 엄격히 통제하여 소수집단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거권과 같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배제주의를 넘어, 민족적인 차이나 이질성을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집단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로 나아가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난민에 대하여는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다. 난민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므로 부담스럽다거나, 난민은 잘사는 나라에서 돈을 벌거나 기여 없이 선진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이주해 온 사람들이므로 결국 남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난민을 널리 수용하고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난민이 대량 유입되거나 돌아가지 않고 정주하게 될 것이라거나, 난민에게 취업을 허용하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등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다룰지 연구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문제나 도전으로 여기지 않고 기회와 국력으로 인식하고, 소수민족청은 이 다양성이 뉴질랜드에 어떤 이점을 갖다 주는 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63) 김윤영, 『미국의 이주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pp 57-58 참조

이다.<sup>64)</sup>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들이 가진 다양한 언어능력은 뉴질랜드의 힘이다.
- 이들이 가지고 오는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은 국제시장에서 뉴질랜드의 마케팅 능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뉴질랜드 상품을 해외시장에 파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 이주민과 난민들은 뉴질랜드의 노동시장을 더욱 개혁적인 것으로 만들고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채산성을 높여준다.
- 다문화는 뉴질랜드 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 다문화 상황은 또한 뉴질랜드 사회 내의 여러 가지 다른 문화 사이의 대화능력을 배양시키고, 뉴질랜드의 문화와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

64) 송창주, 앞의 책, p.38.

## VI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난민아동의 삶의 질은 부모의 난민지위, 취업상황, 심리적 안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난민지위가 체류권 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민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은 아동의 양육, 건강, 심리, 교육, 미래 기획에 있어 기회와 자원을 제한하며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체류권과 사회권 보장이 취약한 난민신청자 특히, 소송 중인 자와 난민불인정자의 경우는 부모의 불안정한 지위가 아동의 교육, 발달, 건강 등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민신청자나 소송 중인 자의 경제활동 영역이나 기간 제한은 난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급속히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체류자 부모를 둔 아동의 상황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난민인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접근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난민인정자 자녀의 경우도 부모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생계 및 주거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삶의 질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3년 7월 1일 시행되는 난민법 또한 아동이나 난민 후속 세대 관련 구체적인 지원책이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안에 난민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보호의 내용뿐만 아니라 난민 후속세대, 즉 이들의 자녀에 대한 ‘통합’관점의 서비스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동은 잠재력이 많은 사회적 존재이다. 특히 난민아동은 부모의 이주 조건과 트라우마에서 오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의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동이 특정 나이에 도달하여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전까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은 그들 부모의 몫이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는 비호국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가족’ 단위의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 난민은 아이의 출생, 양육, 교육, 건강 및 의료, 문화적 전수 및 안전한 거주공간의 마련 등 한국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지원의 방식과 형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난민아동의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마련해주는 것이 비호국의 임무이며 이를 위해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이나 UN 사회문화권 보장 등의 아동 인권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차연·장연집 (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 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김대원·양혜진 (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3(2), 273-292.
- 김윤영 (2006). 『미국의 이주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현미, 김기돈, 김민정, 김정선, 김철호 (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현미, 이호택, 최원근, 박준규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 김효신 (2009). 『캐나다의 이주·난민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경자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임 (1992). 「양육태도 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분석연구: 초·중·고생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희 (2007). 『호주의 이주·난민 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 박진숙.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캐나다 연수 보고서”, <난민자녀 열국아이 학교 사업보고자료집>, 2008.3, 피난처, pp 80-92
- 보건복지부(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보건복지부.

송창주 (2009). 『뉴질랜드의 이주·난민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센터.

신민섭 외(2005).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신혜정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32(3), 61-83.

유현승 (1998). 「혼혈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 동두천 지역 혼혈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덕룡 (1987). 「가정환경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선영 (2006). 『독일의 이주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이민경 (2007). 『프랑스의 이주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수정 (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2007),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산지니.

이호택, 김종철, 형수진 (2009),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

제도 연구』, 법무부.

인봉숙 (2002). 「한일 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채숙 (200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수경 (2006). 『영국의 난민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갈종기 (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연혁 (2009). 『스웨덴의 이주·난민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

최혜지 외 (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피난처 (2007). 『유럽난민지원기관방문조사보고서』

피난처 (2008). <난민자녀 열국아이학교 사업보고 자료집>

難民事業本部 (2012年5月), 難民事業本部案内.

移住労働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June, 2012), 『Mネット』 No.150

‘在日ビルマ系難民の二世たち’, ‘在日ビルマ系難民二世Voice’, ‘日本で懸命に学ぶ難民大学生母国との“懸け橋”に’ 『Mネット』 No.150(June, 2012), p.12~13.

Cécile Rousseau, Aline Drapeau, Robert Platt.

1999 "Family trauma and its associatio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 Cambodian refugees," *Child Abuse & Neglect*, 23(12): 1263–1273

Devon E. Hinton, Angela Nickerson, Richard A. Bryant.

2011 "Worry, worry attacks, and PTSD among Cambodian refugees: A path analysis investig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72(11):1817–1825

Everett M. Ressler, Neil Boothby, and Daniel J. Steinbock

1988 *Unaccompanied children : care and protection in wars, natural disasters, and refugee movement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9.

Hallanhan, D. P., & Kauffman, J. M.

1978 *Exceptional childre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Hetherington, E. M., & Martin, B.

1979 "Family interaction," In H. C. Quay, & J. 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2nd ed., pp. 247–302). N.Y.: Wiley.

Laila Tingvold, Anne–Lise Middelthon, James Allen, Edvard Hauff

2012 "Parents and children only? Acculturation and the influence of extended family members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2):260–270

Marina Ajduković, Dean Ajduković

1993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fugee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7(6):843-854

McCord, J.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77-1486.

Patterson, G. R.

1982 *A social learning approach*, Vol. 3: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Rutter, Jill

2006 *Refugee Children in the UK*. Berkshire, UK: Open University Press

Tasoulla, Hadjiyanni

2002 *The Making of A Refugee: Children Adopting Refugee Identify in Cyprus*. Westport, CT, USA: Greenwood Pres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http://costi.org/p>

<http://open.tean.ac.uk/>

<http://www.sweden.gov.se/>

<http://www.cic.gc.ca/>

<http://www.romerohouse.org/>

<http://www.cra-arc.gc.ca/>

<https://www.google.co.kr/>

<http://www.unhcr.or.jp/>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

인 쇄 : 2013년 2월 1일

발 행 : 2013년 2월 1일

지은이 : 김현미, 이호택, 이해진, 신정희, 이연주

발행처 : 세이브더칠드런

(우) 121-88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전화: 02) 6900-4400

인쇄처 : 그래픽오션

전화: 02) 3422-5612 팩스: 02) 3422-5613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724-054-9